

**지역기반 건축 · 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Study on Methods of Building a Local Based Support Network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nd Revitalizing Its Coordinator Function
- Focusing on Support System Construction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ments -

염철호 Youm, Chirl Ho

차주영 Tchah, Chu Young

박인석 Park, In Seok

(a u r i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Study on Methods of Building a Local Based Support Network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nd Revitalizing Its Coordinator Function

- Focusing on Support System Construction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ments -

지은이: 엄철호, 차주영, 박인석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5월 25일, 발행: 2009년 5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1,000원, ISBN: 978-89-93216-25-7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8-1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염철호 · 부연구위원
 차주영 · 부연구위원
- | 연구진 박인석 · 초빙연구위원

연구요약

제 1장 서론

최근 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개선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아래 행해진 하향식 사업에서 점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기반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들을 지원할 건축·도시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를 전제하는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사업의 참여주체 유형을 분석하고 사업별 참여주체의 역할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과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사례별로 참여주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 참여주체의 협력과 기능에 따른 지역기반 거버넌스와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 및 사업추진 체계

정부가 주도하여 도시계획과 개발규제에 관한 근대의 도시계획 체도를 완성한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 도심 주변지구의 빈곤문제와 커뮤니티 파괴 문제가 확산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중심정책이 개발이익으로부터 소외된 도시민민을 낳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지역정책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서구 각국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관리하는 정책과 함께 도시재개발 및 도시정비를 도시재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은 지역의 재생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지역재생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영국의 지역재생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조직 및 공공개발기관들을 주체로 하는 광역개발재생사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조직이 주체가 되는 마을재생사업을 병행하는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광역재생사업의 관련 자금 지원을 위한 통합재생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역개발청에 이관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재생기금을 마련하고 2001년 새롭게 정비한 마을재생정책인 근린재생국가전략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지자체에 마을재생기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마을재생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2001년 도시재생본부 설치를 시작으로, 이어서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고 이들 4개 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4개 본부는 모두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직접 주도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본부가 직접 관여하여 사업을 직접 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생사업은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각 지역의 단체와 주민조직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정비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도시만들기 또

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2000년대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활성화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부처는 각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고르게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기반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각 지자체가 주민과의 수평적인 사업추진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제3장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3장에서는 국내외 지역기반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영국의 지역기반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와 권역별로 4-5개의 지방정부가 속해 있는 지역기구인 지역개발청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 중앙부처의 주요 역할은

예산지원, 감독, 자문 등이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각각의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전문가 조직과 주민조직을 아우르는 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등 관련 주체간의 의견 조율과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방정부의 사업에는 그 밖에도 CABE와 같은 건축도시 전문지원조직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에 관계하는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로는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과 동북지방정비국 도시지역주택정비과가 있다. 이들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 사업을 지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당국과 개발공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치즈쿠리 사업의 경우 사례조사 대상지역인 세타가야구는 주민과 행정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뿐아니라 마치즈쿠리 펀드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지역기반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중앙정부 관계부처는 각 지원사업별로 다르다. 물리적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크게 3개의 기관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각 기관의 공통적인 사업시행 방식은 공모방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는 행정과 지역의 주민조직,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추진기구를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추진기구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체간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지방정부의 노력과 외부전문가의 활동이 활발한 곳, 그리고 지역에 활성화

화된 주민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 2000년 초부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주민주도형, 농촌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귀농인 정착정책과 연계하여 귀농마을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마을 간사들은 자체의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주민측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이라 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제4장 시사점 및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유형과 역할모형

4장에서는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특성과 활동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참여주체를 주체별, 활동지역범위별, 활동내용별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들의 구성과 관계를 도식화하여 각 주체들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된 참여주체들의 역할에서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역량을 담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에 기반한 건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일은 지방정부의 전문직능과 조직 강화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지방정부의 내부조직 강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담팀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별도의 전문직능 조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각국의 지역기반사업에서는 정부기구가 아닌 공익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업형태의

기구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사업을 정부조직만으로 주도하여 추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제약과 비효율을 조정하며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역역량을 극대화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지역에 기반하는 거버넌스 체제 성립을 유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역기반 활동조직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건축도시 전문지원조직의 경우 지원조직의 활동범위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사업에 기여해야 할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역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제5장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건축도시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역량강화가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와 함께 지역의 조직을 육성하여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들의 자체적인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또한 지역기반 조직과 중앙, 광역차원의 외부 지원조직을 지원하고 이들 간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지원하도록 한다.

주제어: 거버넌스,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건축·도시 지원 조직, 지방정부 역량강화

차례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6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II.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4...1
1.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14
1)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마을재생	14
2) 해외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의 흐름과 현황	16
3) 한국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 현황	23
2. 영국, 일본, 한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25
1) 영국	25
2) 일본	42
3) 한국	69
III.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8...8
1. 사례1 :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88
2. 사례2 : 영국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101
3. 사례3 : 일본 츠루오카시 마을만들기	116
4. 사례4 :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사업	126

5. 사례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34
6. 사례6 :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139
7. 사례7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145
8. 사례8 :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150
9. 사례9: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155
10. 사례10: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160
11. 사례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165

IV.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및 시사점27-1

1.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172
1) 참여주체 유형화 및 역할모형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72
2) 부문별 참여주체의 유형	174
3) 사업사례별 참여주체들의 역할모형	180
2.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00
1) 지역역량과 지방정부의 역할	200
2)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들	201
3)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정책 조달 특성과 이에 따른 필요 지원기능의 차이	207
4) 지역의 자율성·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정책	210
5) 건축·도시분야 전문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	212

V. 지역기반 건축 · 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62
1. 기본방향	216
1) 기초지방정부의 건축 · 도시 사업역량 강화	216
2)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유도 · 견인	217
3) 중앙/광역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역량 지원시책을 병행	218
4) 지역기반 조직과 외부 조직의 역할 · 위상 구분	219
2. 추진전략	220
1)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 〈광역 지원〉, 〈중앙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제 구축	220
2)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우선 추진	220
3)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지원 기능 구축 병행	221
3. 세부 정책방안	222
1) 기초지방정부 지역사업 전담조직 구축	222
2)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지원정책 추진	224
• 참고문헌	232
• summary	242

표 차례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 연구의 흐름	12
〈표 3〉 도시재생 특별지구의 건축제한 완화사항	46
〈표 4〉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59
〈표 5〉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주체와 역할	72
〈표 6〉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의 세부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별 추진주체	89
〈표 7〉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세부프로젝트 책임수행기관의 유형	99
〈표 8〉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위원회 구성	109
〈표 9〉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Action Group들 개요	111
〈표 10〉 Middlesbrough Partnership 참여기관의 유형	113
〈표 11〉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117
〈표 12〉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수법과 적용사례	128
〈표 13〉 중앙정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담당	141
〈표 14〉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142
〈표 15〉 성미산마을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147
〈표 16〉 중앙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담당	152
〈표 17〉 영월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152
〈표 18〉 영월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157
〈표 19〉 중앙정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 담당	162
〈표 20〉 지역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의 유형	178

〈표 21〉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주도적 참여주체들	181
〈표 22〉 Middlesbrough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 참여주체들	183
〈표 23〉 츠루오카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85
〈표 24〉 세타가야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87
〈표 2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89
〈표 26〉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0
〈표 27〉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1
〈표 28〉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3
〈표 29〉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4
〈표 30〉 안동시 군자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6
〈표 3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198
〈표 32〉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필요 지원조직	210

그림 차례

〈그림 1〉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Region)	30
〈그림 2〉 North East의 4개 Sub-Region들	31
〈그림 3〉 SRP가 수립한 세부프로젝트의 평가·승인 절차	32
〈그림 4〉 Englishpartnership의 주요 사업지구	33
〈그림 5〉 마을재생기금 예산흐름도	38
〈그림 6〉 일본 도시·지역재생정책의 구조	43
〈그림 7〉 인정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47
〈그림 8〉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업무	48
〈그림 9〉 마처즈쿠리 교부금에 의한 사업 이미지	50
〈그림 10〉 마처즈쿠리사업에 대한 지원체제	51
〈그림 11〉 주민참가형 마처즈쿠리펀드 지원제도	52
〈그림 12〉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인정 절차	57
〈그림 13〉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의 설치 주체 및 구성원	62
〈그림 14〉 지역재생계획의 작성 및 인정 절차	65
〈그림 15〉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66
〈그림 16〉 지역재생관련 각종 지원시책들	66
〈그림 17〉 지역재생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68
〈그림 1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개념도(www.city.go.kr)	76
〈그림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www.happykorea.go.kr)	77
〈그림 20〉 문화·역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maeul.kccf.co.kr)	78

〈그림 21〉 진안군 마을만들기 발전단계	82
〈그림 22〉 마을간사 배치현황 및 관련 담당사업	84
〈그림 23〉 마을간사 역할모형	85
〈그림 24〉 North East의 sub-Region들	88
〈그림 25〉 Tees Valley 권역의 5개 지자체	88
〈그림 26〉 Tees Valley Unlimited 위원회 조직도	97
〈그림 27〉 Middlesbrough의 NRF 지원 대상 지구	103
〈그림 28〉 Middlesbrough 정부조직	107
〈그림 29〉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조직 구성	108
〈그림 30〉 2009년 개편된 Middlesbrough Partnership 조직 구성	112
〈그림 31〉 주요사업의 위치도	117
〈그림 32〉 주민참여 워크숍의 모습	118
〈그림 33〉 츠루오카 마을만들기 조직간 관계	121
〈그림 34〉 나이트바자의 모습	123
〈그림 35〉 사업추진체계	125
〈그림 36〉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의 운영체계	130
〈그림 37〉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관련 행정조직도	131
〈그림 38〉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체계	135
〈그림 39〉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주체	136
〈그림 40〉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사업추진체계와 참여주체	140

〈그림 41〉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체계	143
〈그림 42〉 성미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146
〈그림 43〉 성미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148
〈그림 44〉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만들기	151
〈그림 45〉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156
〈그림 46〉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 추진단 구성	158
〈그림 47〉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개요	161
〈그림 48〉 안동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구성	164
〈그림 49〉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165
〈그림 50〉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 사업내용	166
〈그림 51〉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167
〈그림 52〉 진안군 마을간사협의회 조직도	169
〈그림 53〉 영국 광역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82
〈그림 54〉 영국 마을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84
〈그림 55〉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86
〈그림 56〉 일본 마치즈쿠리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88
〈그림 57〉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90
〈그림 5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안산시)	192
〈그림 59〉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성미산마을)	192
〈그림 6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여주체 역할모형	195

〈그림 61〉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참여주체 역할모형	197
〈그림 62〉 마을가꾸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199
〈그림 63〉 마케도니아 도시지방정부의 행정조직	203
〈그림 64〉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지원체제 구축 모델	22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3. 연구내용 및 방법

(a u 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와 개선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증가

지속되는 도시개발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자산이 축적되면서 신규개발 못지 않게 기존의 건축과 도시환경(stock)에 대한 정비와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었던 도시재개발·정비정책 역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이나 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의 주체인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우선적인 과제 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수평·상향식의 개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협력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¹⁾

1) 현재 각 부처별로 주민협력에 의한 도시재생·마을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육성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디지털사랑방구축’, ‘주민이 만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간 협력 및 조정 기능의 중요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환경의 개선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는 궁극적으로 참여주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기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문제로 집약된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주도 정책수행방식과는 달리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환경의 개선과 정비사업을 위한 지역기반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건축·도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의 구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편 지역기반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집행 주체인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관계와 사업내용을 조정(coordinate)하고 사업추진을 촉진하는(facilitate) 실행기능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는 참여주체간 이해관계의 조정 없이 사업 실행기능을 정부 혹은 중앙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였으나 관련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는 주체간 의견 조율과 사업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현행 지역기반 환경개선사업의 한계와 건축·도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을 연계한 건축·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사업기획과 계획수립을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설계용역 형태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역시 단순히 주민대표들 간의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이 사업추진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유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참여범위와 강도, 지속성 측면에서

드는 복지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 테마마을 조성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정부의 지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실행주체의 취약성이 사업성과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주민 등 관련주체들의 지역환경에 대한 애착심과 사업추진 역량을 고취’ 하고 ‘지역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 파급’ 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원획득 경쟁을 자극할 뿐,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특히 기초지자체)의 사업 조정역량이 취약하다는 점과 지역기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 추진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조직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건축·도시 관련 단위사업에서 지방정부나 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고 사업을 기획·촉진하는 건축·도시 지원조직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지원조직을 구축하는 일이 아직 본격적인 과제로조차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추진주체 관련 논의 동향과 연구의 필요성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지역별·사업별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추진사례들이 조사·보고되어 왔으나, 주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생활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례별 추진배경 및 성과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사업추진의 핵심요소인 관련주체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조사나 보고에 그치고 있어 이를 실천적으로 참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과 운용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행정체제의 성격, 전문가 지원조직 구축 상황, 지역 주민조직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사회별로 서로 다른 각각의 여건 속에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외국의 경험과 사례들을 국내에 직접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별로 관련 주체들의 유형과 역할을 체계화하고 이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지원조직들의 성격과 역할 역시 유형별로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건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경험 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몇몇 시민단체들이 지역현장에서 활동한 실천사례와 의욕적인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기반 사업을 위한 지원조직을 구축한 사례 등 소수의 시도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 일부 국내사례들의 성과와 시행착오에 대한 면밀한 조사평가 작업 역시 필요한 연구사항이다. 특히 이들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관련 주체들의 유형과 역할, 주체들 간 협력관계를 조정하는 사업주체와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검토·평가하는 작업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좌우하는 거버넌스 형성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참여주체들의 유형과 역할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방향과 이에 따른 전문적인 건축·도시지원 조직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 참여주체 유형 및 역할모형 분석

국내외 건축·도시사업 사례 조사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그 밖의 다양한 지원조직 등 건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고 각각의 기능을 체계화하여 사업별 참여주체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운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사례별로 행정체제의 성격, 지역 주민조직 상황, 전문가 지원조직 등을 심층 조사·정리한다.

□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조직 모델 및 유형과 역할 제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기획과 추진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건축·도시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 유형 등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여건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건축·도시 지원조직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향 제시

마지막으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추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기

반 거버넌스의 형성과 건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1990년대 영국,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지역기반 환경개선사업 사례들이 소개되는 등 1990년대 후반부터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의 현장 실천활동과 관련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정책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분야 R&D 사업으로 출범한 ‘도시재생사업단’에서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2 핵심과제(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 2세부과제(근린재생 기반구축 및 운영기법 개발) 중 세세부과제인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연구가 ‘주거지 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및 제도정비, 전문가 파견제도, 재정지원제도 등의 제안’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는 첫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지역기반 주민참여형 생활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들을 사례연구와 함께 원론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 둘째, 국내외 주민참여형 생활환경개선사업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를 통한 참조사항을 도출한 연구, 셋째, 지역기반 사업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례의 연구로는 박재길 등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5, 국토연구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6), 김진범 등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방안’ (2008, 국토연구원) 등이 있다.

둘째 사례의 연구로는 정석의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1999, 시정개발연구원)를 비롯하여 마을연대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마을 디자인운동 평가집’ (2003), 이명규의 ‘도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2004), 진영환 등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II)-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2007, 국토연구원) 등이 있다.

셋째 사례는 아직 연구사례가 많지 않으나, 진영환 등의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전략편)’ (2008, 국토연구원), 이명규의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2008), 이창호 등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2008,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지역기반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역기반사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원론적인 광범위한 방향 제시보다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역기반사업의 실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각 주체들의 역할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 사업의 조정·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주체인 지방정부와 건축·도시지원조직에 연구범위를 집약하였다.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분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연구진(년도): 박재길 외(2005) - 연구목적: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성공적인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역할 강화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이론 고찰 - 국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사례조사 수행 - 설문조사,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이론적 관계 - 일본, 미국, 영국 국내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추진과제 - 도시정책방향과 추진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 연구진(년도): 진영환 외(2007) - 연구목적: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시민참여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전략을 제도화하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이론적인 고찰 - 사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및 관계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동향 - 구체적인 사례분석 - 시민참여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 연구진(년도): 이창호 등(2008) - 연구목적: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안적 모델로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분석 - 전문가 의견 청취 - 거주자 요구조사 - 현장방문 조사 -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운영체계 방안 마련 -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 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기반 건축·도시 사업 참여주체 유형 및 역할모형 분석 2.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조직 모델 및 유형과 역할 제시 3.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련기관 현황 및 사업사례 조사 - 심층사례조사 : 실행주체 역할분석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주체 의견조사 - 해외 체제 전문가 및 관련인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과 사업추진체계 조사 - 국내외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조사·분석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유형과 역할모형 제시 - 지역기반 거버넌스 및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제시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지역기반 건축·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사업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와 주체간 협업이 중요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정주체,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은 지역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획’과 지방정부의 주도 및 주민참여를 전제로하는 사업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모든 건축·도시개발사업이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참여주체 유형분석 및 역할 모형 도출이라는 연구 목적상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석 범위를 국한하였다.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지원 네트워크’란 정부-지원조직, 지원조직-지원조직, 또는 지원조직-주민 간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도적인 주체가 누구인가를 포함해서 각 주체의 역할모형을 명확히 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 기능’이란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중 사업추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주도적 주체’가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란 참여주체 중 ‘주도적 주체’ 역할을 누가 하도록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참여주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각 주체별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과 사업추진체계 조사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와 국내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정책이 점차로 주민참여와 지역 재생을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정책 특성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유도·견인하는 지원체제, 지역활동조직 육성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체계, 사업 유형별 참여주체를 조사하였다.

□ 국내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조사·분석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실행사례 중 추진성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 각 사업개요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조직, 관련 지원조직 등 참여주체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지방정부-지원조직-지역주민 등 관련주체간 협력구조와 각 주체별 참여형태 및 역할, 지원조직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유형과 역할모형 제시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소속과 활동내용 및 범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사업별 역할모형을 제시하여 사업별로 각각의 참여주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가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역기반 거버넌스 및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제시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안은 크게 기본방향, 추진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기초지방정부의 건축·도시 사업역량 강화,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유도·견인, 중앙·광역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역량 지원시책 병행, 지역기반 조직과 외부 조직의 역할·위상 구분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전략은 기초지방정부 역

량을 강화하고 중앙 및 광역차원의 지원기능 구축을 병행하는 것이며, 세부 정책방안으로는 기초지방정부 지역사업 전담조직 구축,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지원정책 추진, 중앙·광역 차원 건축·도시 지원센터(가칭) 기능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기관 현황 및 사업사례 조사

- 기존 조사보고 문헌 및 연구자료 수집
- 홈페이지 수록 정보 검색
- 현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심층사례조사 : 실행주체 역할분석

- 특정 지역에서 수행된 특정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주체들의 역할 관점에서 심층 분석
- 사업평가가 우수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사례별 분석
 - 실행주체들의 담당 및 수행 역할을 중심으로 한 ‘역할모형’ 작성
 - 각 주체별 성공적인 기능 수행여부와 성공요인, 보완·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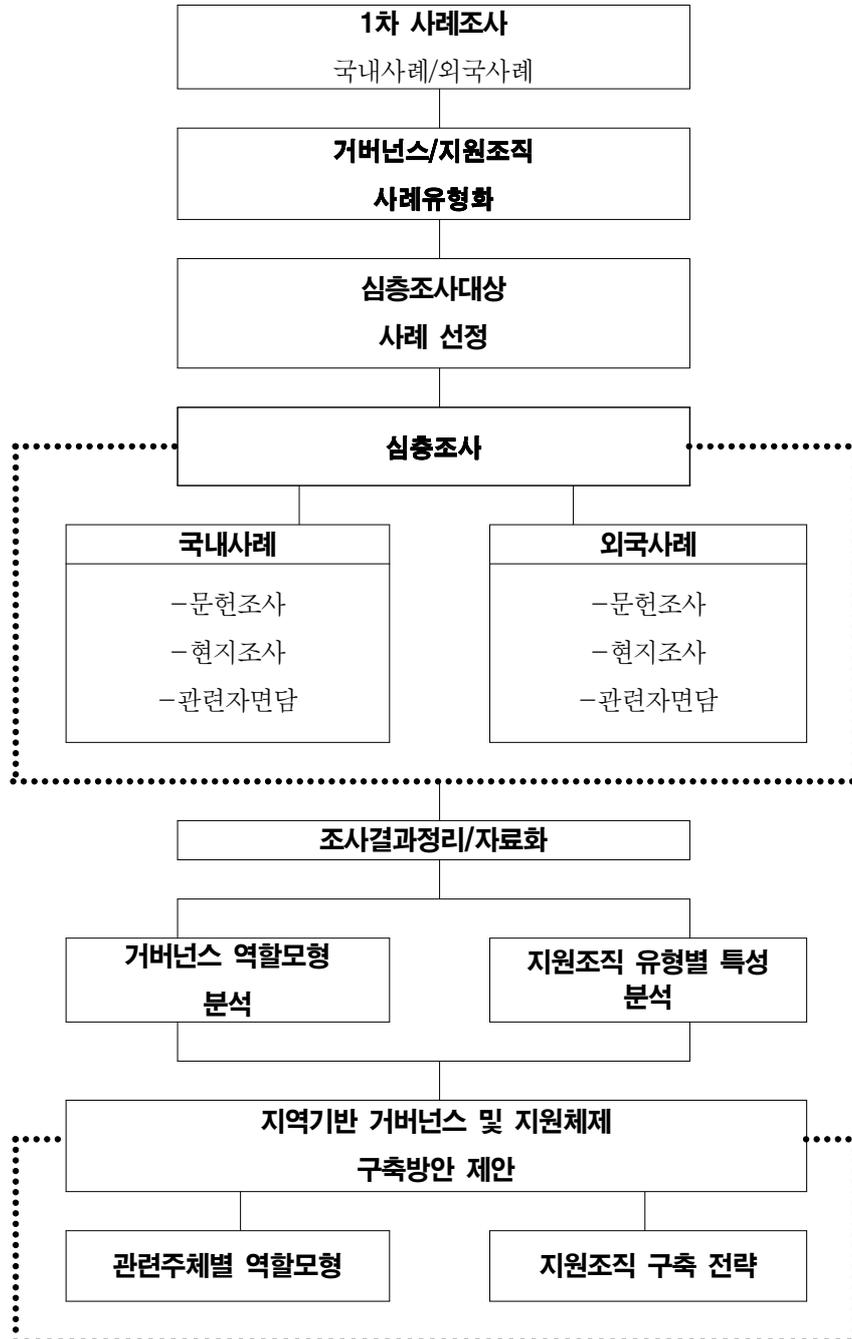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주체 의견조사

- 지원조직 운용 및 사업실행 경험에 기반한 쟁점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연구자 대상 자문회의와 지방정부 내 공무원, 주민협력사업 참여 전문가,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

□ 해외 체재 전문가 및 관련인사 활용

- 외국 현지 정보 조사 위탁 및 자문

〈표 2〉 연구의 흐름



II.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 · 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1.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 · 도시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2. 영국, 일본, 한국의 지역기반 건축 · 도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a u r i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 및 사업추진 체계

1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1)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마을재생

(1) 정부 주도형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도시 정책

20세기 초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을 선두로 시작된 도시 계획제도는 한편으로는 도시에 난립하던 민간업체들의 개별적 개발·건축행위 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지 개발 등 도시토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개입 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계획과 개발규제를 의미하였다.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를 완성한 영국의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비롯하여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각국에서 성립한 도시계획제도는 모두 정부를 계획과 규제의 주체로 하는 것이었다. 이들 정부 주도형 도시계획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가 공공이익을 대변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주민, 혹은 시민의 입장을 관료 도시계획가가 대변한다는 것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 도시계획가가 공평한 입장에서 개별 개발행위의 가부를 판단하고 주민은 그 판단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 주도형 도시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도시계획 영역을 물리적 환경정비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 부터 도시계획분야에서 주류적 사고였던 환경결정론, 즉 ‘환경을 개선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된다’ 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리적 환경 정비를 전문업역으로 하는 도시계획가가 독자적인 직능으로 확립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²⁾

(2) 거버넌스형 도시·마을 재생으로의 전환

‘상세한 계획과 이에 따른 규제’ 라는 방향으로 진전하던 정부 주도형 도시계획은 1970년대 도심 주변지구(inner city area)의 빈곤문제 및 커뮤니티 파괴 문제가 확산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물리적 계획에 따른 개발 중심 정책이 계속되면서 개발이익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빈곤층이 도심주변지역 곳곳에 밀집하면서 형성된 도시빈곤지역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공간 확대로 도심주변 저소득층 주거지의 인구감소, 상점 쇠퇴, 땅값 상승으로 지역 생활기반이 와해되는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도시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각국의 도시정책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지역과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 나아갔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경제불황 극복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강화를 기조로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정부-민간기업 협력 개발사업이 주된 도시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시장주의적 개발에 따른 커뮤니티 파괴 문제와 경쟁에 밀린 지역의 빈곤화 문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개선된 1990년대부터는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지역정책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역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전환하였다. 즉 현재 여러 나라들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관리하는 통상적인 기능은 지속하되 도시개발 및 재개발·정비 정책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계획과 가장 다른 점은 물리적 환경의 개발·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기반 및 자생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문제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물리적 개발·정비 뿐 아니라 산업·복지·교육 등 지역의 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이 복합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을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및 마을 단위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지역재생, 마을재생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한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2) 西山康雄·西山八重子, *イギリスのガバナンス型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2008), 29-31쪽.

도시·마을재생 정책은 추진방식 면에서도 과거의 ‘정부 주도의 계획과 규제’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사업 역시 지역을 주체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필요(needs)에 익숙한 지역의 관련주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지방정부(기초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해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2) 해외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의 흐름과 현황

(1) 영국

□ 1980년대까지의 도시정책

2차대전후 영국의 도시정책은 신도시법(New Towns Act, 1946)과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을 골간으로 정부 주도의 도시계획과 상세한 규제를 통해 도시 내 전쟁 피해지역 및 쇠퇴지역의 재건사업, 도시공업인구의 분산을 지향한 신도시건설 사업을 양축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부터 도심주변지구 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불황기로 접어든 1970년대에서부터 이에 대한 도시정책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기업·산업활성화에 의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자리잡아갔다. 그러나 대처정부(1979-90) 기간에는 민간기업 중심 도시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개발과정에 지자체를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참여를 견인하는 <중앙정부-민간기업> 형태의 관민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기업유치특구(enterprise zone)를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도크랜드 개발공사 등 도시개발공사(UDC)를 설립하여 특정지구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 지역 주도 재생정책의 본격화

대처정권 시기에 도시빈곤층 문제 및 지역커뮤니티 파괴 문제가 심화되면서 메이저정권(1990-97) 시기에는 대처정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지방정부 및 제3섹터 자원조직의 역할을 중시하는 지역재생 지원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시작된 시티챌린지(City Challenge)는 지자체들이 민간부문·자

원조직 · 지역조직과 파트너십으로 재생사업 과제를 기획하여 환경성에 경쟁입찰계약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정책으로서 1991-1998년의 기간 동안 31개 지역에 총 11억6천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 이는 1994년에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도입, 5개 부처 20개 예산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통합 시티챌린지 펀드(SRB City Challenge Fund)에 의한 지역재생 지원정책으로 진전하였다. 여기에서도 지역 주체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지자체-기업-지역단체 · 주민단체 중 둘 이상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업추진주체가 되는 것을 지원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노동당 정권인 블레어정권(1997-2007)은 사회정의 · 평등과 시장의 효율성을 병행 추구하는 소위 ‘제3의 길’을 국정철학으로 삼으며 강력한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 통합재생예산에 의한 지역재생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사회적 배제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노력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권한을 지역의 민간기업 · 자원조직에 이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1999년에 광역권별로 9개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여 관할 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한 통합재생예산 배분권을 위임하였으며 2002년에는 통합재생사업(Single Programme)방식을 도입,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광역 단위로 복수의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개발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협력관계와 자유재량권을 확대하였다. 통합재생예산에 의한 지역재생 지원은 1994-2007년의 기간 동안 1,027개 프로젝트에 57억파운드에 달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제계층 대책으로서의 마을재생정책을 구체화하였다. 1998년 시작된 ‘커뮤니티 뉴딜사업(New Deal for Community)’은 최빈곤 근린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하여 경쟁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1998년, 1999년 2년간 39개 지역을 선정, 10년 기간으로 총 20억파운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블레어 정부는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을 책정하면서 근린지역을 단위로 하는 마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영국 전역에서 빈곤도가 높은 86개 근린지역에 2001-2008년의 기간 동안 근린재생기금(Neighborhood Renewal Fund) 29억 파운드가 집중 지원되었다. 마을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 학교 · 경찰조직 · 자원조직 등 지역조직들이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조직하여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받은 근린지역재생자금의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외에 2005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기금(Safer and Stronger Communities Fund)을 조성하여 범죄·마약 퇴치, 마을 역량 강화, 공공공간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³⁾

□ 지역조직 육성·지원정책의 병행

한편 영국정부는 지역재생사업에서 지역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지역조직들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2001년 ‘근린재생 국가전략’에서는 선정된 86개 근린지역에 대해 근린재생기금(NRF) 이외에 소규모 지역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체스트 프로그램(Community Chests programme)과 지역주민들의 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 체스트 프로그램(Community Learning Chests), 그리고 지역전략 파트너십(LSP)에 참여하는 지역조직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지원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을 창설하여 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이 세 프로그램을 통합한 통합 커뮤니티프로그램(Single Community Programme)으로 통합하여 지원 대상 지역조직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는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지역조직은 대부분 자선단체, 혹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재생사업의 추진에서는 특히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지역커뮤니티기업·신용조합·상거래 기능이 있는 자선기관·근로자공동소유기업·협동조합·마을개발트러스트(development trusts)·주택협회·장애인고용기업(social firms) 등을 포괄하는데,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에서 독립하여 대등한 교섭 권한을 갖는 독립적 주체로서 활동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자생역량을 갖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1년 통상산업성에 사회적기업담당부를 설치하고, 2004년에는 그 동안 자선기관(charity)으로 등록되어 기업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사회적 기업들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격인 지역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제도화하였다. 영국에는 커뮤니티를 활동영역으로 하는 자원봉사 조직(voluntary community organisation)이 125,000개에 달한다.⁴⁾ 이 중 사회적 기업은 2006년 현재 55,000개이며 2007년 현재 영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7%에 달하는 171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⁵⁾

3) <http://www.neighbourhood.gov.uk/page.asp?id=1304>

4) B. Jacobs and C. Dutton(2000), "Social and Community Issues" In P. Roberts and H. Sykes (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p.117

5) 노동부(2007),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2) 미국

□ 1980년대까지의 도시정책

1980년 이전까지 미국의 도시정책은 연방정부 주도로 도시 내부의 불량주택 지역 및 쇠퇴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정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49년 연방주택법(Housing Act)을 통해 불량주택지역을 철거한 토지를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새로운 집합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대상지역을 불량주택지역 뿐 아니라 노후쇠퇴지역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 내용도 주택 중심에서 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침체기인 1970년대에는 도시빈곤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처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4년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여 수복·점진개량, 지역자산 보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근린지역의 쇠퇴 방지 및 자생적 역량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커뮤니티개발 통합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기에는 경제·산업 구조조정이 국가 주력과제가 되고 정부의 도시정책 비중이 축소되면서 도시빈곤층의 증가 및 쇠퇴 문제가 심화되었다.

□ 도시·마을 재생정책 : EZ, EC, RC

1992년 LA 폭동으로 도시문제 및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어 인력개발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주택도시개발청(HUD)이 영국의 기업유치특구(Enterprise Zone)를 벤치마킹한 정책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당시 부시 정부에 의해 비롯한 이 정책은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지역역량육성지구(EZs; Empowerment Zones)와 진취적 커뮤니티(ECs; Enterprise Community)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EZs 와 ECs는 클린턴 정부가 추진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빈곤한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전략계획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매년 1천만불씩 10년간 총 1억불 지원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정책 추진을 위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Community Enterprise Board(CEB)를 설치하였다. 1994년 HUD와 농림성 주관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제안경쟁에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명을 받은 도시·농촌 커뮤니티들(도시지역은 인구 200,000명 이하, 농촌은 30,000명 이하 지역)이 제출한 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하여 8개 EZs 와 95개 ECs를 선정하여 2004년까지 10년간 재생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어서 1999년에 다시 20개 EZ와

20개 EC를 추가 선정하였다.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2000년에는 커뮤니티 재생(Community Renewal; RC) 정책이 수립되어 2002년에 40개 RC와 9개의 EZ를 추가 선정하여 역시 10년간 11억불 규모의 세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⁶⁾

□ 그 밖의 지역재생 지원정책

그 밖에도 1974년 시작된 커뮤니티개발 통합 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제도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중저소득층 거주환경 개선 및 경제적 기회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들을 연간 30-50억불 규모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1993년에는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 아래 Youthbuild 사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16-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술을 교육하고 저소득층용 주택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8억불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47,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13,000호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였다.⁷⁾

영국의 지역재생정책에서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미국에서도 커뮤니티개발회사(CDC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가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DCs는 1960년대 저렴주거 및 커뮤니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 연방정부의 직업훈련 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등과 연계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개발, 직업훈련, 커뮤니티활동조직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지역재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도시개발청(HUD)은 이들 CDCs 역할에 주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경제적 개발사업에서 이들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⁸⁾

(3) 일본

□ 일본 도시정책의 흐름

2차대전 이후 전재부흥기를 지나 1960년대에 고도성장기에 들어선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도시개조와 도시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도쿄·오사카 등이 거대도시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지방도시들 역시 역전 광장을 거점으로 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어 나갔다. 1970년대

6) <http://www.hud.gov/offices/cpd/economicdevelopment/library/taxincentivesqa.pdf>

7) <http://www.hud.gov/offices/cpd/economicdevelopment/programs/youthbuild/>

8) J. Shutt(2000), "Lessons from America in the 1990s" In P. Roberts and H. Sykes (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p.266

세계경제 불황 속에 안정 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대도시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소위 ‘일본열도개조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이는 이후 대도시로의 집중과 지방 거점도시의 교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1970년대말 세계시장에서 일본산업의 약진 끝에 1980년대 중반 엔고불황 상황을 맞이하자 일본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확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유사하게 민간자본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그 결과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어반 르네상스’라는 이름 아래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붐이 일어났다. 한편 지방도시는 대도시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심시가지 쇠퇴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며 장기불황에 빠져든 일본 정부는 2000년대에 불황 탈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중심지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운동 및 지방도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등을 지역재생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 주민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일본의 주민운동은 2차대전 이후 일본 대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던 공해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주민운동이 조직화되면서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주민운동권이 정치권과 연대하여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정당이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혁신자치체가 출현하기도 하였다.⁹⁾ 주민운동은 1960년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진전해 나아갔다.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라는 용어는 1962년 나고야 사카에히가시(榮東)지구 도시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¹⁰⁾

이렇듯 강한 조직화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부 측의 지역환경 관리정책과 연계되면서 지방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성격으로 자리잡아갔다. 1975년 동경 세타가야구의 ‘방재 마을 만들기’, ‘건축협정’, ‘가로건축물 현장’ 등의 정책을 필두로 1979년 오이타현의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 1988년 다케시타 내각이 ‘향토창조’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3,300개 농촌마을에 1억엔씩 마을만들기 예산을 지원한 것 등이

9) 김찬호(2002), ‘일본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정보마당

10) 이명규(2008),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국토연구원, 2008.4.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1981년 고베시 마노(眞野)지구의 ‘마을만들기 협정에 관한 조례’와 1982년 세타가야구의 ‘가로만들기 조례’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면서¹¹⁾ 마을만들기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력하는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보편화되어 갔다. 1998년에는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쇠퇴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소위 마을만들기 3법¹²⁾ 제정과 함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마을만들기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역재생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

□ 도시·지역·마을 재생정책의 체계화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1990년대의 장기불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전략으로서의 대도시 토지유통화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지방도시의 자생적 경제역량 및 생활여건 향상을 목표로 한 지역·마을 재생정책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내각에 설치된 「경제전략회의」에서 ‘경제 재생을 위해 도시를 재생시켜 토지를 유통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는 국가전략이 설정되었다. 이후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면서 내각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2001.5)하면서 도시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6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 들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민간이 제출한 도시개발프로젝트들을 검토하여 이를 지원·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긴급조치는 이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에 의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사업계획을 인정·지원하는 법정 제도로 공식화되었다. 한편 도시재생본부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도시재생정책과는 별도로,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마을만들기사업을 ‘전국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하여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을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내각에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각종 규제에 대한 특별조치를 정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에는 다시 내각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하여

11) 정석(1999), 마을 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9쪽.
 12) 공동화가 진행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가지에서 시가지의 정비개선과 상업 등의 활성화의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1998)」, 대규모점포 개점시 주변 생활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2000)」,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등을 가능토록 한 「도시계획법 개정(1998)」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정책은 2005년 지역재생법 제정으로 서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을만들기 3법(1998-2000) 제정으로 이미 추진중이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은 2006년 마을만들기 3법을 개정하고 내각에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원내용을 확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결국 일본의 도시·지역재생 정책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4개의 추진 본부(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에 의해 추진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07년 10월 4개 본부 정책들 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4개 본부별 회의를 통합 개최토록 하고 각각의 사무국을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으로 통합하였다.

3) 한국의 도시재생·마을재생정책 현황

(1) 2000년 이전 시기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자원개발과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서 국토개발 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철도, 고속도로 등 산업기반 구축에 집중되었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집중이 진행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 내부의 재개발 및 인접지 개발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 확충이 지속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의 집중개발 정책에 따라 농촌 및 지방도시의 상대적 낙후 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지역발전정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농촌발전정책과 1980년대의 간헐적인 농어촌 지원정책 수준에 그쳤다.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1993.12)로 농어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되고 지방자치법 제정(1994)과 최초의 지방선거 실시(1995)로 지방의 중요성이 대폭 커지면서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농어촌정비법(1994),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1994), 어촌종합개발사업(1994-), 산촌종합개발사업(1995-) 등 농어촌 및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정책들이 잇달아 시행되었다.

(2) 2000년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수습 이후 정부는 지역개발체계를 정비, 농촌지역정책의 목표를 농업경쟁력에서 지역경쟁력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소도읍육성법(2001)을 제정하고 기존의 소도읍개발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2003-2012년 10년간 194개 읍지역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배후 농어촌지역 거점 기능 구축 등을 추진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도시민 여가수요 유치로 농촌 소득 증대를 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3대법(2004)¹³⁾,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2004),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6),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2)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중점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종 지역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농어촌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2004),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2006) 등 새로운 지역지원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특히 외국 지역재생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이들 각종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추진 역량 강화를 꾀하기 시작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미흡, 주민조직 등 지역조직의 취약 등이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지원정책을 재편,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 추진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 생활권 단위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¹⁴⁾ 특히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개발 지원정책에서 영국 정부의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벤치마킹한 포괄보조금형식의 지원정책을 도입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대도시에서는 도시 내부지역의 재개발사업과 도시 외곽의 신도시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 내부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외국의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한 사업방식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존의 재개발사업들은 대부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외국의 민간자율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업내용면에

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12.17),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서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제된 채 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개발업체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생을 지향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전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일본, 한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2

1) 영국

(1) 개요

□ 광역재생정책과 마을(communit)재생정책의 병행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에 대한 관리업무 이외에 지역의 발전 및 재생을 목적으로 정책적·전략적 기획 아래 진행되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재생 지원정책의 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영국의 지역재생 지원정책은 1970년대 도심주변 빈곤지역(inner city)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된 지방정부 주도 지역사업에 대한 보조정책과 1980년대 보수당정권에서 시작한 거점형 민간개발 촉진정책이 2개의 큰 흐름으로 지속되어 왔다. 현재는 <중앙정부 -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지역조직 및 공공개발기관들>을 주체로 하는 광역재생사업과,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역조직>을 주체로 하는 마을재생사업을 병행하는 구도로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역재생사업

광역재생사업은 광역권별로 설치된 지역개발청(RDA)들이 각각의 관장지역에 대해 지역경제전략(RES)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RDA는 관할 지역(Region)을 4~9개 권역(sub-Region)으로 구분하여 이 권역을 단위로 지역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마을재생사업

전국의 기초생활권, 즉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마을재생사업은 빈곤지수

(Indices of Deprivation)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최빈곤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구(district) 단위로 평가하는 6개 부문별 빈곤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전국 하위 50위 이내에 속한 지구가 소재한 지자체에게 마을재생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당해 지구의 재생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이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지역의 사업계획 및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는 통합재생예산과 통합사업프로그램 지원

광역재생정책의 경우 각종 지역 지원사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관련예산을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으로 통합편성하고, 지원 사업프로그램 역시 다수의 재생사업을 포함하는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을 승인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는 사업주체인 각 지역이 지역재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마다의 여건과 필요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재생사업 역시 중앙정부가 마을재생자금(NRF; Neighbourhood Renewal Fund)을 통합예산으로 지원하여 마을재생사업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있다.

□ 전담기구 및 부서를 통한 재생 지원사업의 총괄관리

광역재생사업에서는 광역(Region) 단위로 설치된 지역개발청(RDA)이 지역경제전략 수립, 권역(sub-Region)별로 추진되는 재생사업 지원 및 사업진행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권역별 재생사업의 추진책임은 권역단위로 결성된 지역협력조직(SRP; sub-Regional Partnership)이 담당하고 있으나 재생사업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재생사업 전문기구인 주택·커뮤니티개발청(Housing & Communities Agency)¹⁵과 도시재생회사(URC; Urban Regeneration Company)¹⁶가 SRP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지자체부(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하위부서인 마을재생국(NRU; Neighbourhood Renewal Unit)에서 마을재생 지원 대상 선정, 마을재생자금(NRF) 배분 등 마을재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5) 주택·커뮤니티개발청은 2008년 1월 국가 차원의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구인 잉글리쉬 파트너십(Englishpartnership)과 역시 정부기구인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를 통합하여 신설된 기구이다.

16) 지역의 전략적인 주요 개발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기업으로서 현재 영국 전국에 22개가 설립되어 있다.

□ 관련주체들의 참여-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중앙정부는 재생사업 지원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협력 조직(partnership) 결성을 지원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협력조직이 주체가 되어 재생사업의 계획 및 수행을 총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광역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 모두 공통된 원칙으로서 광역재생사업의 경우 SRP(Sub-Region Partnerships)를, 마을재생사업의 경우 LSP(Local Strategic Partnership) 결성을 의무화하고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단계부터 이들 조직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SRP와 LSP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들 조직이 실제 기획·행정·사무 기능을 갖추고 모든 사업추진 관련 기획·사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재생사업의 경우는 권역(sub-Region)에 속하는 지방정부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행정조직이, 마을재생사업은 해당 지방정부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다. SRP와 LSP는 이들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과 권한을 갖는 것이다. 즉 SRP와 LSP는 여러 관련주체들이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업계획 및 추진을 조율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이다.

(2) 광역재생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

□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과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

영국 정부는 1994년 5개 중앙부처의 지역재생 지원예산 20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편성하여 각 지자체가 여러 사업을 포함한 최장 7년 기간의 통합적 재생사업계획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어 2002년부터는 SRB의 집행 및 기존 SRB 지원 지역재생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모두 지역개발청에 이관하고 지원방식도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통합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지자체별로 신청하던 재생사업계획을 준광역(sub-region) 단위로 통합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을 수립, 지원 신청토록 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합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계획 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재생사업 진행기간 중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로 기획하여 추가예산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의 자율성과 사업추진의 융통성이 보다 확대되었다. 통합재생예산에 의한 지역재생 지원은 1994-2007년 기간에 1,027개 프로젝트에 57억파운드에 달하였다.

□ 지역협력조직 : SRP(Sub-Regional Partnership)

RDA로부터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주체조직으로서 SRP(Sub-Regional Partnership)를 결성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SRP는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의 지방정부,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자원봉사조직, 주민조직 등 지역재생사업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주체들로 구성된다. SRP는 독자적인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 통합프로그램 계획 수립에서부터 세부 사업들의 추진전략 수립 및 예산배분까지 통합프로그램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은 중앙부처들¹⁷⁾의 지역지원 예산을 통합한 통합재생예산(SRB)을 관장, 이를 RDA들에게 배분하며 RDA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효과를 점검한다. 2008/2009 회계연도의 경우 총 21억9천3백만 파운드를 9개 RDA에 배분하였다.¹⁸⁾

□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는 1999년 영국정부가 RDA Act(1998)에 따라 잉글랜드 9개 지역(Region)별로 1개씩 설립한 광역 단위 지역개발 및 재생사업 전담기구이다.¹⁹⁾ RDA 설립으로 잉글리쉬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 농촌개발위원회(Rural Development Commission)가 수행하고 있던 지역개발 관련업무가 RDA로 인계되었으며, 지역(Region)별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가 관장하던 통합 챌린지기금(SRB Challenge Fund)의 운영권 역시 RDA로 이관되었다.²⁰⁾ 각 지역의 RDA는 관장 지역(Region)의 경제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전략계획인 지역

17) BERR, CLG, DIUS, DEFRA, DCMS, UKTI 등 6개 부처. 최근 DECC도 통합재생예산에 참여하였다.

18) BERR홈페이지(<http://www.berr.gov.uk/whatwedo/regional/regional-dev-agencies/funding-financial-gov/page20136.html>)

19) 잉글랜드 이외의 영국 국가들(home nations)에서는 기존의 정부기구들이 RDA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웨일즈 의회정부의 경제교통국(Welsh Assembly Government Department of Economy and Transport)이, 북아일랜드에서는 기업통상투자국(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기업청(Scottish Enterprise)이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잉글랜드 광역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RDA로 이관할 계획이다. (http://en.wikipedia.org/wiki/Regional_Development_Agencies)

20) One Northeast(RDA)의 1999/2000 annual report 참조

경제전략(RES; 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책정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재생사업계획을 지원·관리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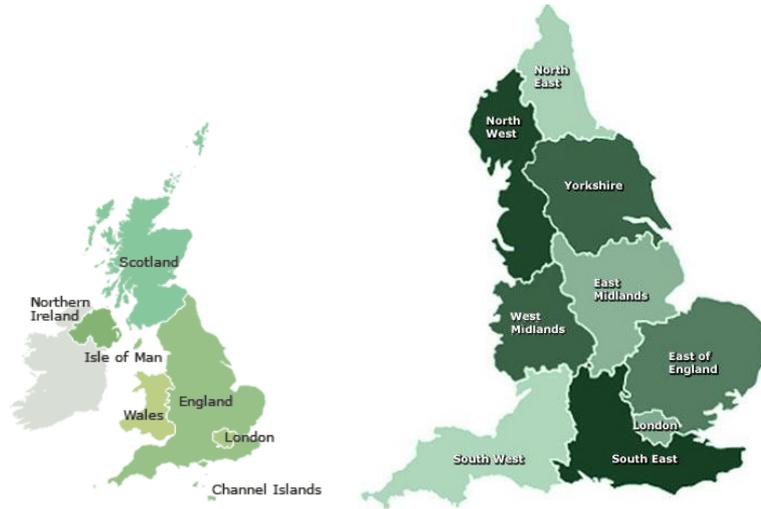
지역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각 RDA는 관장 지역을 복수의 권역(sub-Region)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SRP(Sub-Regional Partnership)를 조직하도록 하고 이들이 스스로 재생사업계획을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SRP가 수립한 통합프로그램은 RDA의 평가·인정 절차를 거쳐 사업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BERR로부터 배부받는 통합재생예산(SRB)이 주축이 되지만 이 외에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잉글랜드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에 의한 예산도 RDA가 관장하고 있다.²¹⁾ RDA의 운영경비는 2008-2011년의 3개년 간 6백만 파운드 규모로서 중앙정부 커뮤니티·지자체부(CLG)가 조달하고 있다.

RDA의 최고위원회(board)는 위원 15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중앙정부 BERR 장관이 임명한다. 개발청장(chief Executive)은 위원회에서 BERR 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RDA는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며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정기 감사 및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21) 이 두 개 프로그램에 의해 RDA가 운용하는 예산은 2007-2013 기간에 걸쳐 총 90억파운드 규모에 이른다.(BERR 홈페이지 참조)

※ 사례 : One NorthEast

One NorthEast는 잉글랜드 9개 Region 중의 하나인 North East England의 RDA로서 감사원이 시행한 2006년 9월 RDA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점수(24점 중 22점 “performing strongly”)를 획득하였다. One NorthEast의 2006/2007년도 총 예산은 £272,904,000이며 이 중 통합예산(SRB)이 90.2%를 차지한다. 2007년 현재 직원 수는 총 446명 (후원/파견 근무원 17명 포함)이다. North East 지역을 4개 권역(sub-region)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대해 1개씩, 총 4개의 통합프로그램(Single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통합프로그램들은 고용창출부문, 인력양성부문, 환경정비부문 등 8개 부문에 걸쳐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는 총 3,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Region)

□ 권역별 협력조직 SRP(Sub-Regional Partnership)

SRP는 RDA가 관장하는 Single Programme의 총괄 수행주체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협력조직이다. Single Programme의 대상인 권역(sub-region)별로 이에 속하는 지방정부들, 공공기관 및 단체, URC, 지역커뮤니티조직, 자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다. 예를 들어 North East 지역의 RDA인 One Northeast는 North East 지역을 4개 권역(sub-Region), 즉 Tees Valley · County Durham · Tyne and Wear · Northumberland 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씩 총 4개의 Single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4개 권역별로 각각 SRP가 결성되어 각각의 Single Programme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²²⁾

22) 4개 SRP의 명칭은 Tees Valley Partnership, County Durham Strategic Partnership,

SRP는 RDA가 수립한 지역경제전략(RES)을 토대로 자신들의 권역에 대한 재생사업전략 및 추진계획을 Single Programme 형태로 수립하며 이는 RDA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SRP가 수립하여 수행하는 Single Programme의 세부프로젝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RDA가 직접 기획하여 SRP에 수행을 위임한 전략프로젝트
- SRP가 직접 기획하는 전략프로젝트
- SRP가 지역내 사업주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여 심사·채택한 지역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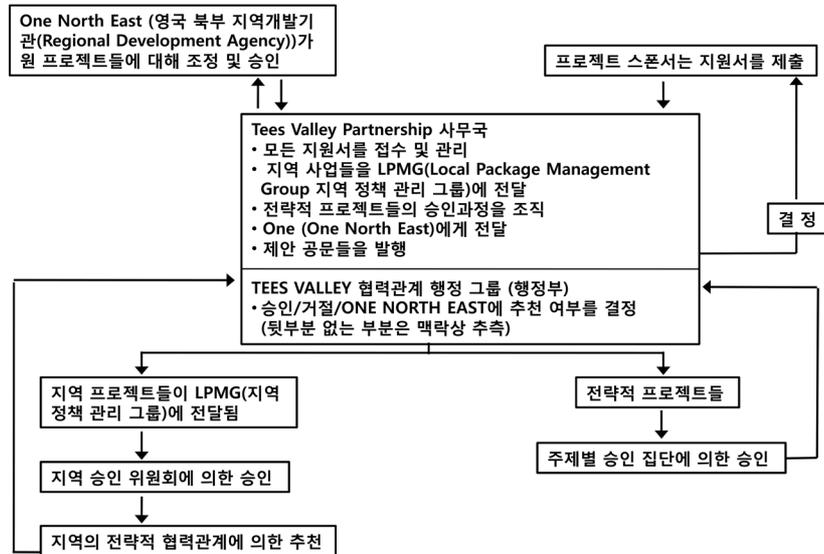
Single Programme의 승인 이후 여기에 포함된 각 세부 프로젝트는 SRP의 세부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RDA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어 실행된다.



〈그림 2〉 North East의 4개 Sub-Region들

TyneWear Partnership, Northumberland Strategic Partnership 이다.

사업심사 - 역할과 책임들



〈그림 3〉 SRP가 수립한 세부프로젝트의 평가·승인 절차

□ 지방정부 연합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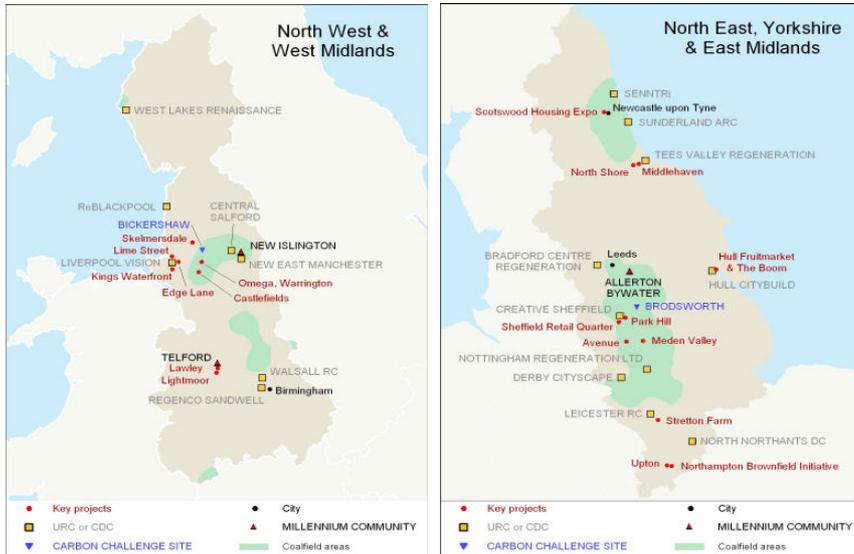
SRP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Single Programme(안)의 기획·작성 및 실행계획(안) 작성 업무는 권역(sub-Region)에 속하는 지방정부들의 연합조직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North East 지역의 권역(sub-Region) 중 하나인 Tees Valley의 경우 이 권역에 속하는 5개 지자체 (Darlington, Hartlepool, Middlesbrough, Redcar & Cleveland, Stockton) 정부가 합동으로 Tees Valley JSU(Joint Strategy Unit)를 조직(1996)하여 Tees Valley 권역의 골격계획(structure plan), 경제개발전략 등 각종 전략 및 사업 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Single Programme은 지방정부 연합사무국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SRP에서 이를 심의·확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SRP가 위원회 중심의 조직인 데에 비해 지방정부 연합사무국은 상근행정인력이 주축인 행정조직이다. Tees Valley JSU의 경우 상근인력 50명 규모의 조직이다.

□ 잉글리쉬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

1999년, Commission for the New Towns (CNT) 과 Urban Regeneration Agency (URA)를 통합하여 설립한 재생사업기구이다.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지자체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예산배정 및 직원임명권을 갖는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정부, URC, RDA, CABE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저렴한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토지개발, 쇠퇴주택의 갱신 및 쇠퇴지구에 대한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 등이 주된 사업영역이다. 지역 재생사업에는 RDA와의 협력 아래 SRP에 참여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2008년 Housing Corporation과 통합, Homes and Communities Agenc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4〉 Englishpartnership의 주요 사업지구

(<http://www.englishpartnerships.co.uk/regions.htm>)

□ 도시개발공사(UDC;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1980년 대처정부 시기에 지방정부·계획·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에 의해 특정 지역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공기업이다. DCLG 주도로 설립되며 예산배정 역시 DCLG가 관장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인 런던도클랜드개발공사(LDDC)는 1982년 설립되어 1998년에 임무를 완료하고 해산되었다. 1999년 URC가 설치되면서 UDC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특정사업을 위한 UDC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4개 UDC²³⁾가 활동 중이다.

23) Milton Keynes Partnership Committee (MKPC), Thurrock Thames Gateway UDC, The London Thames Gateway UDC, West Northamptonshire UDC를 말한다.

□ 도시재생회사(URC; Urban Regeneration Company)

전략적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수행을 목적으로 개발사업 수요가 있는 지역별로 설립하는 공기업이다. 대부분 RDA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며 English Partnership과 CLG가 그 운영을 관리한다. URC는 1999년 영국의 도시 정책방향 검토를 위해 설치한 'Urban Task Force'가 설립을 제안함에 따라 English Partnership이 조직모델을 개발하여 1999년 3개 URC를 시범적으로 설립²⁴⁾하는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잉글랜드에 19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각 1개씩 총 22개 URC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중 18개 URC의 최고위원회(board)에 잉글리쉬파트너십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 지역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주민조직

지역 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들의 연합단체, 지역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원봉사단체, 교회·대학 등 지역기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등 지역재생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걸린 주체들이 사업주체인 SRP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 마을재생사업 지역협력조직들(LSP; Local Strategical Partnership)

한편, Single Programme과는 별도로 마을재생기금(NRF) 지원으로 진행되는 마을재생사업의 책임조직인 지역전략협력조직(LSP)들 모두가 SRP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North East의 4개 권역별 SRP의 하나인 Tees Valley Partnership의 경우, Tees Valley 지역에 속한 5개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재생사업 추진 책임조직인 5개 LSP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 기타 재생사업 지원 조직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역센터(Regional Centre of Excellenc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지역재생정책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에 잉글리쉬파트너십, 정부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RDA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현재 잉글랜드에 지역(Region)별로 9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재생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North East 지역의 경우 IGNITE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활동

24) 리버풀, 이스트 맨체스터, 셰필드에 설립된 Liverpool Vision, New East Manchester, Sheffield One 이다.

중이며 이 지역의 재생사업 관련 280개 이상의 조직을 링크하면서 각종 소그룹 네트워크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²⁵⁾

◦ 건축·도시 전문기관

건축·도시설계 전문기관들은 Single programme에 실행주체로 참여하지는 않으며 설계 관련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즉 기관의 주된 활동 및 사업영역이 별도로 있는 가운데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은 부대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국가 차원의 건축·도시설계 전문기구인 CABE는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중요한 건축·도시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계기획검토(design review)를 중심으로 각종 관련 활동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재생사업 중 주요 프로젝트의 기획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

영국 전역에 22개가 설립되어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센터는 지역의 건축물과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주 영역으로 하는 건축가들의 활동단체이자 지역 자원봉사단체(charity)이다. 건축가, 교수 등 건축전문가들의 자원봉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우수 설계사례에 대한 소개(전시회, 출판 등), 지역 공무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도시 활동 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답사, 강연, 토론회, 프로젝트워크숍 등) 등이 주된 활동으로서 지역재생사업 중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건축센터는 활동하는 건축전문가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영국의 건축센터 역시 런던지역에 6개가 집중해 있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 기타 건축·도시전문기관들

이 밖에도 건축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The Glass-House²⁶⁾, 1929년 보행권 보호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로 설계에 대한 컨설팅, 가로환경 보호 캠페인,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로비 활동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하는 Living Streets²⁷⁾ 등 여러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원봉사기관(charity)으로 등록된 기관으로서 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된 활동영역이 별도로 있는 가운데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회가 있을 때 협력하는’

25) <http://www.ignite-ne.com/ignite/Main.nsf?OpenDatabase>

26) http://www.theglasshouse.org.uk/index.php?pg_id=17

27) <http://www.livingstreets.org.uk/>

부대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3) 마을재생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

□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1998년 블레어 정권이 사회적 배제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한 마을재생 정책이다.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중단되었으나 이를 통해 선정된 총 39개 재생 지원마을에서 시작된 10년 기간 총 20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가 관할 행정권역 내 재생사업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하여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경쟁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39개 지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력조직(partnership) 결성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이 정책은 2001년 새롭게 정비한 마을재생정책인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수립의 토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2001년 영국정부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 재생 정책을 본격화한 전략계획으로서, 근린재생 정책방향에 대한 중앙정부의 105개 방침(정책과제) 들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전략계획에 따라 마을재생기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과 커뮤니티 조직의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육성기금(CEF; Community Empowerment Fund)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중앙정부 커뮤니티·지자체부(LCG)의 마을재생국(NRU; Neighbourhood Renewal Unit)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전략계획을 통해 마을 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 및 지역전략 협력조직(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는 쇠퇴지역의 학교, 경찰조직, 자원조직 등 지역조직이 지역전략 협력조직(Local Strategic Partnership)에 참가하여 마을재생기금을 지원 받아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가 선정한 86개 지자체에 마을재생기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빈곤지수(Indices of Deprivation)

중앙정부는 Local Government Act 1988 the Special Grant powers in Section 88(b)에 의거하여 NRF(Neighbourhood Renewal Fund)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국회의 Special Grant Report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Special Grant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당국의 경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지정된다.

중앙정부는 Special Grant의 지원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빈곤지수 2000(ID2000; the Indices of Deprivation 2000)의 사용을 제안한다. ID2000은 각 지역의 빈곤 정도를 측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식으로 빈곤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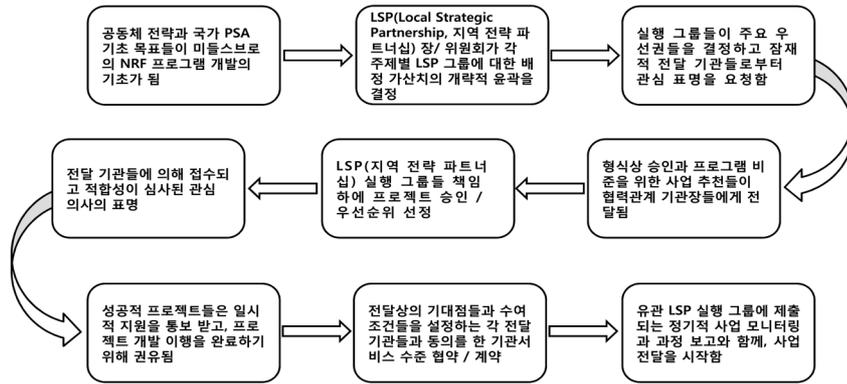
- 집중(Concentration): 각 지역에서 제일 빈곤영역의 열악한 정도
- 범위(Extent): 각 지역에서 빈곤영역이 얼마나 넓고 심한지의 정도
- 고용규모(Employment scale): 각 지역에서 빈곤인의 고용 정도
- 소득규모(Income scale): 각 지역에서 빈곤인의 수입 정도
- 평균점수(Average scores): 각 지역 모든 구의 빈곤 점수 평균
- 평균등급(Average ranks): 각 지역 모든 구의 등급 평균

중앙정부는 ID2000의 여섯 가지 빈곤의 지수 중 어느 것에서라도 가장 빈곤한 50개의 지역순위에 있는 지역들을 NRF 지원 가능 지역으로 제안한다. 이런 방식으로 81개의 지역정부들이 뽑혔다. 추가로 이러한 지역정부들의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ID2000을 쓰는 관계로 그 과도기적인 시기 첫 3년간은 예전에 썼던 the old Index of Local Deprivation에 기준하여 4가지 방식의 빈곤 측정 중 어느 것에서라도 가장 빈곤한 50개의 지역순위에 있는 지역들 중 앞 81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을 NRF 지원 가능 지역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추가된 지역 7개를 더하여 모두 88개의 지역이 선택되었다.

□ 마을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에 따라 2001년부터 조성한 지역 교부 예산이다.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 자율로 지역재생사업 전반에 투입할 수 있는 교부금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1-2006 4년간 총 18.75억 파운드를 88개 지자체의 빈곤지역에 지원하였으며 2006-2008 2년간 총 10.5억 파운드를 86개 지자체의 빈곤지역에 지원하였다.

NRF(Neighborhood Renewal Fund, 근린재생기금) 배정 과정 순서도



〈그림 5〉 마을재생기금 예산흐름도

□ 지역협정(LAA; Local Area Agreement)

중앙정부가 지역의 주체들과 맺는 협정으로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부금의 우선적 용도를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서 명시하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의 내용을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이러한 사업방향에 동의하며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협정은 3년 기한으로 갱신되며, 체결 당사자는 중앙정부 쪽은 각 지역(Region)의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가, 지역 쪽은 지방정부와 LSP이다. 지역의 여러 조직이나 단체는 LSP를 통해 이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이 된다.

□ 지역별 마을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ies)

마을재생기금(NRF)을 수령하는 지자체의 LSP와 지방정부가 NRF에 의한 재생사업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마을재생전략계획이다. 지역별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 및 중앙정부 마을재생국(NRU)의 검토를 통해 승인·확정된다. 사업부문별로(6개 정도) 사업개요·지역현황·실행전략 및 과제·성과지표·기대효과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커뮤니티 재생전략(Community Strategy)

영국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가 관할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수립해야 하는 전략계획이다. NRF를 수령하는 지역에

서는 지역별 마을재생전략(LNRS)을 Community Strategy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 커뮤니티 육성기금(CEF; Community Empowerment Fund)

NRF와는 별도로 지역의 커뮤니티조직과 자원조직들의 활성화 및 LSP 참여 장려를 위한 기금으로서 NRF 지원을 받는 지역의 LSP에 참여하는 조직들에게 지원된다. 지원을 받는 지역조직들은 지방정부의 개입 없이 지역 Government Office를 창구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인 CLG는 이들 커뮤니티조직들의 경험공유 및 협력을 위해 전국의 커뮤니티조직, 자원조직, 제3섹터조직들을 연계하는 CENs(Community Empowerment Networks)를 운영하고 있다.

□ 통합 커뮤니티프로그램(Single Community Programme)

커뮤니티 육성기금(CEF) 외에도 영국 정부는 2001년 근린재생 국가전략 책정과 함께 지역조직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Community Chests, Community Learning Chests라는 이름으로 지역조직 주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²⁸⁾. 2005년 NRU는 이들 3개 프로그램을 통합커뮤니티프로그램(Single Community Programme)으로 통합하여 지원 대상 지역조직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는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마을재생국(Neighbourhood Renewal Unit)²⁹⁾

2001년 근린재생 국가전략 책정과 함께 커뮤니티·지자체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설치한 마을재생정책 전담부서이다. 빈곤지역으로서 마을재생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6개 지역의 LSP들을 마을재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도 1998-1999년 시행된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에 의해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지원·관리업무, 마을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 업무³⁰⁾, 통합커뮤니티 프로그램(Single Community Programme)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28) 커뮤니티 체스트(Community Chests)는 소규모 지역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커뮤니티 교육 체스트(Community Learning Chests)는 지역주민들의 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9) <http://www.neighbourhood.gov.uk/page.asp?id=3> 참조

30) 지자체별로 마을관리협력조직(NMP; Neighbourhood Management Partnership)을 조직토록 하여 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NMP는 LSP에 참여한다.

업무는 잉글랜드 9개 지역(Region) 별로 설치된 Government Office의 마을재생팀(neighbourhood renewal team)을 통해 수행한다.

□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LSP의 주요한 일원으로 참여하며 마을재생사업계획인 커뮤니티 전략계획(Community Strategy)을 수립한다. 지방정부가 수립한 마을재생사업 계획은 LSP에서의 협의·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지원받는 마을재생기금(NRF)의 회계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North East 지역의 지방정부 중 하나인 Middlesbrough의 경우 재생국(Regeneration)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지역전략협력조직(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의 실행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직되는 지역 협력조직으로서 마을재생기금을 지원받는 마을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즉 마을재생사업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입안하고 이를 LSP가 협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LSP에는 해당 지자체 지방정부, 지역공공기관, 기업단체, 자원봉사단체, 주민조직 등 마을재생사업에 관련 있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교부한 NRF 역시 LSP가 관리하고 집행한다. NRF의 회계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나 이 재원의 배분 권한은 LSP에 있다.

LSP는 최초 조직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단 조직된 이후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board)에 의해 운영되며 최고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³¹⁾ 현재 중앙정부 커뮤니티·지자체부의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지자체별 LSP들의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³²⁾ NorthEast 지역의 Middlesbrough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LSP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Middlesbrough : Middlesbrough Partnership³³⁾
- Stockton-on-Tees : Stockton Renaissance
- Birmingham : Be Birmingham³⁴⁾
- Liverpool : Liverpool First³⁵⁾

31) 많은 경우 참여하는 주요 단체가 번갈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32) <http://www.neighbourhood.gov.uk/page.asp?id=583>,

<http://www.neighbourhood.gov.uk/page.asp?id=542>

33) <http://www.middlesbroughpartnership.org.uk/>

34) <http://www.bebirmingham.org.uk/>

LSP에는 마을재생사업 추진에 관련된 기관 · 단체 · 주민조직 등이 참여한다. 참여 주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 정부 및 지역공공기관들
 - 지방의회,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 직업훈련원 · 경찰서 · 소방서 등 공공기관
 - 대학교, 비영리 주택협회 등 지역기반 사회적기업들
- 지역 커뮤니티조직들
 - 지자체 소속 커뮤니티의회들(community councils)
 - 주민조직, 자원봉사단체들³⁶⁾
- 민간부문
 - 방송국, 지역언론사
 - 지역상공회의소, 기업연락단체, 주택조합, 상인조합 등 민간이익단체들

□ 기타 마을재생사업 지원조직

- IDeA(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local government)³⁷⁾

지방정부들에 대한 마을재생사업 관련 정보 공유 제공과 교류 알선을 위해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1997년 결성)가 설립한 기관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마을재생 전문가 알선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건축 · 도시 전문기관

앞의 광역재생사업에서 서술했듯이 건축 · 도시설계 전문기관들이 마을재생 사업에 직접적인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LSP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마을재생사업 추진 중 설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즉 기관의 주된 활동 및 사업영역이 별도로 있는 가운데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은 부대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5) <http://www.liverpoolfirst.org.uk/>

36) LSP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이나 자원봉사단체들은 모두 커뮤니티육성기금(CEF)을 지원받으며, 이들 조직의 연대 장치인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기구가 이들을 대표하는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37) <http://www.idea.gov.uk/idk/core/page.do?pageId=1>

2) 일본

(1) 개요

□ 총리 직속 4개 본부를 중심으로 다원적·다부처 협력적 도시·지역재생정책 추진

일본의 도시·지역재생정책은 내각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2001.5 설치),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2002.12 설치), 지역재생본부(2003.10 설치),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2006.8 설치)³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4개 본부는 모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대신(장관)이 본부원으로 참여하는 총리 직속기구이다. 4개 본부 중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정책이 많은 도시재생본부는 국토교통성대신이 부분부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본부들은 특정 부처대신이 아니라 내각관방장관과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담당하고 있다.

- 도시재생본부 :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프로젝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도시재생’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
-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각종 규제에 대한 특별조치를 정하는 ‘구조개혁특구사업’ 추진
- 지역재생본부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역재생사업’ 지원 추진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교외화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쇠퇴 현상을 막고 기성 도시 내에 생활거점을 재생하기 위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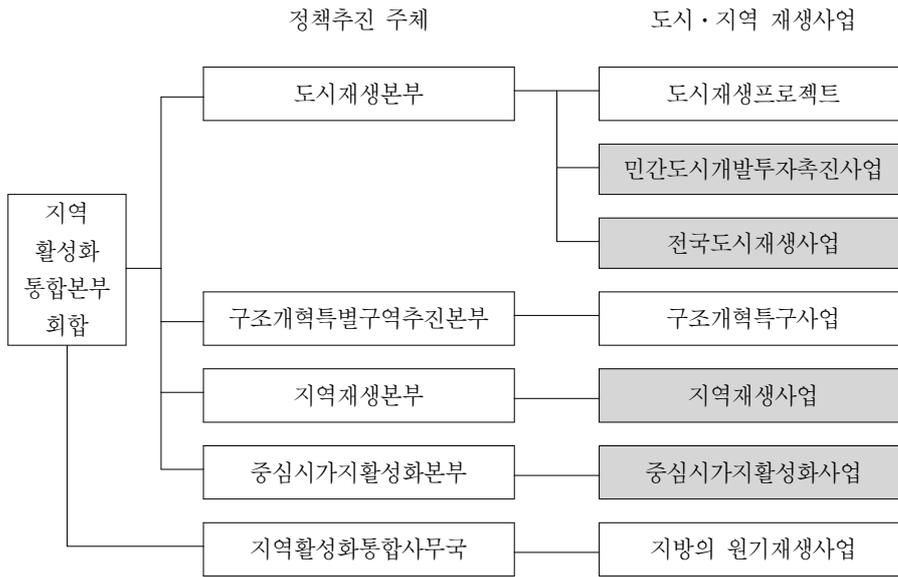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은 4개 본부가 각각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재생사업에 대해 중앙 부처들이 각각 관장하는 지원조치들을 서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에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관장하는 보조금,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4개 본부가 재생정책을 각각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상호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38)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은 19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2006년 이를 개정, 정책 추진구도를 일신하면서 내각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2007년 10월부터는 4개 본부의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개 본부의 회의를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4개 본부 사무국도 통합하여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은 4개 본부별로 추진되는 재생정책들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 중 지역재생 관련제도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2007년 11월 ‘지방재생전략’ 을 성안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재생 지원사업인 ‘지방의 원기재생사업’ 을 3개년 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4개 본부의 재생사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일본 도시·지역재생정책의 구조

이들 재생사업 중 ‘도시재생프로젝트’ 는 국가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구조개혁특구사업’ 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업무협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과는 거리가 있다.³⁹⁾ 또한 ‘지방의 원기재생사업’ 은 범부처적 재생관련제도들의 연계 강화를 취지로 2008년부터 3년간의 기한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4개 사업을 일본의 도시·지역재생 정책사업 사례로서 정리하였다.

39) 구조개혁특별구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8회에 걸쳐 총 1,060개의 계획이 인정되었다. 이 중 상당 수가 전국적인 구조개혁 적용 등으로 특구 지정이 해제되고 현재까지 특구로 남아 있는 계획은 346개이다.

□ 국가 주도 도시재생사업과 지자체 주도 재생사업의 병행

도시·지역재생정책 관련 4개 본부 모두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재생본부는 지자체들이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신청토록 한 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쟁방식으로, 구조개혁본부는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평가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생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는 지자체들이 수립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평가·인정한 후 사업내용에 따라 중앙부처들의 지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직접 주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재생사업은 도시재생본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는 이러한 과제를 ‘도시재생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중앙 부처들의 추진 내용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⁴⁰⁾.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본부가 직접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방침을 수립하고 이 방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관련주체들의 참여-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재생사업은 모두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장소에 직접 관련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본부의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정책은 개발사업주체인 민간업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성대신이 평가·인정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방재생사업이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모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조직이나 주민조직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 전담기구를 통한 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

재생정책의 입안 및 기본방침 수립 등의 업무는 4개 본부가 직접 수행하지만, 지자체별로 수립된 사업계획의 평가·선정, 각종 지원 조치 등 재생사업 지원정책에 따르는 구체적인 업무들의 상당 부분은 별도의 공적 전담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의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정책의 경우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 지역정비방침 수립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인정 업무는 국토교통성장관이 담당하지만 인정받은 민간재생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가 담당하

40) 현재 23개의 도시재생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추진중이다.

고 있다. 전국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업 역시 지자체에 대한 마치즈쿠리교부금은 국토교통성이 교부하지만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리, 지자체들간의 교류네트워크 운영, 사후평가 및 우수 지자체 시상제도 운영 등의 업무는 (재)도시미래추진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민간도시개발투자 촉진 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

□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 위한 긴급조치

2001년 8월 도시재생본부는 민간경제단체와 지방정부 등이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제출토록 하고 그 중 286개 프로젝트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 지방정부 및 관계 중앙부처가 각 프로젝트의 촉진방책을 검토하였다. 이어 2002년 6월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 국가 주도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상의 특례,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 도시 내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촉진해야 할 지역으로 정부가 직접 지정한 지역이다. 2008년 3월 현재 65개 지역, 약 6,612ha가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역정비방침의 수립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역정비방침을 수립, ①정비목표, ②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증진해야 할 도시기능에 관한 사항, ③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익적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④ 기타 긴급히 추진해야 할 시가지 정비관련 필요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해 지역 재생사업에 관련된 중앙부처, 지방정부, 사업시행 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당해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목표와 지향하는 도시기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정책 취지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침은 당해 지구에 대한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적용된다.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의 특례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유도를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를 적용 제외하는 한편 자유도 높은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와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도시계획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및 사업 인가 수속을 일정 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지구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중 도시재생에 공헌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용적·높이를 특별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 지정한다.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65개 중 40개 지구가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2008.6 현재). 도시재생특별지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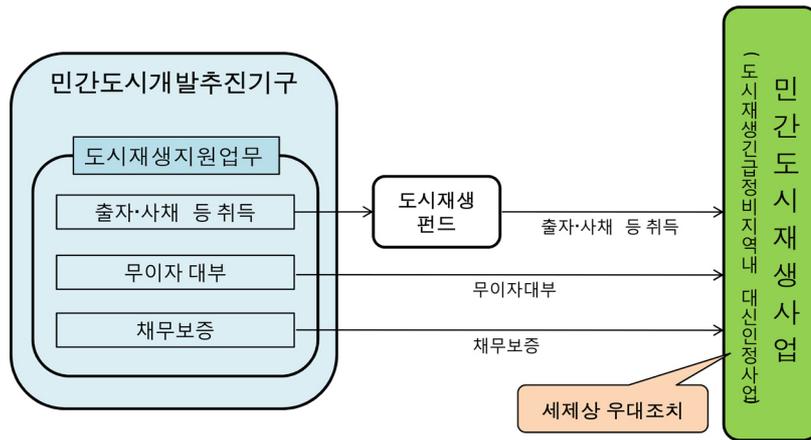
〈표 3〉 도시재생 특별지구의 건축제한 완화사항

건축제한의 종류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의 적용
용도규제 (건축기준법 제48조) 특별용도지구내의 용도규제 (건축기준법 제49조)	도시재생특별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유도 용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용적률 제한 (건축기준법 제53조) 건폐율 제한 (건축기준법 제53조)	도시재생특별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수치를 적용 (건폐율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으로 정하는 수치를 완화할 수 없다)
사선제한 (건축기준법 제56조) 고도지구내의 높이 제한 (건축기준법 제58조)	적용 제외(도시재생특별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제한을 적용)
일영규제 (건축기준법 제56조의2)	적용 제외 (단, 일영규제 대상구역 내에 일영을 발생하는 건축물은 제외)

◦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국토교통성대신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9월 현재 국토교통성대신이 인정한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은 26개에 이른다.

인정받은 사업은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로부터 채무보증(인정사업자가 차입하거나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보증), 무이자대부(지방정부 등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는 공공시설 정비 비용의 일부)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을 통한 출자 및 사채 등의 취득(인정사업자에게 출자하거나 인정사업자 발행 사채를 취득하여 줌으로써 자금을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와 사업에 협력하는 지주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가 주어지며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금융지원(융자제도, 도시재생펀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인정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도시재생본부와 국토교통성

도시재생본부는 2001년 5월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대신을 본부원으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시행(2002.6)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되었다. 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 지역정비방침의 작성 및 시행 추진, 기타 도시재생 관련 중요사항의 기획·입안·조정을 담당한다. 도시재생본부의 사무는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무를 국토교통성이 주관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지역정비국이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성대신의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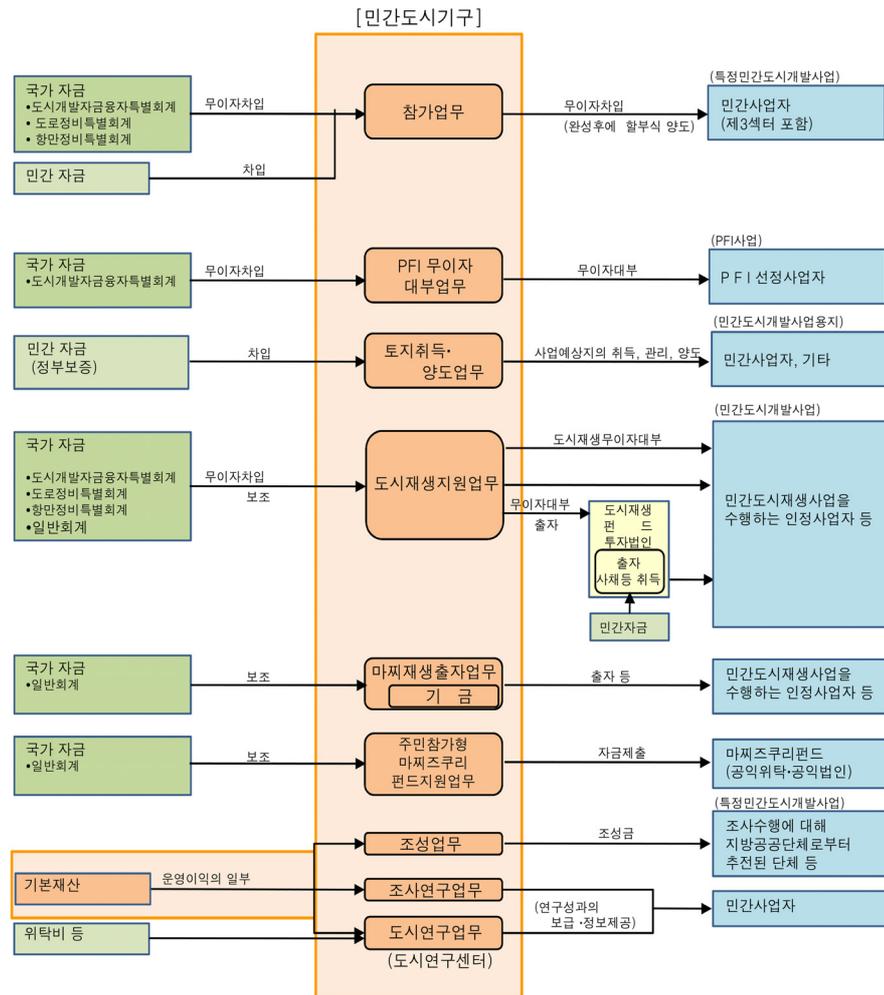
1987년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어 건설대신(당시 국토교통성)의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다. 설립기본금은 56.2억엔이다. 국가 예산 보조 혹은 무이자차입을 통해 민간사업자 사업에 참여, 주요 PF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금보조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민간도시개발투자 촉진정책에서는 국토교통성대신의 인정을 받은 민간재생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무이자대부, 도시재생펀드투자법인을 통한 출자 및 사채 취득 등의

41) <http://www.minto.or.jp/p-menu.html>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독)도시재생기구 (UR도시기구; Urban Renaissance Agency)⁴²⁾

2004년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이 통합하여 설립된 도시재생사업기구이다. 자체적인 주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사업기획 및 관련여건정비 등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파트너로서의 직접적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업무

42) <http://www.ur-net.go.jp/>

(3) 전국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

□ 전국 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와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

2002년 4월 도시재생본부는 ‘전국 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재생 제안을 모집하여 재생사업 주제별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3년부터는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시정촌) 및 NPO 등을 대상으로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도시재생활동 사업제안을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안된 644건 중 171건을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04년 162건(566건 제안), 2005년 156건(587건 제안), 2006년 159건(541건 제안), 2007년 157건(489건 제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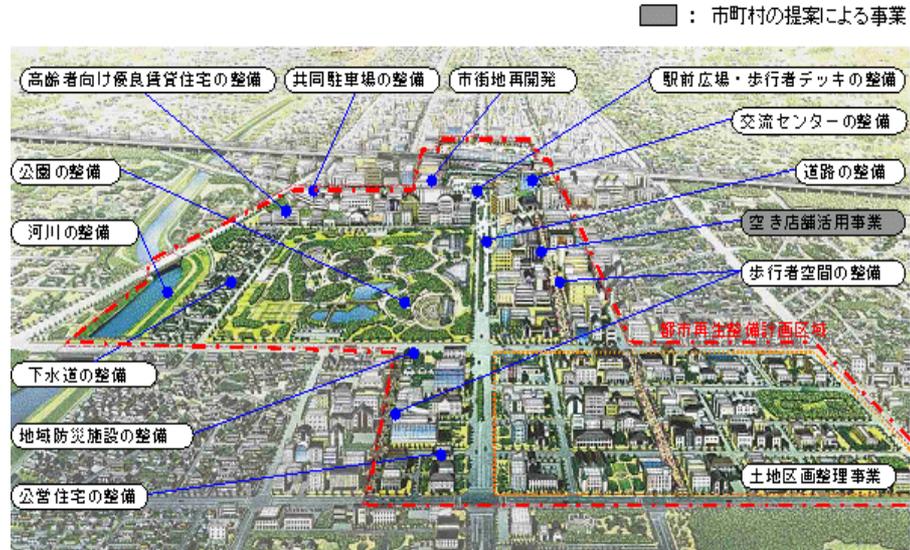
□ 마치즈쿠리 교부금 제도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를 통한 예산지원을 위해 2003년에는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추진비 중 일부를 전국도시재생 지원금으로 책정하였으나, 2004년 4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 기초지자체의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한 마치즈쿠리교부금을 창설하였다. 2009년도 마치즈쿠리교부금 예산액은 2,332억엔이 책정되어 있다.⁴³⁾ 마치즈쿠리교부금은 국토교통성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는데,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 정책을 참고하여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종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계획으로 지원하며 각 년도 소요액을 일괄 교부하고, 대상 시설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사업(주민조직활동 지원 등)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별 국가 예산 지원기준·보조비율에 관계없이 지방정부 재량으로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시설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전에 상세한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 지원 대상은 도로·공원·하수도·하천·다목적광장·수경시설·지역교류센터·토지구획정리사업·시가지재개발사업·지역우량임대주택사업·

43) 지역활성화 종합사무국, 지방재생 관련 주된 사무사업 일람(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 地方再生関連の主な事務事業一覽).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iryou/pdf/081219senryaku-jimujigyou.pdf>

공영주택사업·주택지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시정촌의 제안에 따른 사업과 각종조사·사회적 실험 등의 소프트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마치즈쿠리에 필요한 폭넓은 시설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교부기간은 대략 3-5년이며 총사업비 대비 교부금 비율은 대략 40% 정도이다.



〈그림 9〉 마치즈쿠리 교부금에 의한 사업 이미지

◦ 도시재생정비계획

기초지자체(시정촌)가 마치즈쿠리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 등 각종 사업들을 포함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에는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목표달성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를 명기하여야 한다.

예) 목표 : 역주변의 활력을 되살린다
지표 : 가로 방문자 수, 거주자 수(가능한 한 수치화/지표화 한다)

◦ 마치즈쿠리교부금 지원

중앙정부는 시정촌이 작성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이 도시재생기본방침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마치즈쿠리 교부금을 사업계획연도별로 지구단위로 일괄 교부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도시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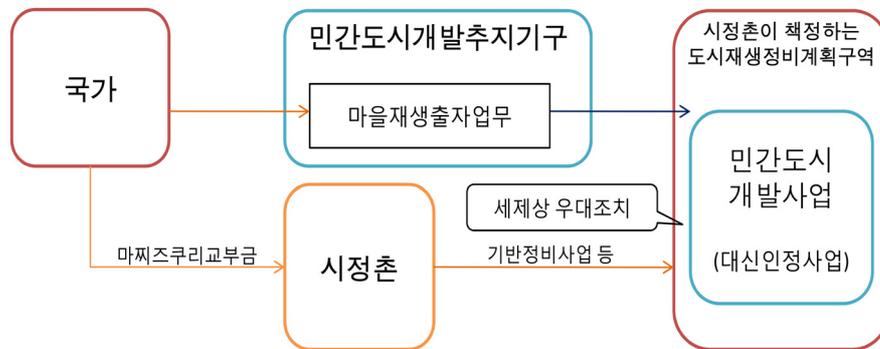
특히 민간활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부금 지원기간 종료 시점에서 시정촌에게 목표달성 상황 등에 관한 사후평가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공표한다.

□ 도시재생기구에 의한 지원

마치즈쿠리사업 경험이 적고 전문지식을 갖는 공무원이 부족한 시정촌이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는 시정촌의 위탁을 받아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지원(관련주체들 간의 합의 형성, 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의 코디네이터 업무(관련주체간 합의형성, 사업간 조정 등)를 수행하고 있다.

□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조치

도시재생정비계획구역 안에서의 사업은 시정촌이 지원받은 마치즈쿠리교부금 및 광역지자체(都道府県)의 지역자립·활성화 교부금을 지원받는 것과 함께 국토교통성대신이 인정하는 인정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08년 현재 도시재생정비계획구역에서 14건의 민간사업이 국토교통성대신의 인정을 받았음)



〈그림 10〉 마치즈쿠리사업에 대한 지원체제

□ 도시재생주체 네트워크(担い手 network) 포털사이트 운영

도시재생본부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지연(地縁)단체·상점회·NPO·대학·개발사업자·기업·기업단체 등 도시재생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주체 네트워크(担い手 network)’ 포털사이트⁴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종 주체들과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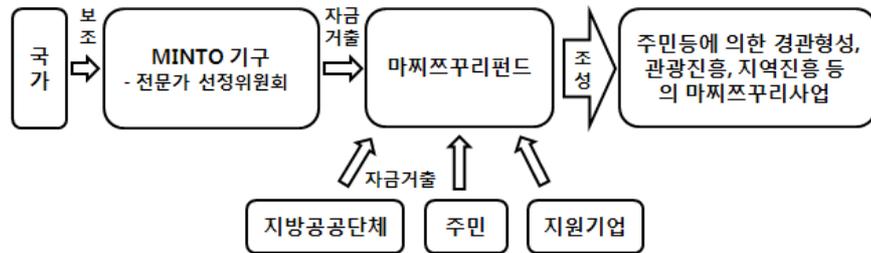
44) <http://www.toshisaisei.go.jp/ninaite/04.html>

진하며 도시재생 주체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역의 저력을 키우는 그들의 활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기존 마치즈쿠리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병행 :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제도

한편,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2002년에 ‘전국도시재생’이라는 전국적인 정책으로 공식화되기 훨씬 전인 1980년대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초지자체 정부 주도로 마치즈쿠리센터, 도시정비공사 등 마치즈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갖추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1992년 동경 세타가야구가 공익신탁 형태로 마치즈쿠리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NPO, 주민단체 등의 마치즈쿠리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수준까지 진전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제도’를 창설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마치즈쿠리 펀드를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을 통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4개 지역 펀드들이 지원을 받았다.⁴⁵⁾ 펀드 지원은 원칙적으로 2000만엔, 최고 5000만엔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 대상 지역의 지방정부 출자금액, 펀드의 총자산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⁴⁶⁾



〈그림 11〉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제도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도시재생본부와 국토교통성

2001년 5월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대신을 본부원

45) http://www.minto.or.jp/pdf/h20fund_list.pdf

46) <http://www.minto.or.jp/p-menu.html>

으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시행(2002.6)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되었다.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정책과 함께 전국 시정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고 그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도시재생본부의 사무는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무가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 지방정부 마치즈쿠리 사업 담당부서

각 지방정부(시정촌)는 마치즈쿠리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다. 마치즈쿠리 교부금 획득을 위한 도시재생정비계획 수립 및 교부금에 의한 각종 사업 추진을 책임 수행한다. 담당부서체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업별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 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중앙정부 및 기타 참여주체들과의 교섭·협력 창구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를 두고 있다. 니이가타현 나가오카(長岡)시의 경우 도시정비부 도시계획과에서 관련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별로 토목과, 도로건설과, 마치나카정비과 등의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다. 나가노(長野)현 이이다(飯田)시의 경우는 기획부 기획과에서, 야마가타(山形)현 츠루오카(鶴岡)시는 건설부 도시계획과에서 마치즈쿠리교부금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마치즈쿠리 센터

일본의 여러 지방정부가 마치즈쿠리사업 지원을 위해 마치즈쿠리 센터를 조직하고 있다. 마치즈쿠리 센터는 마치즈쿠리 관련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공유·보급, 관련 기술자문 및 지원, 시민 마치즈쿠리단체의 육성·지원, 마치즈쿠리 전문가 발굴·육성, 마치즈쿠리 관련 네트워크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내 마치즈쿠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즈쿠리 센터는 지자체의 전액 출자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⁴⁷⁾, 지자체가 마치즈쿠리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 등에 부속된 형태⁴⁸⁾가 대부분이며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설립된 경우⁴⁹⁾도 일부 있다.

□ 지자체 설립 지방공사

기초지자체의 전액출자로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지역 내 마치즈쿠리 사업을

47) 교토시 경관마치즈쿠리센터, 나고야 도시센터, 오사카시도시공학정보센터, 세타가야트러스트 마치즈쿠리 등

48) 고베 마치즈쿠리센터, 하마마츠 마치즈쿠리센터, 효고 마치즈쿠리센터, 치바현 마치즈쿠리 정보센터 등

49) 치바현 마치즈쿠리소프트센터, 이와테 경관마치즈쿠리센터, 요코하마시 마치즈쿠리센터, 나라 마치즈쿠리센터 등

수행한다.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연계·협력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정책수행 대행, 사업 수행,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치즈쿠리 센터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 마치즈쿠리회사

마치즈쿠리사업 중 건설, 관리운영 등 사업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를 사업범위로 삼아 지역기반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대부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다.⁵⁰⁾

□ (재)도시미래추진기구(都市みらい推進機構)⁵¹⁾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도시거점의 형성 등 활력있는 도시만들기를 지향하는 주민-민간기업-정부의 파트너십 조직으로 1985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당초에는 철도·공장적지 등 대규모 유희지를 도시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 관련업무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회원기업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기업입지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넓혀 최근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인 도시재생·토지활용·중심시가지활성화 및 주민참가 마치즈쿠리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국토교통성의 마치즈쿠리교부금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상담·정보수집·홍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 마치즈쿠리교부금제도의 활용 지원

시정촌의 마치즈쿠리교부금사업에 관한 각종 상담,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후평가 작성 지원,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 마치즈쿠리교부금사업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まち交 net)의 운영

마치즈쿠리교부금 제도의 운용 및 활용사례 정보 제공,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설립된 <마치즈쿠리교부금정보교류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면서 <마치즈쿠리교부금정보시스템(마을교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대상(まち交大賞)

마치즈쿠리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성 후원으로 우수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입안한 시정촌을 표창하고 수상지구 사례를 전국에 소개하고 있다.

50) 세부내용은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참조

51) 기타 기능 및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http://www.toshimirai.jp/index.html> 참조

□ 마치즈쿠리교부금 정보교류협의회⁵²⁾

마치즈쿠리교부금 정보교류협의회는 마치즈쿠리교부금을 활용해 지역의 창의연구를 살린 마을만들기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들이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6년 2월에 설립되었다. (재)도시미래추진기구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구로서, 마치즈쿠리사업에서도 국토교통성대신의 인정을 받는 민간재생사업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독)도시재생기구 (UR도시기구)

시정촌의 위탁을 받아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지원(관련주체들 간의 합의 형성, 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의 코디네이터 업무(관련주체간 합의 형성, 사업간 조정 등)를 수행하고 있다.

□ 건축사회 지역공헌활동센터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⁵³⁾

건축사회(建築士會) 지역공헌활동센터는 건축사가 지역의 마치즈쿠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건축사회가 설립한 조직이다. 건축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마치즈쿠리 활동단체에 참여하고 활동계획을 건축사회에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이 지역의 마치즈쿠리사업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상공회의소·상점회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마치즈쿠리 전략·기획·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는 이들 지역공헌활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각 지역 활동센터의 설립 및 설립 후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정보·기술 제공, 마치즈쿠리 건축사의 육성 및 상호 교류망 구축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지역기반 자율조직들 : 주민조직, 지역조직, NPO법인 등

일본의 지역기반 마치즈쿠리사업을 이끌어가는 기반에는 폭넓은 지역기반 자율조직들의 활동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주민자치회나 연구회, 전문가단체

52) www.machikou-net.org

53)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 및 지역공헌활동센터의 세부 내역과 활동단체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 홈페이지(<http://www.kenchikushi-koken.org/>) 참조

에서부터 기업인단체, 사회적기업, NPO법인 등 그 성격이 다양하며 활동분야 역시 직접적인 마치즈쿠리활동에서부터 교육·문화·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데 각 지역에서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즈오카(靜岡)현 하마마쓰(浜松)시(인구 81만명 규모)의 마치즈쿠리센터에서 마치즈쿠리 관련 등록단체로 게재하고 있는 단체는 154개에 이르고 있다.⁵⁴⁾

(4)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⁵⁵⁾

□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마을만들기 3법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은 지방중소도시의 교외화 및 중심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 내에 생활거점을 재생하기 위해 중심시가지에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9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추진되다가 2006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개정하여 재편한 사업지원체제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환경의 정비와 상업활동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을 개정, 특별용도지구제도를 통해 소규모 상점을 쇠퇴시킬 위험이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이제까지 소규모상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에 대해 일부 영업범위를 제한해오던 법률(大店法, 1974 제정)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을 제정, 대규모점포 출점시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고려한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들 3개 법률을 소위 마을만들기 3법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의해 각 지자체들은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4월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623개(661지구)에 이르고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TMO)로 인정된 단체가 356개에 이르렀다.⁵⁶⁾

54) 하마마쓰 마치즈쿠리지원센터 웹페이지

(<http://www.hamamatsu-machi.jp/center/05data/01group.htm>)

55) 국토교통성 중심시가지활성화 관련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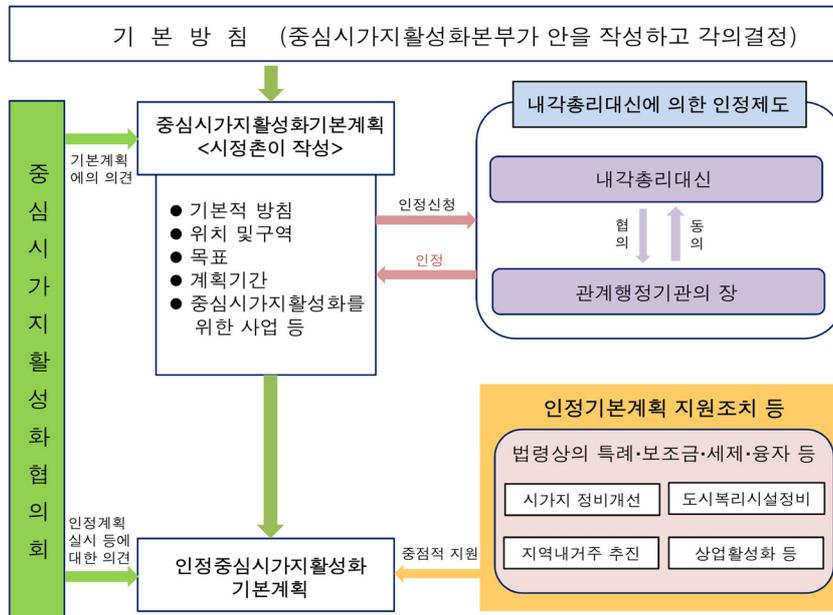
<http://www.mlit.go.jp/crd/index/pamphlet/index.html> 참조

56) 일본건축학회편(日本建築學會編), 2005, 중심시가지활성화와 마을만들기회사(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會社) 3쪽.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중심시가지 거주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공공공익시설의 이전 및 교외 대형점의 입지 역시 계속되었다.⁵⁷⁾ TMO 들 중 활발한 역할을 하는 단체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 6월 도시계획법 및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개정하고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는 등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을 전면 재편하였다.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은 국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인정제도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의 핵심은 지자체(시정촌)가 작성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에 대해 총리대신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신설하고 인정된 기본계획에 대해 법률, 세제 및 보조사업을 통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총 66개 지자체 (67개 기본계획)가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에 의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인정 절차

57) 도시계획법상의 특별용도지구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나 대형 쇼핑몰터 등은 도시계획 범위 밖의 교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 사전상담 : 지자체는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 내각부(内閣府)의 중심시가지활성화담당실,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 등을 통해 각종 사업 및 도시계획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계획의 작성 : 각 지역의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 (2006.9. 각의 결정)과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신청 매뉴얼’ 등에 기초하여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기본계획은 객관적 현상분석, 필요(needs) 분석에 근거한 사업의 집중 실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 각종 사업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협력 속에 지역의 추진체제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정 신청 : 인정신청 수속은 내각부 중심시가지활성화담당실이 맡고 있다.
- 심사기준
 1. 기본방침에의 적합 여부
 2. 기본계획의 실시가 지자체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실현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리라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기본계획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관계행정기관장의 동의
- 인정

□ 민간주체의 중시 : 마치즈쿠리회사,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 지역경제인단체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증진을 추진하는 주체(마치즈쿠리회사,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와 경제 활력 향상을 추진하는 주체(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며, 개발업체, 상업관계자, 토지권리자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기본계획 책정 주체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결성을 통해 여러 주체들의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부처의 지원사업들을 연계한 지원조치

인정을 받은 기본계획에 대해 사업내용에 따라 각부처 지원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인정과 연계한 특례조치	국토교통성	- 마치즈쿠리 교부금
	경제산업성	- 전략적중심시가지상업 등 활성화지원사업비 보조금 - 전략적중심시가지중소상업등활성화지원사업비보조금 - 중소기업상업 고도화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총무성	- 중심시가지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 중심시가지재활성화특별대책사업
인정과 연계한 중점적 지원조치	경제산업성	- 중심시가지상업활성화진단·서포트사업 - 중심시가지상업활성화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농림수산성	- 식품소매업 코스트 감축·기능강화구조개선사업 중 식품소매업코스트감축모델 검토·실증사업 - 식품유통고부가가치모델추진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타 지원조치	경제산업성	- 중심시가지상업등활성화지원업무 · 중심시가지·상점가에 출점하는 중소기업상업자들의 설비 투자자금 등에 대한 저리융자(기업활력강화대부-기업활력 강화자금) ·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의 특례 (제2종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특례구역)
	농림수산성	도매시장시설정비대책
기획·조사 활동 지원	전국도시재생 모델조사	NPO 법인 등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창의성에 기초한 선도적 도시재생 활동으로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해 모델조사를 계기로 보다 확산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
	마치즈쿠리계획 책정주체 지원사업	토지관리자와 마치즈쿠리 NPO법인 등 지역의 마을만들기 주체가 스스로 지구계획 등의 도시계획 초안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에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기초조사(토지이용·건축물에 관한 현황파악, 시가지환경조사 등), 지구진단(지역과제의 추출, 건축규제 등의 도입효과분석 등), 지구계획 등 도시계획 제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
	각종사업을 위한 조사비	생활 활력 재생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의 실행을 전제로 당해사업의 실행을 위한 조사, 컨설턴트 파견, 계획입안·조사 등의 소프트한 활동을 지원

□ 재생사업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 의한 금융지원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에 대한 지원 : 당 기구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제도 이용에 대한 자문, 민간도시개발프로젝트의 사례 및 다른 도시의 마치즈쿠리 정보 등 제공

- 인정기본계획과 연계한 민간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지원 : 민간사업에 대한 출자(지역재생 출자업무), 민간사업에 대한 저리자금 제공(참가업무)
- 비영리적인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 지원 : 주민 등이 자주적으로 진행하는 마치즈쿠리 사업을 지원하는 ‘마치즈쿠리펀드’ 에 자금 출연(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업무)
 - 도시재생기구에 의한 마치즈쿠리 지원
- 조정(coordination)
 - 초기 조정 : 마치즈쿠리에 관한 정보 제공, 각종 조사, 관계자들간 합의 형성 지원, 사업기획, 소프트시책 등의 제안, 정부와의 관계 조정
 - 계획 조정 : 민간사업자 유치·유도, 사업추진체제 구축 제안, 민간사업자의 needs 파악, 정부와의 관계 조정
 - 사업 조정 : 민간재개발사업 등의 사무국 지원, 공정 조정, 정부와의 협의, 도시계획 제안
- 직접적 사업시행
 -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실행·수탁
- 주요 마치즈쿠리 지원제도
 - 도시재생 어드바이저 제도 : 전문가에 의한 마치즈쿠리 관련 자문
 - 인정기본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취득제도 :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저이용·미이용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의 집약화 등 권리조정을 수반하는 사업 시행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및 관련 부처

2006년 6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과 함께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대신을 본부원으로 하여 설치되었다.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의 기본적 방침을 설정하여 각 지자체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인정업무를 관할한다.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의 사무국은 재생사업 관련 다른본부들의 사무국과 통합한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내

각부가 주로 관련 지원제도들을 담당하고 있다.

□ 지방정부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담당부서

각 지방정부(시정촌)는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다.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주체이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다. 담당부서체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업별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 관련업무를 취합하고 중앙정부 및 기타 참여주체들과의 교섭·협력 창구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를 두고 있다.

□ 마치즈쿠리회사

중심시가지의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시가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주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개발업체이다. 마치즈쿠리회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비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실행하기에 곤란한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즉 ‘마을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역밀착형 개발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마치즈쿠리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2008년 12월 현재 전국에 49개가 설립되어 활동중이다.⁵⁸⁾

□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마치즈쿠리사업에 적극적인 공익법인이나 NPO 법인들을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로 지정하여 마치즈쿠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중심시가지 마치즈쿠리사업추진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TMO로 지정된 기관들은 대부분 지자체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지방공사, 혹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서 2008.12 현재 전국에 26개 지정 TMO가 활동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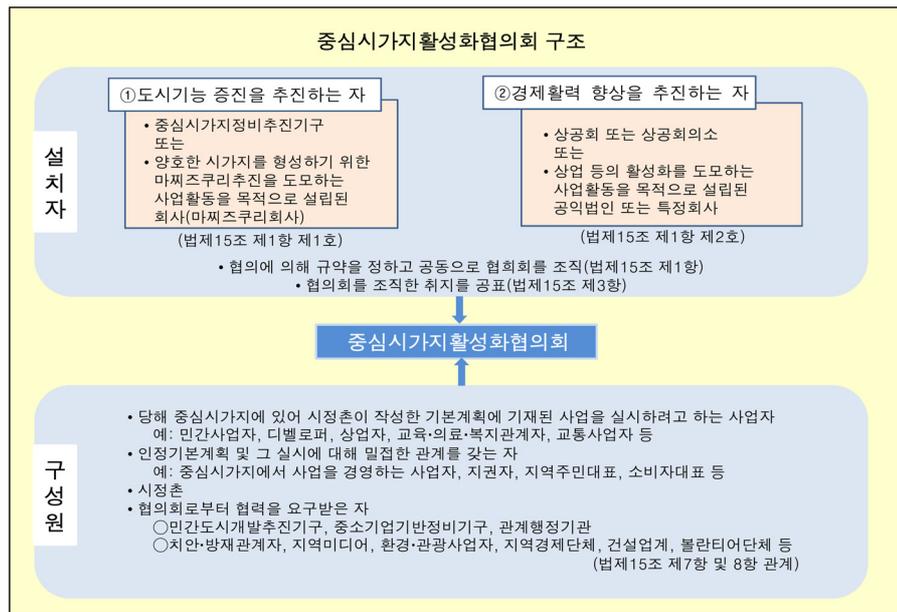
□ 상공회의소 등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은 지역 기업들의 단체를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 필수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는 지역의 상업활동을 비롯한 기업활동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기업인들의 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등의 주도적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본부격인 일본상공회의소에서는 마치즈쿠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⁵⁹⁾를 운영하고 있다.

58) 국토교통성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관련 링크집(<http://www.mlit.go.jp/crd/index/links/index.html#town05>)에 게재된 목록 기준임.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는 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종합 조정, 사업추진관련 협의 등 시정촌이 책정하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치즈쿠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조직이다.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주도적 주체인 마치즈쿠리회사,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TMO), 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하여 결성하며 지방정부, 기본계획상의 세부사업별 사업주체 및 관련주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결성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를 지원하고 이들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지원센터(<http://machi.smrj.go.jp/>)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3〉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의 설치 주체 및 구성원

□ 전국 중심시가지활성화 마치즈쿠리 연락회의⁶⁰⁾

마치즈쿠리회사와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들의 정보교류, 민간주체에 의한 중심시가지 재생 촉진을 목적으로 2007년 6월에 설립된 단체이다.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을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을 계획인 지자체의 마치즈쿠리회사와

59) <http://www.jcci.or.jp/machi/index.html>

60) <http://www.machikaigi.jp/>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들을 회원으로 하며 현재 66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보교류를 위해 연 1회 총회, 연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자적인 사무국은 아직 없으며 (독)도시재생기구와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사)전국시가지재개발협회, (재)구획정리촉진기구 등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 관련이 깊은 4개 기관이 2009년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마치즈쿠리 센터와 지자체 설립 지방공사

앞의 전국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주요한 주체 역할을 맡고있는 마치즈쿠리센터와 지자체 설립 지방공사는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전국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사한 사업들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재)도시미래추진기구(都市みらい推進機構)⁶¹⁾

전국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마치즈쿠리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함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 마치즈쿠리교부금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5) 지역재생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① 관련제도

□ 지역재생법에 의한 지역재생정책

2003년 10월 내각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재생 지원정책을 추진하던 중 2005년 지역재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지역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하며 지방재생정책을 강화하였다. 도시재생본부 등 다른 본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재생본부 역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대신들을 본부원으로 하는 범부처적 기구이다.⁶²⁾

지역재생정책은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에서 고용기회 창출 등 산업적 활력

61) <http://www.toshimirai.jp/index.html>

62) 지역재생본부에 대해서는 <http://www.wagamachigenki.jp/saisei/index.htm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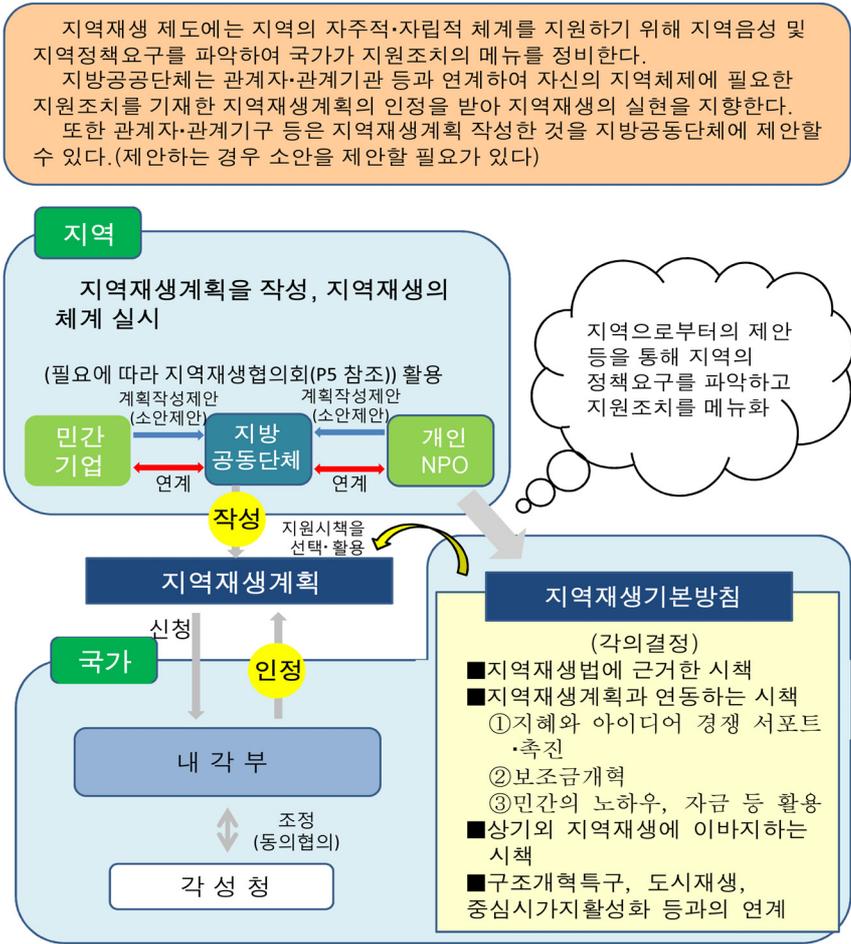
을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산업·문화·교육·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재생사업을 지역 스스로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전국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 비해 물리적 환경의 개발·정비사업의 비중이 약한 경우가 많다.

□ 지역재생계획

각 지자체는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내각부에 계획에 대한 인정을 신청한다. 내각에 설치된 지역재생본부는 ‘지역재생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재생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 예시적인 재생사업주체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재생계획 수립 시 지역재생본부가 설정한 지역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생사업들과 이 사업들의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를 희망하는 지원조치를 담은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 이외에 지역의 민간기업이나 주민, NPO법인 등이 지역재생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으나 재생계획 수립 주체는 지자체이다. 인정 신청을 받은 내각부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은 지역재생계획의 사업계획 및 지원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⁶³⁾ 지역재생법(2005) 제정 이전에 2004-2005년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총 287건의 지역재생계획이 인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재생법 제정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회에 걸쳐 총 1,076건의 지역재생계획에 대한 인정·지원이 이루어졌다. 동일한 지자체가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내용을 갖는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고 있다.

63) 지역재생제도에 대해서는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aisei/panfu/h20/index.htm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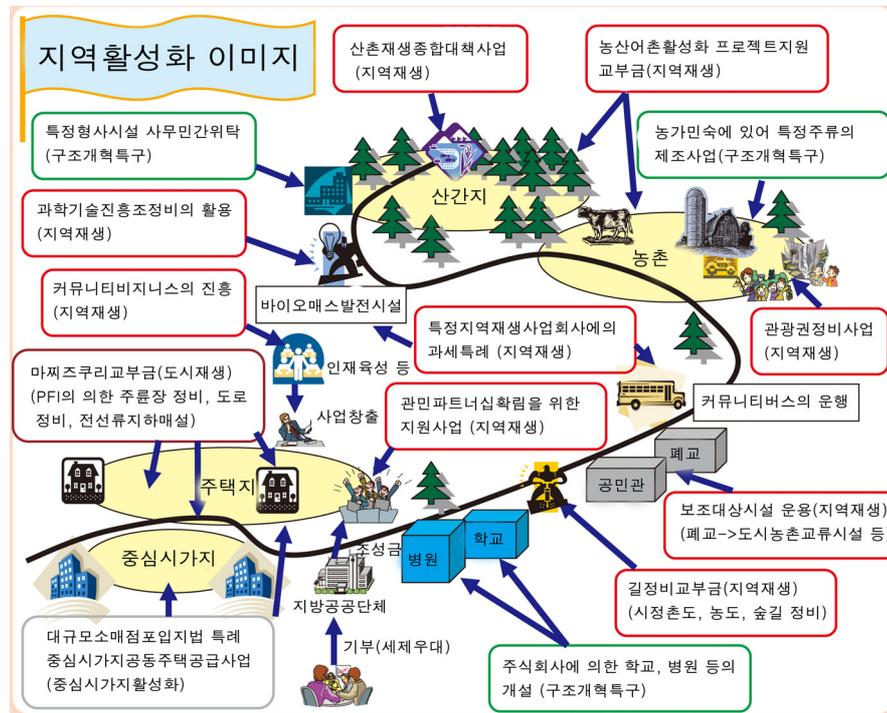


〈그림 14〉 지역재생계획의 작성 및 인정 절차

□ 지역재생계획에 대한 지원

내각부는 지역재생사업에 지원 가능한 시책들의 목록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재생계획 수립시 이들 지원 가능 시책 목록 중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들을 재생계획에 명시하여 그 재생계획이 인정을 받은 경우 이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각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책들은 중앙 각 부처들이 관장하는 각종 지원시책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지역재생 기반강화교부금(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지역재생지원이자보조금(내각부),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농림수산성),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저리융자(재무성) 등 총 53종에 이르고 있다.⁶⁴⁾

〈그림 15〉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그림 16〉 지역재생관련 각종 지원시책들

64)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aisei/panfu/h20/> =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 '지역 재생을 위하여', 25-29쪽.

□ 지역재생전도사의 활용

지역재생전도사는 지역재생의 취지와 제도를 지자체와 지역 민간사업자들에 게 전파하고 지역재생 제안모집과 지역재생계획 책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신속 하게 하여 지역과 국가 사이의 정보 교환의 거점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사람이다. 지역재생전도사는 각 광역지자체(都道府県) 단위로 3명 정도 선임되어 전국에 약 1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재생전도사들 간의 교류 및 내각부 지역 재생사업추진실과의 연락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가 운영되고 있다.

□ 지역고용전략팀의 설치

광역 지자체(都道府県) 노동국에 지역고용전략팀을 설치하여 재생사업을 기획하거나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관계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조언, 지역 관계자간의 조정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후생노동성 담당)

□ 지역활성화 종합정보사이트의 운영

관련 중앙부처들의 협력 아래 지역활성화 관련 국가시책, 각 지역의 선진적 추진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⁶⁵⁾가 내각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지역재생본부 및 관련 부처

2005년 지역재생법 제정과 함께 2003년에 설치되었던 지역재생본부가 해체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대신을 본부원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되었다. 지역재생본부는 지역재생의 기본적 방침을 설정하여 각 지자체의 지역재생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재생계획에 대한 인정업무를 관할한다. 지역재생본부의 사무국은 재생사업 관련 다른 본부들의 사무국과 통합한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재생사업은 각 부처들의 지원시책들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중 주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을 관할하는 내각부가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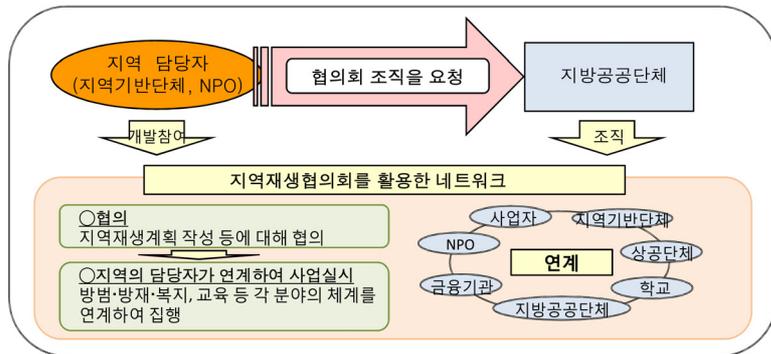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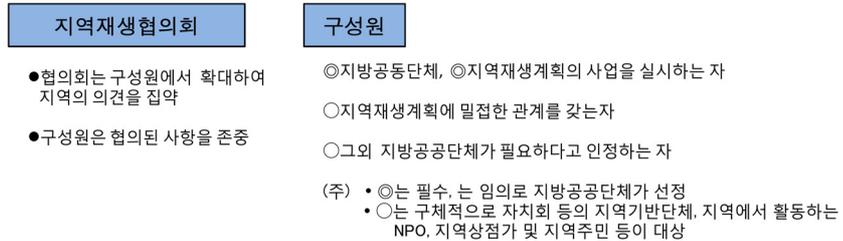
65) <http://www.chiiki-info.go.jp/>

□ 지방정부 지역재생사업 담당부서

각 지방정부(시정촌)는 지역재생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다.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는 주체이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지역재생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재생사업은 중앙의 각 부처들의 지원조치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제이므로 지방정부에서도 사업내용과 필요로 하는 지원조치에 따라 관련 부서가 달라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이이다(飯田)시의 경우 2005년에 인정을 받은 지역재생계획인 ‘풍부한 자연보전과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이이다’ 사업은 건설부 토목과가 담당하였으며, 2006년 사업인 ‘물이 맑고 멋스러운 도시 이이다’ 사업은 수도환경부 하수도과가 담당하였다.

□ 지역재생협의회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협력·연대하는 장으로서의 지역재생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등은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재생협의회를 조직하도록 요청하고 자신을 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지역재생협의회를 조직하고 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지역재생협의회에서 진행된 협의 내용은 지역재생계획 인정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한다.



〈그림 17〉 지역재생협의회 조직과 구성

3) 한국

(1) 개요

□ 도시정비·개발형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병행추진

국내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은 크게 낙후된 지역의 정비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도시만들기,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정비·개발형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를 보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2000년대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단위의 활성화 사업⁶⁶⁾이 있는데, 해외의 지역재생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건축·도시사업은 전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 지원 - 지방정부 주도 사업추진체계로의 변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정비·개발형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지역지원사업은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에 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부처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기획서와 주민참여 방식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사업내용과 진행사항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지역지원사업들은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과 사업 간의 연계 부족 등에 의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6) 대표적인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디지털사랑방구축사업, 주민이 만드는 복지마을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종기구보관창고지원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다.

□ 지방정부-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주체간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 대해 사업선정 기준의 하나로 지역 내 관련주체인 행정, 주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할 것을 지원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조직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거점형 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정비·개발형 사업이나 도시·마을만들기 사업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에 지원하는 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단계부터 이들 조직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실무적 행정기능은 없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주체간 협업을 유도하여 상향식, 내지는 수평적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기반한 주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진체계가 마련되어도 관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도시정비·개발형 :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현지에 정착하도록 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지개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대상 정비구역을 철거하지 않아 마을 공동체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에 의한 주택개량 효과가 미미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반면 공동주택방식은 공공에서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구입하여 철거한 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환경을 단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립된 공동주택을 현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른 지가와 집세 상승 등으로 기존의 주민이 다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을 혼합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현재 12개 지역에 대해 제2단계 국고지원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⁶⁷⁾ 시범사업대상지는 공모방식으로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담당부서에 지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사업 후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을 높이고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개발 거점으로써 정비구역 내 일정규모의 순환용 주택과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를 공공이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공공의 지원 하에 주민자력으로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은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단기적인 사업에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방식에서 사회, 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사회적 재생으로 정비사업이 전환됨을 예고하는 것이다.⁶⁸⁾ 특히 공공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이 결합된 거버넌스체계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참여자들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조직체계는 사업추진조직, 주민협의회, 코디네이터 조직의 3위 일체형 조직으로 구성하여 다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거점개발, 주민자력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 활동가 및 주민대표,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팀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혹은 해당 도에 제출하면 시장과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은 해당 시·군·구, 혹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며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코디네이터 그룹을 구성한다. 이로써 정비계획수립단계와 사업추진단계를 이원화하여 의사결정조직을 운영하고 각 단계에서 결정된 최종 의견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일부가 디자인팀과 코디네이터 그룹에 참여하여 일체적인 합의 형성을 도출하도록 하였다.⁶⁹⁾

67) 2007에서 2009년까지 3년간 12개 시범지역에 대해 국비 240억원을 포함하여 총 480억원(국고:지방비 50:50) 지원 계획중이다.

68) 이창호 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주택도시연구원, 2008 p.11

69) 이창호 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주택도시연구원, 2008 pp.21~27

〈표 5〉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주체와 역할

주요주체		역 할
공공	정부	- 국고지원 및 전문가 지원
	지자체	- 기반시설 확보 및 행정지원
	공공기관	- 정비계획수립 및 거점개발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및 소규모 주택건설업체 육성
민간	주민	- 주민협의회 운영 및 정비주체
	시민단체	-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
	주택건설업체	- 정비컨설팅 - 주택건설 및 관리
전문가		- 정비계획수립 참여 - 법률 및 제도적 지원 - 참여자간 이해관계 조정

① 관련제도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며 관련법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등이 있다.

이중 기존의 현지개량사업은 1989년 제정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출발하였다. 이 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9년 말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한시법이었지만, 1999년 법개정에 의해 2004까지 5년간 시행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4년 까지는 특별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5년 이후부터는 2002년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주민에 의한 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특례조항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 건설자금 융자 및 세제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5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개량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공동주택건설방식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개량사업에 공사가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가 현지개량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중심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주택개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공동주택건설방식에만 적용되던 지원제도가 병행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⁷⁰⁾

② 참여 주체

□ 중앙정부 : 국토해양부의 주택정비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택정비과에서 담당하며 시범사업 전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역할은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시범사업 업무지침 등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대표 MP위촉 등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구성 지원, 그리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확대 여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다

□ 광역정부 : 시장·도지사

광역차원에서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시·도차원의 정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구역의 사업비 우선 지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의 코디네이터 그룹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며 주민협의회 및 협정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초지자체 : 주거환경정비 담당부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는 각 기초지자체의 주거환경정비 담당부서로서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비용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팀 구성과 운영,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및 코디네이터 그룹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필요시 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운영 등이 있다. 이밖에도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지역의 도시정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지원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주민설명회 개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또는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록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지방공공공사

대한주택공사등, 지방 공공공사는 기초지자체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계별 순환 정비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건설 및 관리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거점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민의 자력으로 정비

70) 서수정 외, 「현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 pp.11~12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거점개발단계까지는 디자인팀의 일원 또는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정비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협의 형성을 유도하는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개발 이후는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그룹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주민 : 주민협의회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협의형성 도출을 목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으로 주민대표와 지역활동가, 과건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다. 주민협의회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제시, 시범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 및 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주민 학습회 참여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협의회는 정비구역 내 자치회, 반사회, 부녀회 등 기존 지역의 커뮤니티조직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지역시민단체, 지역활동가, 자원봉사단체 등의 제3섹터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⁷¹⁾

□ 기타 지원조직

기타 지원조직으로는 디자인팀과 코디네이터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를 들 수 있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주체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정비계획수립단계에 디자인팀으로 참여, 정비계획수립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정비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주민조직과 함께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코디네이터 그룹은 디자인팀에 참여했던 구성원 일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블록단위 및 필지단위 정비추진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3) 지역지원사업형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71) 이창호 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주택도시연구원, 2008 p.21~27

① 관련제도

지역지원사업형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역별로 사업추진체계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사회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각 행정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디지털사랑방구축사업’, ‘주민이 만드는 복지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건축·도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지원사업은 각기 관련 법과 제도가 상이하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2008년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은 없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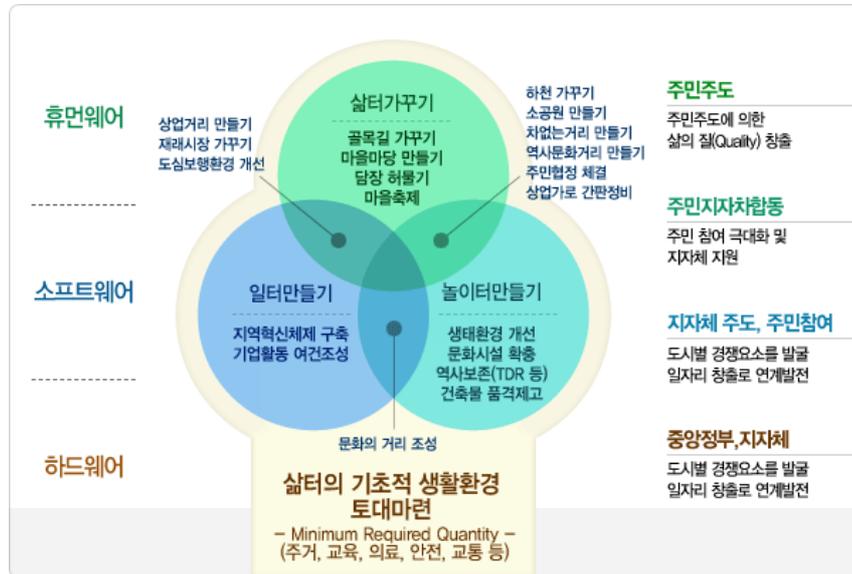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쳤던 기존의 개발방식을 뛰어넘어 복지, 문화, 경제 등이 균형을 이루는 삶의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는 주거, 복지, 교통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가 보장되고 나아가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된 ‘어울려하는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기반을 갖추어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도시의 조성을 지향한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시범마을과 시범도시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자유경쟁 방식으로 2007년에는 시범도시 5개, 시범마을 25

개, 지원도시 6개를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 지원도시 7개를 지원하였다. 2007년 선정된 5개 시범도시의 경우, 평가결과 1위인 안산시에 20억원, 나머지 도시에 각 15억원 씩 총 80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도시의 경우 5억씩 총 30억원, 그리고 시범마을은 3억원 이내로 대상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충남 금산군에 18억원의 지원과 제주시에 15억원의 지원비를 비롯, 총 6개 시범도시에 85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도시의 경우 도시당 3억원씩, 그리고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지원하였다.

‘시범도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도시별 부존자원을 파악, 주민참여를 통해 특화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광역시나 도에서 취합,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동 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검토와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도시’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이 우수한 도시로, 이에 대해서는 계획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시범도시와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기준은 사업관련 특화발전전략,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그림 1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개념도(www.city.go.kr)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대상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주택 등 6대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을 종합적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생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체 역량을 분석하여 부존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실행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⁷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방식에 의해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시범지역의 선정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또는 마을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광역시·도에서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지역은 3년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은 총 30개 마을로 2007년에는 약 200억원, 2008년에는 약 2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필요시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민은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지역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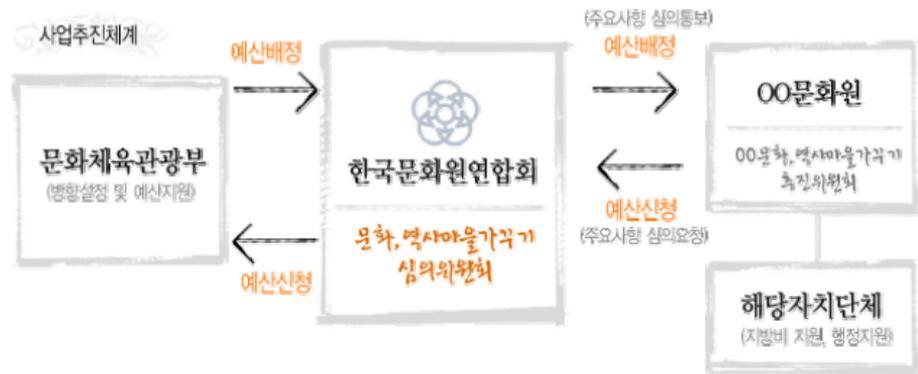
〈그림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www.happykorea.go.kr)

72) 류중석 외, 「균형발전 정책교본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p.23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은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가진 마을을 발굴·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마을조성을 위해 행정조직, 전문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체계에 의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문화·역사 관련 전문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방문화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대상지의 선정은 지방문화원장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문화·역사마을의 지정을 제안하면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문화·역사마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마을은 지원을 중단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은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2003년까지 21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억원씩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 현지방문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3개 마을은 사업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까지 전국 9개 도에 각 1~2개 마을 씩 총 13개 마을을 조성하는 데 총 240억원⁷³⁾이 소요되었으며 더 이상 신규 마을지정 계획은 없는 상태다.



〈그림 20〉 문화·역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maeul.kccf.co.kr)

73) 240억원의 사업비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사업비는 155억원으로, 85억원은 지방비로 투입되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은 보조금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조건부 지원방식으로, 1개마을 20억원에 대해 50%인 10억은 지방비로 충당하였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사업’ 과 같이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 도시지역, 마을, 문화·역사자원지역 등 약간의 차별성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시 또는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개발방식이 아닌 행정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협업을 중점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공통적으로 전제한다.

※ 국토계획법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9]

② 참여 주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은 각 사업별로 담당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으며, 공통적으로 행정-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참여주체는 각 지역지원사업별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에서, 그리고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에서 각각 담당한다.

□ 지방정부

지방정부 역시 각 지역지원사업별로 담당부서가 다르다. 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정부는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담당 부서는 도청내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이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담당 부서는 도청 내 행정1부지사 산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역발전담당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추진했던 충청남도 금산시와 제주도 제주시의 경우를 일례로 살펴보면 사업별 담당부서가 다르다. 금산시의 경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담당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정책사업단 균형발전 담당에서 추진하였다. 제주시의 경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정비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도시경관과 살기좋은 지역팀에서 추진하였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역지원사업별 담당부서로 사업의 진행과 추진체계 운영, 예산 집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원에서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고 해당 지자체로 부터는 50%의 예산만을 지원받았다. 담당 행정부서가 아닌 제3의 단체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역의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추진체계가 같다고 볼 수 있다.

□ 도시·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은 행정-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사업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주체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체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진협의회 운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이나 행정과 주민간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추진협의체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협의체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기타 지원조직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지원사업의 지원조직은 크게 건축·도시직능형 지원조직과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협의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도시직능형 지원조직으로는 주로 관련 대학교 연구실이나 건축, 도시, 조경 관련 사무소가 있으며 주체간 의견을 조율하는 MA로서, 혹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참여한다. 주민협의를 이끌어내는 지원조직으로는 (사)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희망제작소, (주)이장 등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주민자율조직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별로 주민자율조직의 형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마을 주민들간에 여러 단체가 형성되어 활동이 활발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마을의 경우는 부녀회, 영농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지역마을만들기형 :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의 관련제도 및 참여주체

앞서 기술했던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사업이 기존의 하향식 지역환경개선사업에서 점차로 수평적 환경개선사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출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진안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전문기구를 설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만

들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리더의 발국과 양성 및 도시민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1년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유정규박사(경제학박사)을 전문직으로 채용하면서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인 지역별 주민교육을 시행해 마을만들기사업의 발판을 구축하였고 2003년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으뜸마을가꾸기’⁷⁴⁾로 바꾸고 으뜸마을가꾸기에관한조례 제정,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04년 구자인 농학박사가 계약직으로 임용되고 2005년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담당 인원을 보강하는 등 2006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마을간사제도’ 시행, 마을간사협의회 구성하면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7년에는 마을만들기 전담팀 및 행정TF팀(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 중심 + 자치행정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농업경제과)을 구성하였다.⁷⁵⁾

	도입 ('01~'04) - 기초형성기 -	1단계 ('05~'06) - 기반구축기 -	2단계 ('07~'08) - 발전기 -
개념	점적 마을개발	선적 마을개발 + 마을간사 도입	면적 마을개발 + 마을간사 정착 + 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으뜸마을가꾸기	으뜸마을가꾸기	으뜸마을가꾸기를 포함한 정부지원 마을만들기사업들
추진 부서	기획홍보실 군정기획단	기획홍보실 정책개발담당 으뜸마을팀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팀 <마을개발 TF팀>
주민 조직	으뜸마을추진협의회 (형식적)	추진위원장협의회 마을간사협의회	(가칭)마을개발대표협의회 도농교류/귀농지원센터 (주민주도)
주요 활동	[주민교육] - 지구별 순회교육 - 추진 조직 정비 - 으뜸마을 조례 제정 - 홈페이지 제작	[으뜸마을+마을간사] - 으뜸마을 독자예산 : 지구별 특화사업 기반 마련 -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안내판 제작 - 마을간사제도 도입 - 지구별 순회 주민교육	[마을개발+귀농지원] - 마을개발 체계화 : 규약, 신문, 회계, 기록 등 -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 면단위 네트워크 모델 확산 - 귀농인구늘리기(인재확보)
관련 조직	마을추진위원회		마을간사협의회, 마을조사단,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농촌관광협회, 마이 숲, 사랑회

〈그림 21〉 진안군 마을만들기 발전단계

74)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이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별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75)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진안 - 진안 마을만들기 2단계발전기본계획 요약보고서’, 2008.8, 전라북도 진안군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빌리지사업, 농산촌체험마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등의 마을단위사업과 마을간사제도를,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유치, 마을조사단, 마을숲해설사 양성, 마이 평생학습지도사 양성 등 지역인재육성사업, 그리고 마을 문화콘텐츠 발굴 활동, 동향변 귀농귀촌선진지 등 기초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행정체계 내에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만들고 기존의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중앙정부의 제반 지역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된다.

④ 관련제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제도로는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와 ‘마을간사제도’가 있다.

□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

진안군은 진안군수의 군정으로 도입한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2003년 ‘ 으뜸마을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같은 해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으뜸마을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으뜸마을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틀을 구축하였다.

□ 마을간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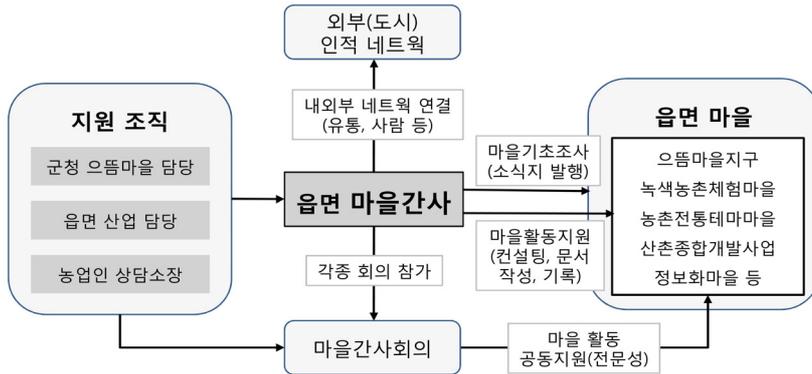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는 청년인력과 전문인재, 그리고 마을리더가 부족하다는 지역내적인 문제점과 생태 귀농인이 급증하는 반면 귀농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는 지역외적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과 마을주민 사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간사를 지정해 일정기간 월급을 부여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귀농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행정과 마을주민, 특히 마을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마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마을간사제도의 인건비는 국비인 신활력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명의 간사가 있다. 마을간사는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 으뜸마을가꾸기 지구, 정부사업 실시지구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과 마을간사가 협의할 수 있는 ‘마을간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적인 구성과 자체운영을 원칙으로 행정과 항시 ‘긴장된’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번	대상지구명			위원장	간사			정부지원사업	비고
	읍면	법정리	마을명		간사	사무장	매니저		
계				24	10	4	3		
1	진안	단양리	외사양	박덕만	박순복			으뜸마을가꾸기(1기)	
2		가막리	가막	전홍철	정대준			녹색농촌체험마을	
3		죽산리	어은동	송용환	임종남			으뜸마을가꾸기 편입 (2기)	
4	충남	송풍리	방화	박복인			이재선	산촌생태마을	
5		송풍리	감동	김기원				농촌전통테마마을	
6		와룡리	와룡	강주현		최광훈		으뜸마을가꾸기/녹색농촌체험마을	
7		송풍리	새마을	박영희				으뜸마을가꾸기(2기)	
8	안전	신괴리	지사	황관선			박은영	산촌생태마을	
9		노성리	노채	정해웅	조원희			으뜸마을가꾸기/청정테마파크(전북도)	
10	동향	능금리	능길	박전창	김성일			녹색농촌체험마을	
11	상전	울포리	금지	이춘식		최지선		녹색전통테마마을	
12		용평리	신연	안기조	이심권			으뜸마을가꾸기/맛체험마을(전북도)	
13	백운	동장리	동신	정경교		김양숙		으뜸마을가꾸기/녹색농촌체험마을	
14		백암리	원촌	전진기				문화공간화사업	
15	성수	도룡리	증평외1개 마을	전인호			최원호	산촌생태마을	
16		중길리	오암	최영복		나동성		으뜸마을가꾸기/녹색농촌체험마을	
17	부귀	황금리	방곡	최정웅	서윤준			으뜸마을가꾸기/전통테마마을	
18		봉암리	미곡	배정환	양승선			으뜸마을가꾸기(2기)	
19		세동리	신덕	손민조				으뜸마을가꾸기(2기)	
20	정전	봉학리	학동	최명근	박진희			으뜸마을가꾸기/산촌생태마을	
21		갈용리	무거	권대웅	조호순			으뜸마을가꾸기(2기)	
22	주전	무룡리	어자외2개 마을	박종만				으뜸마을가꾸기/녹색농촌체험마을	
23		대불리	중리	구홍서				산촌생태마을	
24		운봉리	양명	김종천				으뜸마을가꾸기(2기)	

〈그림 22〉 마을간사 배치현황 및 관련 담당사업



〈그림 23〉 마을간사 역할모형

② 참여 주체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요 추진주체는 진안군청 내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으로 전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

□ 중앙정부

진안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중앙행정부처는 각 지역별 사업에 따라 다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농림부, 일상장소문화생활공간화개선사업은 문화관광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산촌생태마을사업은 산림청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지방정부의 사업통합 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합하여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진안군청 내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으로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일상장소문화생활공간화개선사업, 맞춤형마을사업,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지원 사업 중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정보화마을사업의 경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서, 산촌생태마을사업은 산림자원과 임간소득담당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등에서 추진한다.

□ 기타 지원조직 / 주민자율조직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주민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지원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직들은 자생적으로 생겼다가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안군에서 교육하고 육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마을조사단,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농촌관광협회, 마이숲사랑, 마을간사협의회, 마을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장 협의회 등이 있다.

◦ 마을조사단

해당 마을의 문화, 자연자원조사, 홍보, 정리, 자료집 발간 등을 하는 단체로 2006년 (사)생명의 숲에서 처음 기획, 유한김벌리와 진안군의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진안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안군 백운면 거주민으로 구성된다.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로 3명의 전담직원이 있다. 귀농마을 간사제도, 귀농학교 개설, 귀농자 1대1 멘토링, 귀농인의 이웃주민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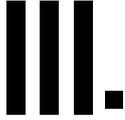
◦ 농촌관광협회

농촌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촌관광대학 수료자들로 구성되며 농촌체험 네트워크화를 목표로 설치되었다.

◦ 마이숲사랑

2005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모임으로 현재 111명의 일반인 회원이 있다.

◦ 마을간사협의회, 마을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등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의 주민협의회다.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1. 사례1: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2. 사례2: 영국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3. 사례3: 일본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4. 사례4: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사업
5. 사례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 사례6: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7. 사례7: 서울시 성미산 마을만들기
8. 사례8: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9. 사례9: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10. 사례10: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11. 사례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III.

지역기반 건축 · 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1. 사례1 :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2. 사례2 : 영국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3. 사례3 : 일본 츠루오카시 마을만들기
4. 사례4 : 일본 동격도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사업
5. 사례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 사례6 : 안산시 광덕로 ·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7. 사례7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8. 사례8 :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9. 사례9: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10. 사례10: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 · 역사 마을가꾸기
11. 사례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a u r i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1 사례1 :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1) 사업개요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은 잉글랜드 NorthEast 지역(Region) 지역개발청(RDA)인 One Northeast가 책정한 지역경제전략(RES)에 따라 2002년 Single Programme으로 승인된 지역재생 프로그램이다. One Northeast는 North East 지역을 4개 권역(sub-region)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들 별로 Single Programme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승인·지원하고 있는데,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은 이 중 Tees Valley 권역이 수립하여 승인받은 Single Programme이다. Tees Valley 권역은 5개 지자체(Darlington, Hartlepool, Middlesbrough, Redcar & Cleveland, Stockt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North East의 sub-Region들



〈그림 25〉 Tees Valley 권역의 5개 지자체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은 Single Programme을 기획하며 출범한 지역 협력조직(Sub-Regional Partnership)인 Tees Valley Partnership(2000년 조직)이 총괄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Tees Valley Partnership은 2002년 One NorthEast로부터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을 승인 받은 후 최초 1년간(2002/2003)은 여러 참여주체들이 기본전략을 짜고 동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29개 세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들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토대로 2년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계획(2003-2006)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03/2004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 한 후 3년째에 다시 2004/2005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Single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Tees Valley Partnership이 작성한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2003-2006 사업추진계획(delivery plan)⁷⁶⁾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개의 목표에 따라 58개의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목표별 58개 세부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별 수행주체는 <표 7>⁷⁷⁾과 같다.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복수의 수행주체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들 중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은 이 지역에 설립된 도시재생회사(URC)인 Tees Valley Regeneration가 수행하는 대형 지역개발사업들과 연계·협력하며 수행되고 있다. Tees Valley Regeneration는 Tees Valley Partnership에 참여하여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중 일부 프로젝트에 책임기관, 혹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Tees Valley Regeneration이 별도로 수행하는 대형 개발사업들⁷⁸⁾ 역시 Single Programme과 연계·협력하며 진행하고 있다.

<표 6>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의 세부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별 추진주체

목표 부문	프로젝트	예산(£)	책임기관(밑줄) 및 주요 partners
Creating Wealth by Raising the Productivity of All Businesses	Tees Valley Informatics Partnership	122,383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Lead), Tees Valley Local Authorities, Business Link Tees Valley, One NorthEast
	High Force House/Pilot Broadband	230,000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Stockton-on-Tees, Hartlepool and Redcar and Cleveland Councils, ONE's strategic property partner (awaiting confirmation of partner selection)
	Broadband	2,720,000	North East Regional Aggregation Body, Darlington, Stockton, Middlesbrough, Hartlepool, Redcar & Cleveland Local Authorities

76) Tees Valley Partnership,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Delivery Plan 2003-2006
 77) 표는 http://www.teesvalleypartnership.co.uk/delivery_plan/menu.html 에 의거 연구진이 재편집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번역 없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목표 부문	프로젝트	예산 (£)	책임기관(및줄) 및 주요 partners
	Tourism/Culture Pot	343,300	미정
	Hartlepool Tourism	5,842,6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ONE North East, HMS Trincomalee Trust, Cleveland College of Art and Design,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North Hartlepool Partnership, English Partnerships, University of Teesside, Tees and Hartlepool Port Authority, Mandale Properties, Stagecoach, HM Coastguard, RNLI, Hartlepool Voluntary Development Agency, Children's Fund, Teesdance Initiative, The Studio, Bravura, Circle of Life Group, English Heritage, Northumbria Tourist Board
	Coastal Arc	6,195,0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and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One NorthEast, Northumbria Tourist Board, Countryside Agency, English Heritage, HM Coastguard
	Tees Valley Festival of Festivals	140,000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 5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One NorthEast, Northumbria Tourist Board, Countryside Agency, English Heritage
	Tees Valley Branding	235,927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 One NorthEast, Northumbria Tourist Board
	Rail and Associated Heritage	130,0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Stockton on Tees Borough Council, Sedgefield District Council, Durham County Council, Northumbria Tourist Board, Rail Operators, Hotel Sector, English Heritage
	Renew	1,245,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NAREC, EIF, TNEI, TCI, One NorthEast
	Digital City	9,286,300	University of Teesside, DigiCoE, One NorthEast
	Food Technology Centre	190,000	University of Teesside , EPICC, One NorthEast
	Wilton Science Park	1,700,000	The Teesside Chemical Initiative, Process Industry Centre of Excellence(Wilton), Science and Industry Council, NorthStar, Redcar & Cleveland Borough Council, One NorthEast, ETOL
	Inward Investment	290,000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Hartlepool, Middlesbrough, Stockton on Tees, Redcar & Cleveland and Darlington Borough Councils, TV Urban Regeneration Company, One NorthEast,
	Strategic Investment	7,100,000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One NorthEast, Tees Valley Urban Regeneration Company, English Partnerships
Establishing a new Entrepreneurial Culture	Developing an Entrepreneurial Culture	8,826,992	Business Link Tees Valley in partnership with local authorities, the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Enterprise Groups, and One NorthEast,
	Enterprise Academy	853,500	Enterprise Academy, Middlesbrough Football Club, Tees Valley LEA's
	Stockton e Business Incubators	8,345,500	Stockton-on-Tees Borough Council, Supreme Property Development through their parent Company Supreme Knitwear, Tees Valley Informatics Partnership, One NorthEast
	High Tech	1,855,0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Hartlepool New Deal

목표 부문	프로젝트	예산(£)	책임기관(및줄) 및 주요 partners
	Incubators Units	00	for Communities, Tees Valley Informatics partnership, One NorthEast
Creating a Health Labour Market Supported by a Skilled Workforce	Hartlepool ICT	3,040,5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and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HCFE) on behalf of the Hartlepool Partnership, Hartlepool Economic Forum, Hartlepool ICT Strategy Group,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Link Tees Valley, Tees Valley LSC, Employment Service, Hartlepool Business Development Centre, Tees Valley JSU, University of Teesside,
	Diversity Strategy	500,000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Tees Valley Unitary Authorities, European Social Fund, One NorthEast,
	Bursaries for Young People	2,690,350	Learning & Skills Council, (Connexions) and Tees Valley LEAs
	Employer Support Programme	2,200,000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Business Link Tees Valley, Tees Valley Learning Providers
	Community ICT's	920,000	Stockton Borough Council is the lead organisation on the project. Other partners include Tees Valley Informatics Partnership, LSC, Universities, local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Skills for Success	415,0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Darlington Partnership, Job Centre Plus, Darlington College of Technology, Learning & Skills Council, Business Link Tees Valley, Queen Elizabeth Sixth form College, Council for Voluntary Services,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Sure Start, Connexions Tees Valley, Darlington Primary Care Trust, Morrisons Enterprise Trust
	Job Connect Programme	459,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Jobcentre Plus
	Building Futures	1,454,802	Tees Valley Jobs & Training Consortium (Hartlepool BC, Middlesbrough BC, Redcar & Cleveland BC, Stockton BC, Tees Valley Learning Skills Council, Tees Valley FE Plus, Construction Industries Training Board, Jobcentre Plus).
Recognising our Universities and Colleges at the Heart of the Region's Economy	Knowledge into Business	4,194,691	University of Durham & Teesside, Tees Valley LAs, One NorthEast, Sport England, Tees Valley URC, English Partnerships
	Foundation Degrees	1,964,000	Learning and Skills Tees Valley, FEPlus, Universities of Durham and Teesside, Business Link Tees Valley
	Hartlepool College Higher Educ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910,000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on behalf of the Hartlepool Partnership, University of Teesside, Cleveland College of Art and Design, Hartlepool Sixth Form Colleg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he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The Hartlepool Economic Forum, Hartlepool Borough Council, Business Link Tees Valley, Hartlepool Regeneration Initiatives, The Hartlepool Enterprise Agency, Employment Service, Local Schools, West Central Hartlepool NDC
	Hartlepool Engineering - Intelligent Systems	910,800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on behalf of Hartlepool Partnership, University of Teesside, Cleveland College of Art and Design, Hartlepool Sixth Form Colleg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he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The Hartlepool Economic Forum, Hartlepool Borough

목표 부문	프로젝트	예산(£)	책임기관(및줄) 및 주요 partners
			Council, Business Link Tees Valley, Hartlepool Regeneration Initiatives, The Hartlepool Enterprise Agency, Employment Service
	Tees Valley Centre for Offshore High Value	840,000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Hartlepool Borough Council, Heerema, NETA Group, THPA, English Partnerships, Tees Valley URC, TVDC.
	The North East Polymer Centre	165,000	Stockton Riverside College, The Polymer NTO, Learning & Skills Council Tees Valley, Private sector: Toucan Engineering, Business Link Tees Valley
	Raising Aspirations	326,495	University of Durham and Teesside, Tees Valley LEA' s
Meeting 21st Century Transport, Communication and Property Needs	Teesside International Airport - Strategic Development	2002/2003에 예산 배정	One NorthEast, Teesside International Airport, Tees Valley Partnership, Durham County Council, English Partnerships, Peel Developments, Tees Valley URC
	Tees Valley Transport 2010	460,050	Tees Valley Urban Regeneration Company,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One NorthEast, Stockton Borough Council, Hartlepool Borough Council,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Darlington Borough Council,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GO-NE.
	Darlington Gateway Phase 1	12,905,0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Darlington Partnership, One North East, English Heritage, Property Developers, Town Centre Retailers, Private Developers, Darlington College of Technology.
	Darlington Gateway Phase 2	6,198,9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Private Developers, Darlington Partnership, One NorthEast, Town Centre Retailers, Property Developers
	Queens Meadow Physical Development	5,485,0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Priority Sites, ONE NorthEast, TVDC, Hartlepool Economic Forum
	Queens Meadow Marketing Initiative	112,000	Hartlepool Borough Council, ONE NorthEast, Priority Sites, Hartlepool Economic Forum, TVDC
	Coatham Enclosure	31,500,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Private sector partner, Negotiation of the scheme with the Preferred Developer may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partners
	South Tees Workshops	1,200,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Other parties to be identified
Realising the Renaissance of our Rural and Urban Communities	Lifestyle Health and Learning	34,106,000	Stockton Borough Council, The Billingham Partnership (TBP), Bede College, Stockton Riverside College (formally Stockton & Billingham College), North Tees Primary Care Trust, MARS, Employment Service, Tristar, One NorthEast, TVDC, FEPlus
	Darlington Communities Phase 1	1,028,0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Darlington Partnership, Community and Voluntary Organisations
	Darlington Communities	250,000	Darlington Borough Council, Darlington Partnership, Darlington Primary Care Trust, 13

목표 부문	프로젝트	예산 (£)	책임기관(맡줄) 및 주요 partners
	Phase 2		Community Partnerships
	East Cleveland Rural Strategy	1,535,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Tees Valley Rural Community Council, Business Link, LSVC, ONE/GONE (DEFRA), Cleveland Police, Lanbaugh Primary Care Trust
	East Cleveland Rural Programme	120,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Tees Valley Rural Community Council, Business Link, LSVC, ONE/GONE (DEFRA), Cleveland Police, Lanbaugh Primary Care Trust, Countryside Agency, English Heritage
	Guisborough Market Town Initiative	880,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One Northeast, GO-NE, Countryside Agency, English Heritage,
	Middlesbrough Art Gallery	11,310,000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Arts Council of England, Christina Foyle Foundation, Northern Rock Foundation, Northern Arts,
	Middlesbrough Town Centre	3,227,000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Chamber of Commerce
	Collaborating to Compete - Revitalising the centre of TV's main towns	1,332,000	Tees Valley Borough Councils (Darlington BC, Hartlepool BC, Middlesbrough BC, Redcar and Cleveland BC, and Stockton on Tees BC), One NorthEast, NECC
	South Tees Strategy	3,558,299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ONE North East, Private Sector Business, CORUS, THPA
	South Tees Strategy Phase 2	2,248,000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ONE North East, CORUS, THPA
	Housing Market Restructuring	910,000	Tees Valley JSU
	Community Grants	250,000	Tees Valley JSU will lead the project and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5 Borough Councils of Darlington, Stockton, Middlesbrough, Hartlepool and Redcar & Cleveland,
	Light and Illumination	1,027,707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National Trust / English Heritage, High Ways Agency, Local Industry, Local churches, Local schools,
	Tees Corridor	11,333,100	Stockton-on-Tees Borough Council, Middlesbrough Council, Tees Valley Wildlife Trust, British Waterways Board, One North East, Groundwork Middlesbrough, Autolink and Sustrans, Hartlepool Borough Council, Redcar & Cleveland Borough Council,
	Tees Corridor - Tees Forest Gateway Site Developments	875,000	Stockton Borough Council is the lead organization on the project. Other partners include Tees Forest, Countryside Agency, English Nature, Tees Archaeology, Grindon Parish Council and Heritage Lottery, Hartlepool Borough Council, Redcar & Cleveland Borough Council
Management & Admin.	Partnership Management & Administration	3,540,400	Tees Valley Partnership, Stockton-on-Tees Borough Council, Darlington Borough Council, Hartlepool Borough Council,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R&C Borough Council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BERR

중앙정부에서 Single Programme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이다. BERR은 중앙부처들⁷⁹⁾의 지역지원 예산을 통합한 통합재생예산(SRB)을 각 지역(Region)의 지역개발청(RDA)들에게 배분하며, 지역개발청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2) 지역개발청(RDA) One NorthEast

One NorthEast는 잉글랜드 9개 지역(Region) 중 하나인 North East 지역을 관장하는 RDA이다. One NorthEast는 Tees Valley 권역에 속하는 5개 지방정부들과 협력하여 Tees Valley 권역의 지역경제전략(RES; 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책정하는 한편, 5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지역기구 및 주민조직들과 연대하여 지역협력조직(SRP; Sub-Region Partnership)을 조직하고 Single Programme을 기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년에 수립된 SRP인 Tees Valley Partnership이 조직되었으며 One NorthEast는 이 조직을 주체로 하여 성안된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을 2002년에 승인하였다.

One NorthEast는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기획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세부 프로젝트들의 구체적 추진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표 7>에서 One NorthEast가 거의 모든 세부 프로젝트의 수행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ne NorthEast의 2006/2007년도 1년간 총 예산은 £272,904,000이며 이 중 통합예산(SRB)이 90.2%를 차지한다. 2007년 현재 직원 수는 총 446명(후원/파견 근무원 17명 포함)이다.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이외에도 North East 지역의 다른 3개 권역(sub-region)의 Single Programme을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통합프로그램들은 고용창출부문, 인력양성부문, 환경

78) 대표적인 것으로 Middlesbrough Middlehaven을 들 수 있다. 이는 Tees Valley Regeneration가 영국 최대의 탄소중립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2억 파운드 규모의 1단계개발이 진행중이다. 이 개발사업에는 RDA인 One NorthEast와 관련 지방정부들, 민간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국가적 도시재생사업인 English partnership도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79) BERR, CLG, DIUS, DEFRA, DCMS UKTI 등 6개 부처. 최근 DECC도 통합재생예산에 참여하였다.

정비부문 등 8개 부문에 걸쳐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는 총 3,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3) 지방정부와 Tees Valley JSU(Joint Strategy Unit)

Tees Valley 권역의 5개 지자체인 Darlington, Hartlepool, Middlesbrough, Redcar & Cleveland, Stockton on Tees 의 지방정부들은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을 비롯한 지역개발 관련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1996년 5개 지방정부 연합사무조직인 Tees Valley JSU(Joint Strategy Unit)를 조직하였다. JSU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전략계획인 Tees Valley Structure Plan의 수립
- b) Tess Valley 권역의 경제개발전략 수립
- c) 교통전략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
- d) 정보 제공 서비스
- e) 유럽연합 프로그램들의 관리

결국 SRP인 Tees Valley Partnership이 수립하는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이나 RDA가 수립하는 권역별 지역경제전략(RES)의 실질적인 수립업무는 JSU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RP나 RDA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수정요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승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Tees Valley JSU는 Tees Valley Partnership과 동일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두 조직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Tees Valley JSU는 50여명이 상근하는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4백만파운드 규모에 달한다.⁸⁰⁾

JSU를 통한 업무 이외에도 5개 지자체 정부는 각각 사업실행 총괄주체인 Tees Valley Partnership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JSU를 통해 자신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다른 지역 주체들과 협의·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일부 세부 프로젝트들은 5개 지방정부 중 하나가 실행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80) <http://www.teesvalley-jsu.gov.uk/staff.htm> 에서 Tees Valley JSU의 상근인력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규모는 연구진이 현지 조사원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4) 대표 사업조직 Tees Valley Partnerships(Tees Valley Unlimited)

□ 조직 개요

Tees Valley Partnership은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실행을 위해 2000년 조직된 거버넌스 조직이다. Tees Valley 권역의 5개 지자체 지방정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타 지역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Single Programme과는 별도로 5개 지방정부별로 마을재생예산(NRF) 지원 아래 수행되고 있는 마을재생사업 수행주체인 5개 지역전략협력조직(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들 역시 모두 참여하고 있다.

Tees Valley Partnership은 Tees Valley JSU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⁸¹⁾ 상근인력이 많은 JSU와는 달리 위원회를 통해 관련주체들 간의 협의와 의사결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직으로서⁸²⁾ 상근인력이 많지 않다. 현재 사무국(central secretariat) 상근인력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수준이다.

또한 Tees Valley Partnership은 법적 기구가 아니므로 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5개 지방정부 중 하나인 Stockton on Tees Borough가 맡고 있는데 이 업무를 위한 인력 2명이 사무국에서 상근하고 있다. 이 외에 지역관리팀(Local Package Management Groups)이라는 이름으로 5개 지방정부별로 책임관리자 1인씩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Tees Valley Partnership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⁸³⁾

□ 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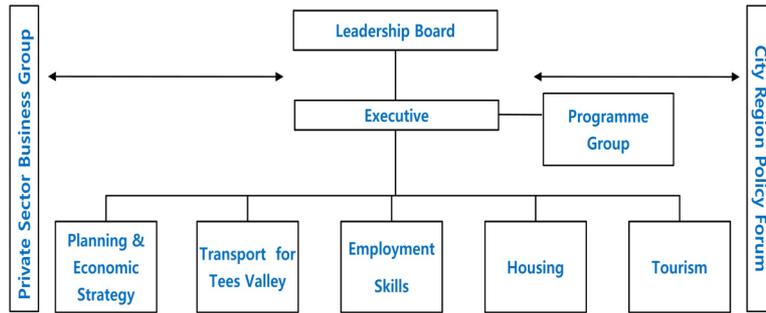
Tees Valley Partnership은 2008년 1월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명칭도 Tees Valley Unlimited로 변경하였다.⁸⁴⁾ 당초 위원회(board)와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을 재편하여 위원회를 최고위원회(leadership board)와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로 구분하였다. 2009년 4월 현재 최고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⁸⁵⁾

81) 사무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Melrose House, Melrose Street, Middlesbrough, TS1 2XF

82)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이 아니라 매년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83) <http://www.teesvalleypartnership.co.uk> 참조

84) 현지 관련자 조사에 의하면 조직 개편의 이유로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들고 있다. Tees Valley Partnership에서는 이전에 24명의 board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많은 인원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11명의 최고위원회(Leadership board)와 5개의 집행위원회(Planning & Economic Strategy, Transport for Tees Valley, Employment & Skills, Housing, Tourism)로 되어 있는데, 11명의 최고위원회는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전문분야별 5개 집행위원회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26〉 Tees Valley Unlimited 위원회 조직도

◦ 최고위원회(Leadership board)

최고위원회는 5개 지방정부 대표 5인과 주요 민간·제3섹터 기관 대표 5인 및 지역(region) 의회 대표 1인(선택 사항)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은 정부위원이 맡는다. 현재 최고위원회의 위원들과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 Hugh Lang (Chair) Managing Director, Durham Tees Valley Airport
- Alison Thain Chief Executive of Tees Valley Housing
- Alastair MacColl Chief Executive, Business & Enterprise North East
- Councillor George Dunning Leader, Redcar & Cleveland BC
- Mayor Stuart Drummond Hartlepool BC
- Paul Booth SABIC
- Mayor Ray Mallon Middlesbrough BC
- Councillor John Williams Leader, Darlington BC
- Professor Graham Henderso Vice Chancellor, University of Teesside
- Councillor Ken Lupton Leader, Stockton on Tees BC
- Martyn Pellew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PD Ports

◦ 집행위원회(Executive)

집행위원회는 5개 지자체 대표 5인과 주요 지역기관 대표들로 구성된다. 현재 집행위원회의 위원들과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 Ada Burns (Chair) Chief Executive, Darlington BC
- Chris Roberts Regional Director, Learning and Skills Council
- Pat Richie Director of Strategy and Development, One NorthEast

85) <http://www.teesvalleyunlimited.gov.uk/>

- Sarah Green Regional Director, CBI
- Jan Richmond Chief Executive, Middlesbrough BC
- Paul Walker Chief Executive, Hartlepool BC
- James Ramsbotham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 Amanda Skelton Chief Executive, Redcar & Cleveland BC
- Jonathan Blackie Regional Director, Government Office North East
- Malcolm Page Director of Strategy and Development, One NorthEast
- Paul Chapman District Manager, Jobcentre Plus
- Neil Schneider Chief Executive, Stockton BC

- 민간부문 기업그룹(The Private Sector Business Leadership Group)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입장을 대변한다. 민간부문의 주요한 참여기관들의 소속원 10-15명으로 구성된다. 10명이 상임위원이며 사안별로 5명의 비상임위원들을 초청한다.

- 도시지역정책포럼(City Region Policy Forum)

Durham 카운티와 North Yorkshire 카운티 지방정부들로 구성된다. Tees Valley 지역의 경제상황 개선이 자신들의 지역에 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해 협력할 사안들을 모색한다. Tees Valley의 5개 지방정부 대표, 2개 카운티 의회와 5개 Cistrict 의회 대표들로 구성된다.

- 계획·경제전략 위원회(Planning and Economic Strategy)

사업계획 및 경제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5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CBI, 상공회의소, NEPIC, Renew Tees Valley, Centre for Process Innovation, Tees Valley Engineering Partnership, ONE, LSC, Business Link North East, NEA,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1 Officer), Durham County Council(1 Officer), Environment Agency, Tees Valley JSU, Tees Valley Regeneration 에서도 참여한다.

- 교통 위원회(Transport for Tees Valley)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5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GONE, ONE, NEA, Highways Agency, Network Rail, Arriva, Stagecoach, Chamber of Commerce, CBI, PD Ports, Peel Holdings,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1 Officer), Durham County Council (1 Officer), Tees Valley JSU 에서도 참여한다.

- 고용·훈련 위원회(Employment and Skills Board)

LSC, Jobcentre Plus, 5개 지방정부 공무원(Children's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Regeneration Departments), Colleges of Further Education (1), HEFCE, University of Durham, University of Teesside, Business Link North East, CBI, Chamber of Commerce,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TUC, training providers (1), voluntary sector (1), Tees Valley JSU 등으로 구성된다.

◦ 하우징 위원회(Housing Board)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동일한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 관광 위원회(Tourism Board)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동일한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5) 세부사업 실행 참여주체들

<표 7>에서 보듯이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은 6개 부문에 58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58개 세부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 책임기관 및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세부 프로젝트 수행책임기관은 22개, 협력기관은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세부 프로젝트 수행책임기관으로 지정된 22개 주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세부프로젝트 책임수행기관의 유형

유 형	참여주체 기관명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rlington Borough Council . Hartlepool Borough Council . Stockton-on-Tees Borough Council . Middlesbrough Borough Council . Redcar and Cleveland Borough Council .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5개 지방정부 합동조직)
지역(Region) 정부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th East Regional Aggregation Body . One NorthEast .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지역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es Valley Urban Regeneration Company .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5개 지방정부가 설립)
지자체별 partnership (L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rlington Partnership . Hartlepool Partnership
지역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Teesside . Stockton Riverside College
제3섹터/자원봉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HCFE) . Tees Valley Jobs & Training Consortium . Enterprise Academy .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지역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Link Tees Valley . The Teesside Chemical Initiative

(6)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에 직접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업기획 및 추진에 관해 건축·도시 관련 전문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CABE와 건축센터를 들 수 있다.

□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정부조직 공공기구(non departmental public body)로서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공 건축·도시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기획단계(설계팀 구성 이전 단계)에서 설계검토(design review)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Tees Valley를 대상으로는 다음의 지원활동을 하였다.

- One NorthEast(RDA)의 Tees Valley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 수립 지원⁸⁶⁾
- One NorthEast, Tees Valley Regeneration(URC)과 공동으로 2년간 pilot programme 수행(지역계획쟁점 발굴, housing 재생계획 수립, pilot area 마스터플랜 수립, pilot area design code 책정)⁸⁷⁾

□ Northern Architecture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2개 건축센터 중 하나로서 뉴캐슬(Newcastle)에 위치하며 North East 지역을 대상으로 디자인활동 및 디자인 관련 자문·세미나·전시·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Tees Valley의 경우 2005년 6월 건축주간(Architecture Week)에 Teesside 대학교에서 Middlesbrough Arts Development Team 및 Teesside University와 합동으로 주민들과 전문가들 85명이 참여한 세미나 “Cultural Distinctiveness in the Tees Valley?” 를 개최하였다.⁸⁸⁾

86) <http://www.cabe.org.uk/files/tees-valley-green-infrastructure-strategy.pdf> 참조

87) <http://www.cabe.org.uk/regions/north-east> 참조

88) <http://www.northernarchitecture.com/programme/project.php?id=90§ion=Participation> 참조

사례2 : 영국 Middlesbrough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2

1) 사업개요

□ Middlesbrough

Middlesbrough는 앞의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이 진행되고 있는 Tees Valley 권역에 속하는 5개 지자체 중 하나이다. 영국 중앙정부는 Single Programme과는 별도로 빈곤지수가 높은 구역(district)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마을재생기금(NRF) 지원에 의한 마을재생사업(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Middlesbrough가 그 중 하나이다. 즉 Middlesbrough는 광역 차원에서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Middlesbrough는 영국 잉글랜드 North East 지역 남단 Tees 강 우측 하안에 위치한 행정구(특권도시; unitary authority)이다. 이 지역은 19세기 중반 석탄교역항으로 개발되어 철광 개발로 공업이 발전한 지역으로서 Middlesbrough가 이 일대 산업지역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이다. 면적 53.87km²에 인구는 134,855명(2001)이다.

□ Middlesbrough의 마을재생사업(Neighborhood Renewal Programme) 개요

Middlesbrough 내 13개 지구(district)들이 빈곤지수(Indices of Deprivation)를 지표로 한 마을재생지구(neighborhood renewal area)의 요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로부터 마을재생기금(NRF)을 지원받아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2002년 262.5만 파운드를 시작으로 2006/2007년에 836만파운드, 2007/2008년에 839.8만 파운드의 NRF를 지원받았다.

Middlesbrough 지역전략협조조직(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인 Middlesbrough Partnership이 Middlesbrough 정부와 협력하여 수립한 커뮤니티 재생전략(Community Strategy)에 따라 2007년 한 해에만 118 차례에 걸친 Community Council 회의에 3,150명(회의당 평균 26.7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Middlesbrough의 빈곤지구들에서 상당한 사업성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곤과 실업이 남아있다는 평

가 아래 2008-2011년 기간에 2,475만 파운드의 NRF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⁹⁾

한편 Middlesbrough는 2001년 NRF 지원 사업 이전인 1998년부터 중앙정부가 시행한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대상 39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10년 기간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 (WMNT)가 별도로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⁹⁰⁾

□ Middlesbrough의 마을재생사업 프로그램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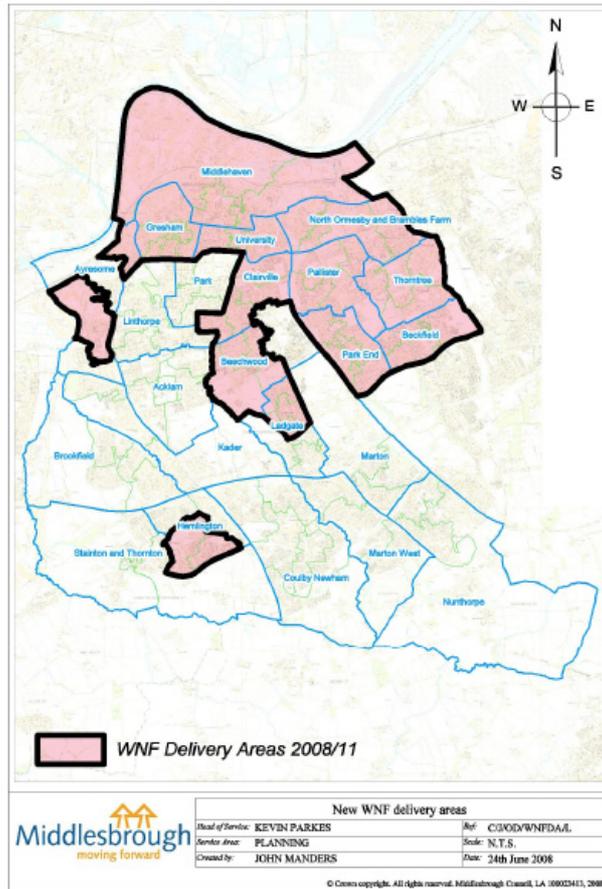
Middlesbrough Partnership이 2002년에 이어 Middlesbrough 정부와 협력하여 수립한 두번째 마을재생전략계획서인 Middlesbrough Community Strategy 2005⁹¹⁾에는 Middlesbrough 전체 지역의 재생전략을 6개 주제별로 현황, 전략 과제 및 실천방안(Strategic Priorities and Actions), 목표 및 성과지표(Indicators and Targets), 예상성과(Outcomes)를 상술하고 있다. 6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SUPPORTING CHILDREN AND LEARNING
- PROMOTING HEALTHIER COMMUNITIES FOR ALL AND EFFECTIVE SOCIAL CARE FOR ADULTS
- CREATING SAFER AND STRONGER COMMUNITIES
- TRANSFORMING OUR LOCAL ENVIRONMENT
- MEETING LOCAL TRANSPORT NEEDS MORE EFFICIENTLY
- PROMOTING THE ECONOMIC VITALITY OF MIDDLESBROUGH

89) <http://www.middlesbrough.gov.uk/ccm/navigation/community-and-living/regeneration-programmes-funding-team/?page=5>

90)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서는 지원을 받는 지자체별로 마을관리협력조직(NMP; Neighbourhood Management Partnership)을 조직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 (WMNT)는 Middlesbrough의 NMP이다. NMP는 NRF사업의 지역전략협력조직(LSP)에 참여한다.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에 대해서는 <http://www.wmnt.co.uk/wmnt/> 참조.

91) 2008년에 세 번째 재생전략계획으로 15년 장기전략인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2008 - 2023을 수립하였다. 현재 잠정안(draft) 상태의 계획을 Middlesbrough Partnership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7〉 Middlesbrough의 NRF 지원 대상 지구

이 중 물리적 환경 관련 주제인 ‘TRANSFORMING OUR LOCAL ENVIRONMENT’ 의 전략과제와 실천방안 및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번역 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 Strategic Priorities and Actions

Priority 1 :

Improve the standard of cleanliness throughout the town, with a focus on key areas of the town.

Action : Continue the improvements already being made to street cleanliness in order to reduce the proportion of land classified as unclean (through litter, graffiti and fly tipping) by the amounts identified in Middlesbrough Council’ s

Best Value targets over the next three financial years.

Priority 2

Develop a high quality network of public realm, open space and parks to serve the needs of the community.

Action : Develop a Green Spaces Strategy for the town and based on this, implement a programme of appropriate environmental improvements, over the next three financial years, to the neighbourhoods where the quality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s poorest.

Priority 3

Contribute to reducing the fear of crime in public places.*

Action : Implement a programme of lighting improvements and CCTV installation in 2005/06,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residents within the neighbourhoods where the environment is most threatening.

Priority 4

Increase the amount of household waste, which is recycled.

Action : Extend kerbside recycling and waste minimisation education in order to deliver the proportion of household waste recycled by the amounts identified in Middlesbrough Council' s Best Value targets, over the next three financial years, whilst minimising the amount of waste produced.

Priority 5

Improve air quality.

Action : Support the actions identified in Middlesbrough' s Air Quality Strategy, for example increasing the numbers of vehicles using 'green' fuels.

Priority 6

Increase species and habitat biodiversity.

Action : Support the actions identified in the Tees Valley Biodiversity Action Plan, for example actions that maintain the population of water voles in our becks.

Priority 7

Reduce the causes and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ction : Support the actions identified in Middlesbrough' s Climate Change Community Action Plan, in order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and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for example promoting the use of loft insulation and providing free low energy light bulbs to low income homes.

Priority 8**Involve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in transforming the local environment.**

Action : Establish an effective Community Environment Conference, in 2006, in order to provide a mechanism to exchange best practice within the sector.

*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fear of crime lies within the Creating Safer and Stronger Communities Group, but the Environment Group sees it as a high priority and will also monitor progress.

□ **Indicators and Targets**

- Reduce the proportion of land classified as unclean from 28.0% (2003/04) to 26.6% in 2005/06 and 24.0% in 2006/07.
- Maintain the high level of residents satisfied with parks and open space at 82%.
- Reduce the percentage of residents who feel that their neighbourhood is unsafe from 21% in 2003 to 16% in 2006/07.*
- Increase the percentage of the total tonnage of household waste that has been recycled from 10.3% in 2003/04 18% in both 2006/07 and 2007/08
- Maintain the numbers of days a year when air quality standards have been breached at 15.
- Increase year on year the percentage of sites of Nature Conservation Importance in a favourable condition.
-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 baseline figure of 815,000 tonnes in 2000, by 5% in 2004/05, 6.25% in 2005/06 and 7.5% in 2006/07.

□ **Community Strategy와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Community Strategy는 지방정부가 행정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생 전략이고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는 행정권역 중 NRF 수령 지구에 대해 수립하는 재생전략이다. 따라서 NRF를 지원받는 지방정부는 대부분 Community Strategy에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데, Middlesbrough 역시 Community Strategy에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를 포함하고 있다.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는 Community Strategy에서 수립된 주제별 과제와 목표를 NRF 지원대상인 빈곤지구들에도 모두 동일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NRF 지구들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목표 12개⁹²⁾를 성과지표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⁹³⁾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마을재생국과 마을재생팀

□ 마을재생국(Neighbourhood Renewal Unit)

중앙정부 커뮤니티·지자체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소속된 마을재생정책 전담부서이다. 마을재생기금(NRF)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전략협력조직(LSP)들을 마을재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마을재생팀(Neighbourhood Renewal Team)

마을재생국(NRU)이 지역별 마을재생사업 관리업무를 위해 잉글랜드 9개 지역(Region) 별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에 설치한 부서이다. Middlesbrough의 마을재생사업관리를 담당하는 North East Government Office의 마을재생팀은 Middlesbrough Partnership에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지방정부 : Middlesbrough Council

Middlesbrough 시당국은 LSP인 Middlesbrough Partnership와 협력하며 시 전체의 재생전략(Community Strategy) 및 NRF 지원을 받는 지구들의 마을재생 전략(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을 수립할 책임을 갖는다. 마을재생 전략(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의 수립 및 사업추진 권한은 LSP인 Middlesbrough Partnership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시 당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Middlesbrough Partnership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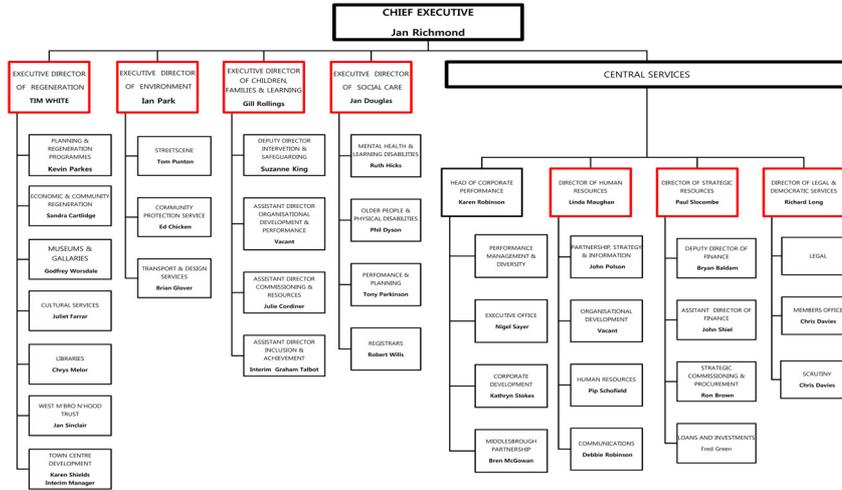
마을재생사업은 Middlesbrough 시정부의 재생업무 담당부서인 Regeneration국에서 관장하고 있다.⁹⁴⁾ Regeneration국은 본청 조직 이외에 2

92) 취업연령층의 실업률, 저소득가구비율, 1000명당 범죄건수, 1000가구당 강도건수, 1000명당 차량범죄건수, 3단계5수준 학습목표 성취학생비율, 5+GCSEs를 A+에서C등급까지로 성취한 학생비율, 취업등의 이유가 아닌 이유로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비율, 흡연인구비율, 주당 술 20단위 이상을 마시는 사람 비율, 주당 5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 비율, 동네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등이다.

93) 예를 들어 취업연령층의 실업률이 현재 NRF 지구는 6.4%, Middlesbrough 전역은 4.9%로서 1.5% 격차가 있는데 이를 1년 후에는 1.43%로 줄이겠다는 형식이다.

94) 재생국의 관장업무는 Community Development, NDC, Cultural Services, Neighbourhood Renewal,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Development, European Issues, Stockton-Middlesbrough Initiative, Gallery Management,

개 지역에 Community Development team을 운영하며 마을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⁹⁵⁾



〈그림 28〉 Middlesbrough 정부조직

(3) 대표 사업조직 - Middlesbrough Partnerships (LSP)

□ 조직 개요

Middlesbrough Partnership은 Middlesbrough의 마을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 지역전략협력조직(LSP)이다. Middlesbrough 시정부를 비롯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Middlesbrough의 25개 기초 커뮤니티의회 대표들, 주민조직,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 정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여러 참여기관들이 협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이 중심이다. 상근인력은 사무직원 5명과 지역 클러스터⁹⁶⁾ 업무지원인력 1명 뿐이다. 사무실은 Middlesbrough 시청사 안에 위치하고 있다.

Strategic Housing Issues, Libraries, Town Centre Management이다. (Middlesbrough Council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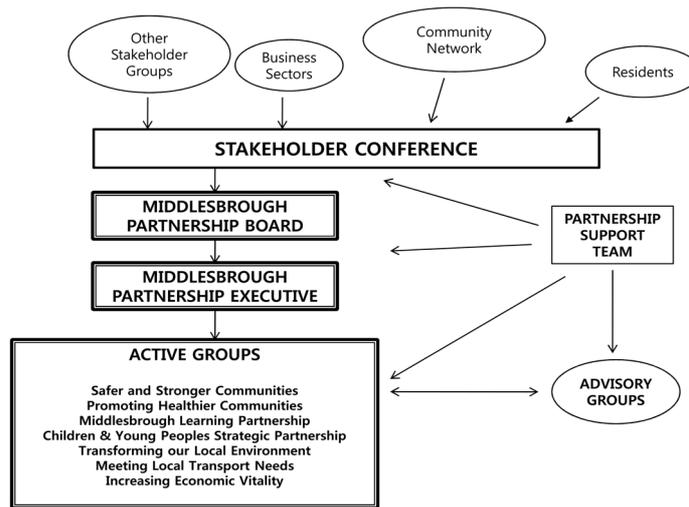
95) 2개 지역사무실은 Newport neighbourhood Centre와 Easterside Library에 소재하고 있다.

96) Middlesbrough의 25개 기초 커뮤니티를 4개 권역으로 묶은 것을 말한다.

□ 조직 구성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board) 아래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도시 부문별 사업 추진협의기구인 Action Group들이 편제되어 있는 구조이다. Middlesbrough Partnership 자체가 관련 주체들의 협의와 협력을 위한 조직이므로 원론적으로는 관련주체 연합회의 (Stakeholder Conference)가 가장 최상위 기구이긴 하나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관련주체 연합회의는 Middlesbrough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관련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교환을 위한 회의로서 Partnership 주관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MIDDLESBROUGH PARTNERSHIP STRUCTURE



〈그림 29〉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조직 구성

◦ 위원회(Board)

Middlesbrough 의회 의원, 지역공공기관, 협력조직, Area clustr Group 대표자들, 커뮤니티 네트워크(주민조직) 대표자들, 민간단체 및 Action Group 대표로 구성되며 North East Government Office가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2008년 12월 현재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주요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위원들의 소속기관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8〉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명 및 소속
Partnership Chair	-Les Southerton, Stockton Middlesbrough Initiative
Public Sector & Other Organis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uncillor David Budd, Middlesbrough Council -Councillor Barry Coppinger, Middlesbrough Council -Steve Davidson, JobCentre Plus -Linda Broadhead,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 -Ian Hayton, Cleveland Fire Brigade -Cheryl Hodds, Tees Valley Learning Skills Council -Ian Jeffereys, National Probation Service Teesside -John Keelty, Connexions -Barbara McGuinness, University of Teesside -Jan Richmond, Chief Executive, Middlesbrough Council -Steve Sugden, Cleveland Police -Bernard Williams, Erimus Housing
Area Cluster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Jim Elsdon (North Cluster) -June Goodchild (West Cluster) -Mick Thompson, (East Cluster) -John Hobson, (South Cluster)
Community Network (including BME Community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ris Beety -Carl Ditchburn -Tony Hanson -David Headland -George Hopkins -Haji Jaber -Sue Kearney -Yasmin Khan -Wendy Shepherd -Michael Wright
Private Sector and Business Organis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orge Cooke, Middlesbrough Football Club Community Project -Joanne Fryett, Chamber of Commerce -Peter Studd, HBS -Alison Thain, Tees Valley Housing Group -Darren Thwaites, Evening Gazette
Action Group Ch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 Douglas, Middlesbrough Children's Trust -John McDougall, Transport Action Group -Ian Parker, Safer Middlesbrough Partnership -John Daniels, Stronger Communities Action Group -Gill Rollings,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Colin Stratton, Economic Vitality Action Group -Chris Watson, Environment Action Group -Peter Heywood, Health & Social Care Partnership
Advisory	-Hilton Heslop, Government Office North East

◦ 집행부(Executive member)

부서장 1인 포함 각 조직 대표자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구성원 및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 Chair - Les Southerton,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 June Goodchild, Cluster Representative
- (vacant), Cluster Representative
- Joanne Fryett, NE Chamber of Commerce
- Shane Sellers, Middlesbrough Police
- Jan Richmond, Middlesbrough Council
- Jan Douglas, Middlesbrough Children's Trust
- Bernard Williams, Erimus Housing
- Gill Rollings,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 Michael Wright, Community Network
- David Headland, Community Network
- Tony Hanson, Community Network
- Sue Kearney, Community Network
- Wendy Shepherd, Community Network
- Carl Ditchburn, Community Network

◦ Action Groups

6개 주제에 따른 사업부문별로 Community Strategy와 Local Area Agreement에 부합되는 사업진행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각 사업부문마다 다시 협력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CHILDREN AND LEARNING 부문의 경우 학교교육 및 성인 평생교육관련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MLP)과 영유아 및 청소년 빈곤 및 탈선 예방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Middlesbrough Children's Trust, 2개의 Action Group이 조직되어 있다.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MLP)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Adult Learning Forum(16명)을 두고 있다. Middlesbrough Children's Trust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표 9〉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Action Group들 개요

부문	Action Group	위원장	사업목표
CHILDREN AND LEARNING THEME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Gill Rollings, Middlesbrough Council	The group aims to raise standards in schools and develop lifelong learning. This will include support for the 14-19 strategy for learning and adult education including learning and skills for the resettlement of offenders. This group wi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training programmes to meet adult skills needs identified in the economic vitality group below.
	Middlesbrough Childrens' Trust	Jan Douglas, Middlesbrough Council	The Partnership will lead work tackling issues raised in 'Every Child Matters' child poverty, maximising life chances of children in care or in need and strengthening protection for children at risk of abuse. This will include the treatment, education and prevention of drug misuse for 0-19s.
PROMOTING HEALTHIER COMMUNITIES AND EFFECTIVE SOCIAL CARE FOR ADULTS	Middlesbrough Health & Social Care Partnership	Peter Heywood, Middlesbrough Primary Care Trust	This group will target key local services including health, housing, education, crime and accident prevention responding to local need and encouraging healthy lifestyles. This includ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supporting older people to live independently for longer, the health of all people and better adult social care. The treatment, education and prevention of drug misuse for adults is also included.
CREATING SAFER AND STRONGER COMMUNITIES	Safer Middlesbrough Partnership	Ian Parker, Middlesbrough Council	Working with the Police and other local agencies to reduce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increase safety, promote use of leisure services and facilities and promote drug enforcement.
	Stronger Communities Action Group	John Daniels, Middlesbrough Voluntary Development Agency	This group will work towards social and community regeneration, tackling areas such as community cohesion, the Respect agenda, community sustainability and engagement and supporting the Voluntary & Community Sector.
TRANSFORMING OUR LOCAL ENVIRONMENT	Environment Action Group	Chris Watson, Groundwork Trust	Improving the quality, cleanliness and safety of our public space. This will include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and a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MEETING LOCAL TRANSPORT NEEDS MORE EFFICIENTLY	Transport Action Group	John McDougal, ONE North East	Improving bus and train services and other forms of local transport to reduce congestion and pollution and increase safety. Securing better access to jobs and services, particularly for those most in need.
PROMOTING THE ECONOMIC VITALITY OF MIDDLESBROUGH	Economic Vitality Action Group	Colin Stratton,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Supporting business improvements, providing positive conditions for growth and employment,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adult skills by identifying present and future skills needs (for the Learning Partnership to develop programmes around), helping the hardest-to-reach into work, addressing housing market failure, extending the quality and choice in the housing market and promoting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DVISORY GROUPS	Middlesbrough Cohesion Partnership	Cllr Bob Kerr and Cllr David Budd, Middlesbrough Council	Provides a forum for dialogue and discussion about equality, diversity and cohesion issues for those living and working in Middlesbrough and act as channel for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equality, diversity and cohesion matters.

□ 2009년의 조직 개편

Middlesbrough Partnership은 2009년 조직을 개편하였다.⁹⁷⁾ <그림 30>에서 보듯이 과거에 비해 위원회와 집행부가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로 통합되고 Partnership Forum과 Action Group들, 집행위원회가 동등한 위상을 갖는 조직으로 표현하고 있다.⁹⁸⁾



<그림 30> 2009년 개편된 Middlesbrough Partnership 조직 구성

◦ Partnership Forum

Middlesbrough Partnership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1년에 4회 갖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마을재생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관련 쟁점들을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조직개편 전 관련주체 연합회의 (Stakeholder Conference)와 동일한 성격의 회의이다.

◦ Action Groups

6개 사업주체에 따른 사업부문별로 사업을 관리하는 위원회 조직이다. 2008년까지의 Action Group과 동일하다.

◦ Partnership Executive Board

Middlesbrough의 핵심적 조직들의 대표와 각 Action Group들의 대표를 포함

97) 현재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홈페이지에서 개편된 내용의 조직 소개를 볼 수 있다.

98) Middlesbrough Partnership(2008),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2008 - 2023(draft)

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마을재생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의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구이다. Action Group들과 함께 사업추진을 관리하며 이를 1년에 2회 Partnership Forum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6주에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4) 세부사업 참여주체들

Middlesbrough Partnership에는 다양한 지역조직과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집행위원회, 혹은 Action Group들에 자신들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마을재생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각종 마을재생 프로젝트의 직접적 주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Middlesbrough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지역기구들과 조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Middlesbrough Partnership 참여기관의 유형

유형	참여주체 기관명
지방정부기구	. Government Office for the North East . Middlesbrough Council
지역 공기업	.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지역 파트너십	.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ic Partnership .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 .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 Middlesbrough Cohesion Partnership . 관련주체 연합회의 (Stakeholder Conference)
지역 공공기관	. Cleveland Fire Brigade . Connexions . JobCentre Plus .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 Middlesbrough College . University of Teesside . Middlesbrough Police . Middlesbrough Primary Care Trust(a free standing, statutory body) . National Probation Service, Teesside
제3섹터/자원봉사 조직	. Erimus housing . Tees Valley Housing Group . Middlesbrough Football Club
지역 민간기관	.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주민조직	. Middlesbrough Community Councils & Area Cluster Groups .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 BME(Black and Minority Ethnic Community) Network . Middlesbrough Council of Faiths . Middlesbrough Cohesion Partnership

(5) 주민조직들

광역재생사업인 Tees Valley Single Programme과는 달리 마을재생사업에는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중요한 참여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조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Middlesbrough 행정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community council 들이다. Middlesbrough는 35개의 지구(districts) 및 교외지역(suburbs)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25개 지구에 community council이 구성되어 있다.⁹⁹⁾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community council을 창구로 수렴되는데, 2007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연인원 3,150명 이상이 118 차례 community council 회의에 참여(평균 26.7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⁰⁾

□ Area Cluster Group

Middlesbrough의 25개 커뮤니티를 권역별로 묶은 4개 지역클러스터(North, South, East, West)별로 구성된 커뮤니티간 협의체이다. 각 커뮤니티 의회 (community council)별로 의원 4명씩을 대표로 선임, 지역클러스터 group을 구성하여 6-8주에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클러스터에는 해당 지역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Middlesbrough 지역에서 영국정부의 커뮤니티육성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을 지원받는 지역 커뮤니티조직들의 network 기구로서 자원 단체, 주민조직, 종교조직, 소수인종 조직 등의 신용협동조합들(credit

99) community council은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지역의 최소 지역자치행정단위로서 village council, neighbourhood council 이라고도 한다. 대도시지역에서는 폐지된 곳이 많다. 공간적 범위는 과거 교구(parish)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인구가 100명 이하인 경우도 있고 수만 명인 경우도 있다. 선거권자 200명 이하인 경우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권자들이 1년에 한번 모두 모여 회의하는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한다. 잉글랜드 전역에 약 8,700개의 community들이 있는데, 이 중 1,500개는 council 없이 전체 주민회의를 하고 있다. 의원은 4년 임기의 무보수 자원봉사직이며 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결정한다. 의원직에 비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선거를 치루나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가 의원직 수에 미달하여 선거 없이 결정된다. 버스정류장, 공원, 놀이터, 벤치, 공중화장실, 가로등 등 마을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상위 지방정부에서 진행되는 마을 관련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과 지역 자원 조직 지원금 교부 관련업무 등도 관장한다.(wikipedia, 'civil parish' 내용 참조)

100) Middlesbrough 지방정부 홈페이지(<http://www.middlesbrough.gov.uk>)의 Home>Community and living>Community regeneration>Community regeneration FAQ's>Statistics

unions)이 주 구성원이다. Middlesbrough Voluntary Development Agency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역 커뮤니티조직들을 대표하여 Middlesbrough Partnership 집행위원회와 모든 Action Group들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 BME(Black and Minority Ethnic Community) Network¹⁰¹⁾

흑인과 소수인종의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조직이다. 이들 계층의 고용·훈련·교육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며,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를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추진사업에 참여한다.

□ Middlesbrough Council of Faiths¹⁰²⁾

Middlesbrough 지역의 생활보호 필요자들을 위한 자원활동 조직이다.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를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추진사업에 참여한다.

□ Middlesbrough Cohesion Partnership

인종 간 평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과제 도출 및 관련사업에 대한 자문을 활동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Middlesbrough 의회 의원들 및 관련단체들에서 파견된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월에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를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Middlesbrough Partnership의 추진사업에 참여한다.

101) <http://www.bmenetwork.org.uk/>

102) <http://www.middlesbroughfaiths.org.uk/>

3

사례3 : 일본 츠루오카시 마을만들기

1)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지역/규모

츠루오카시의 면적은 1,311.51km², 인구는 142,384명(2005년 조사)이며, 고령화율은 26.4%이다. 시 면적은 동북지방의 시 중 가장 크고, 전국 시정촌에서는 8위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구시가지에서는 에도시대의 도시구조가 남아 있어, 그 역사적 경관 등으로 연간 2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2005년 10월에 1시 5정이 합병하여 현재의 츠루오카시가 탄생하였다. 츠루오카시는 야마가타현 庄内지방의 중핵도시로 성곽도시 이래의 역사적 전통문화·산업 등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산업과 생활의 기반을 정비해면서 발전해왔다.

츠루오카시의 중심시가지는 성곽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근대 이후 대규모 도시개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곽마을 특유의 가로형태가 많이 남아있고, 1990년에 작성된 「경관형성기본계획」 등에서 규정된 경관형성사업 등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상업의 지반침하라고 하는 현상을 멈출 수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90년대 말의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의 거주인구와 상업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외로 확대되고 있었고 중심부의 중심력이 쇠퇴하여 도시 코스트의 증대에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추진된 것이 시민 등이 같이 하는 「참가형 마을만들기」의 전개이었다. 초기에는 시민측에 마을만들기를 기치로 활동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마을만들기의 과제를 제시하고, 필드워크나 디자인게임 등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이 참가하고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문제의식의 공유, 경험의 축적, 주체의 발굴을 도모해 왔다.

2001년 6월에 책정한 「츠루오카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도시계획의 구역구분을 실시하여 도시기능을 중심부에 집적시키고, 인구규모에 맞는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다. 콤팩트시티 구상에서는 시청과 합동청사를 핵으로 하는 시빅코어지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상업지역, 거주지역, 교류지역 등을 배치하고, 콤팩트시티 구상의 실행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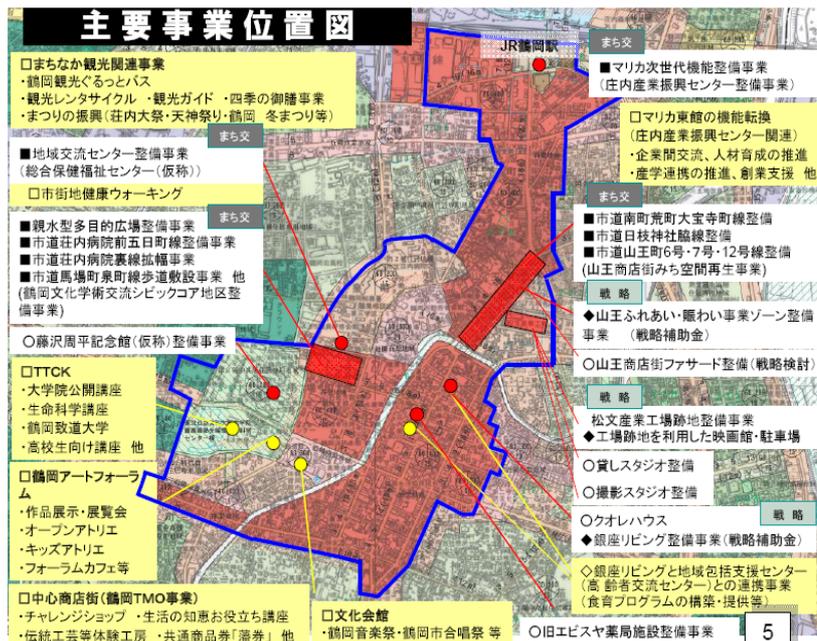
2004년 5월에 시가화 확대를 억제하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결정하였다.

(2) 사업 프로그램 개괄

1998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이 제정된 후, 츠루오카시에서도 1999년에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을 제출하였다.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 제정 후에도 전국적으로 중심시가지 공동화는 더욱 진행되었고, 2006년에 마을만들기 3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기본계획의 책정이 필요하게 되어 츠루오카시에서도 새로운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2008년 7월에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았다.

〈표 11〉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목표	교류의 확대	중심상점가의 활성화	도심거주의 환경만들기
하드 사업	藤沢周平기념관정비사업 庄内산업진흥센터시설정비사업 츠루오카 학술교류 시빅코어 지구 정비사업	산노상점가 재생사업 松文산업공장적지 정비사업 구에비시아 약국시설 정비사업	종합보건복지센터 정비사업 지역교류센터 정비사업 건강거주도심사업 - 긴자크레오하우스 정비사업 - 긴자리빙 정비사업
소프트 사업	도심관광 관련 사업 시민강좌 등 개최 츠루오카 아트포럼 사업 츠루오카시 문화회관 관련 사업	츠루오카 TMO 사업 상점가 활동	시민건강만들기 관련 사업 고령자교류센터 크레오하우스 · 긴자리빙 정비사업 기업공동 탁아시설 운영사업



〈그림 31〉 주요사업의 위치도

□ 시빅코어 정비사업¹⁰³⁾

1993년에 지방거점 도시지역지정을 받아 「중심시가지의 기존 도시기능을 교외로 보내지 않는다」 「다음 시대를 담당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시가지에 집적시킨다」 「분산되어버린 도시기능을 중심시가지에 다시 집적시킨다」를 도시기능에 대한 방침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병원의 중심시가지내로의 이전 재건축, 대학유치 성공에 의한 「츠루오카 타운캠퍼스」 개설, 미술관 「츠루오카 아트포럼」 개관, 합동청사의 유치·정비 등이 있다.

2002년에 츠루오카 문화교류 시빅코어지구 정비계획을 책정하고 2000년 경관형성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으로 적극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빅코어지구에서의 합동청사 및 병원적지 주변의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5년 2개년에 걸쳐 6회에 이르는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과 연계한 시민참가를 추진하였다. 워크숍에서는 합동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기능·회유 이미지, 지구경관 등을 생각함으로써 가로경관 정비의 실현을 위한 제안만이 아니라, 시설과 가로경관 등 하드적인 정비에 관한 참가자들의 이해·검토를 도모함으로써, 활동의 가능성·전개에 관한 소프트적인 시민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였다. 와세다대학 사토시게루 연구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으며, 츠루오카시의 각종 시민단체 및 시민, 국토교통성, 동북지방정비국, 츠루오카시 건설부 도시계획과 등의 행정주체가 참여하였다.



〈그림 32〉 주민참여 워크숍의 모습

□ 도심거주의 추진

중심시가지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늘이고, 중심시가지의 커뮤니티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기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받

103) 시빅코어 지구 면적은 40.3ha이며, 지구내에서 청사 통합을 계기로 도시기반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화하는 부분인 액션 에리어의 면적은 9.3ha이다.

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 중심부 상점가 등이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계획인 「산노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거주 도심정비 프로젝트」는 중심시가지에 건강한 고령자가 거주하는 집합주택의 정비사업(민간사업) 등 유희지 및 저·미이용지 재편사업으로, 도로폭을 확대하지 않고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걷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 집객력이 있는 상점가의 형성

산노상점가에서는 2004년부터 프리마켓과 포장마차, 산지직매장 등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산노상점가 나이트 바자」라고 부르는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도 널리 인지되어 상점가가 재인식·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증가한 집객력을 다음 단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점의 외관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노마을만들기협정」을 2005년에 제정하여 고객이 찾아오는 상점가를 지향하는 활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도시에 모이고 거주하기 위한 환경 정비

츠루오카시의 중심부에 있는 긴자상점가에서 민간병원의 적지를 활용하여 고령자가 도시에 모이고 거주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근린의 공지를 활용하여 젊은이로부터 고령자까지 모일 수 있는 교류 스페이스와 챌린지숍을 갖춘 시설정비도 검토되고 있다.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 마을만들기 추진과 도시종합사업추진실

마을만들기 추진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기획, 입안,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의 지도, 조성 등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민간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지역진흥정비공간의 업무, 도시기반정비공간의 업무, 도시개발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도시종합사업 추진실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사업 제외)의 지도 및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동북지방정비국 건설부 도시·지역주택정비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인정을 목표로 하는 시정촌에 대해서 국토교통성 관련 「인정과 연계한 지원조치」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동의 및 인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주택교부금 관련 업무, 건설업 허가 업무, 동북지방의 각 현과 전력회사 등이 수행하는 공공사업의 인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정부

□ 츠루오카시 건설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는 공원녹지계, 관리계, 도시계획계로 구성되는데, 도시계획계에서는 토지이용의 조정, 시가지 정비 방침 등 다양한 계획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도시정비과가 합쳐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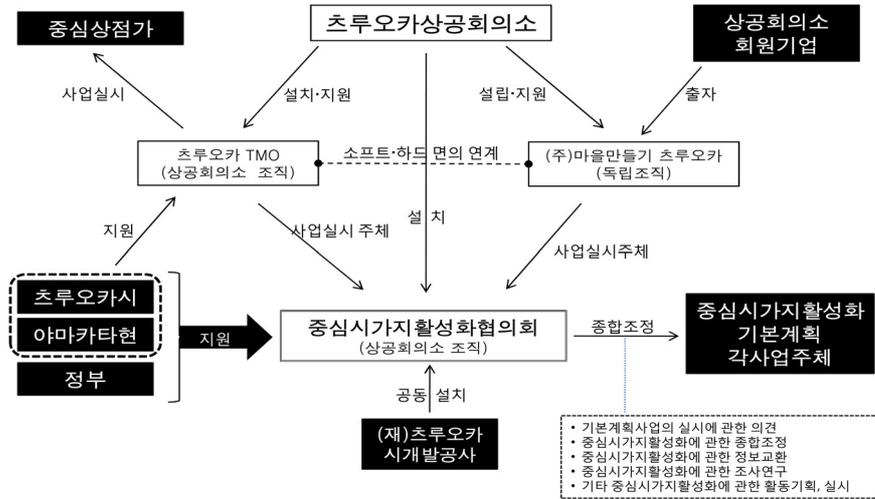
□ 츠루오카시 상공부 상공과 (전략적 중심시가지상업등 활성화지원사업)

상공과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환경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 1월에 산업진흥센터에 창업지원시설을 정비하여 창업 준비자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면에서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츠루오카 TMO를 중심으로 하는 상점가 활성화와 매력있는 점포 만들기, 시민의 활동의 장으로서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면에서는 기업방문 및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여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하고, 츠루오카 직업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산업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3) 대표사업조직

<그림 33>은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츠루오카시의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주요 사업조직의 상관관계이다. 그 중심에는 모태역할을 한 츠루오카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다른 사업조직의 설치 및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츠루오카시 등의 행정과 츠루오카시 개발공사가 사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 또는 공동출자 하였다. 츠루오카 TMO는 마을만들기의 소프트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츠루오카는 실제로 하드적인 측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츠루오카 TMO와 소프트·하드면에서 연계하고 있다. 중심시

가지활성화 협의회는 중심시가지와 관련한 마을만들기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TMO의 구성이나 활동이 상업자에 치우칠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간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주도의 조직으로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 츠투오카 마을만들기 조직간 관계

□ 츠투오카 TMO

츠투오카 TMO내에는 중심상점가에서 선발된 상업자로 구성된 「중심상점가 만들기협의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비자 모니터 회의」, 사업자·시민·행정·전문가로 구성된 「TMO운영위회의」 등 3가지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중심상점가만들기협의회」에서는 상점가를 어필하기 위해 중심상점가 시민에게 상점가를 알리는 상점가지도를 작성하였고,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사업, 디스플레이 콘테스트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상점가 소프트 사업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소비자 모니터 회의」에서는 시민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심상점가를 취재하여 널리 시민에게 소개하는 정보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와 빈 점포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TMO운영회의」에서는 시민단체간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시민교류실을 운영하고 있고, TMO사업에 관한 정보와 각종 이벤트를 알리는 TMO 통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츠루오카

마을만들기 츠루오카는 2007년 7월 10일에 츠루오카 시내에 소재하는 32개의 사무소(상공회의소를 포함한)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 마을만들기 회사다. 츠루오카시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츠루오카시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은 츠루오카시와 츠루오카 상공회의소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주로 츠루오카시는 행정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상공회의소는 이벤트와 빈 점포대책 등 소프트 중심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상점가 진흥책으로서의 소프트 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효과를 만들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 정비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가 필요하게 된 점, 마을만들기에서의 민간의 시설정비를 동반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을만들기 츠루오카가 사업주체가 되어 상공회의소와 연계하면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식회사로서 설립된 마을만들기 츠루오카는 민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행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츠루오카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자녀보육지원기능 정비계획」은 2008년 4월에 시설을 개원한 사업으로 상점가의 빈 점포를 이용하여 기업가맹방식의 공동육아시설을 정비한 것이다.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공동가맹함으로써 기업내 육아부담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중심시가지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과 교외에서의 방문자 모두를 타겟으로 전개하는 집객기능으로서 「松文산업공장 적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장적지를 이용한 집객시설(영화관, 임대 스튜디오, 음식점 등)과 공동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이다. 츠루오카에는 문화적 활동을 하는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이 있어, 특히 음악에 관한 예술계 단체를 위해 공공의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발표·연습의 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내에서 영화 상영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관을 정비하여 2009년에 개업할 예정이다.

「에비스야 약국 적지 활용계획」은 상점가내의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공예, 크래프트 체험공방, 전시, 판매, 정보발신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

다. 시가지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과의 연계도 고려하면서 건물자체의 매력을 재료로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거점 만들기를 추진한다.

그리고 「도심활력 사업」은 시민참가형의 활기 있는 축제·이벤트의 지원을 중심으로 활기 창출에 관한 소프트 사업의 지속적 전개와 관광정보제공 기능을 정비한다.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총합조정과 사업의 추진에 관한 것, 시정촌이 책정하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기여 하는 등, 마을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라고 하겠다. 시정촌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의견 청취, 기본계획 및 인정기본계획의 실시 등에 있어서의 시정촌에 대한 의견 제시, 민간사업자가 작성하는 특정민간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계획의 협의 등을 수행한다.

2008년 6월에 츠루오카시 상공회의소에 설치·조직되었으며, 도시기능증진을 담당하는 (재)츠루오카 개발공사와 경제활력 향상을 담당하는 츠루오카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구성원은 24명으로, 츠루오카 산노상점가, 합동회사 크레오, (주)마을만들기 츠루오카, 츠루오카 죠카마치 트러스트, 츠루오카시 등이 있다.

(4) 지역 및 주민 조직들

□ 산노상점가

산노상점가는 인접하는 긴자상점가와 함께 98년에 작성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90년대 전반에 활성화 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서 얻어진 제안을 바탕으로 이후의 추진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간 정비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소프트 사업이 선행되고



〈그림 34〉 나이트바자의 모습

있는데, 2004년부터 나이트 바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운영은 상점가 조합 내부에 30대-50대 전반의 장년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 관내시민활동센터

관내시민활동센터는 「관내시민활동사」로 1999년에 활동을 개시하여 2001년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증을 받아 「관내시민활동센터」로 개조되었다. 회원 63명, 전담직원 2명의 조직으로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종 강좌와 지역통화의 사무국을 담당하는 외에 「츠루오카 마을 문학관 실행위원회」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 츠루오카 긴자상점가 진흥조합

1986년 11월에 설립한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86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시설주차장 (2개소 74대)과 공통상품권발행, 카드사업, 공동관측사업 등의 관측사업, 아케이드유지관리비 등의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 합동회사 쿠레오

고령자를 위한 주택인 쿠레오하우스를 건설함과 더불어 건설후 실시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임대입주자에 대한 생활상점 및 조인, 정보제공에 관한 서비스, 임대입주자에 대한 생활필수품 제공, 각종행사 기획, 개최, 운영 등이 있다.

□ NPO 미쯔이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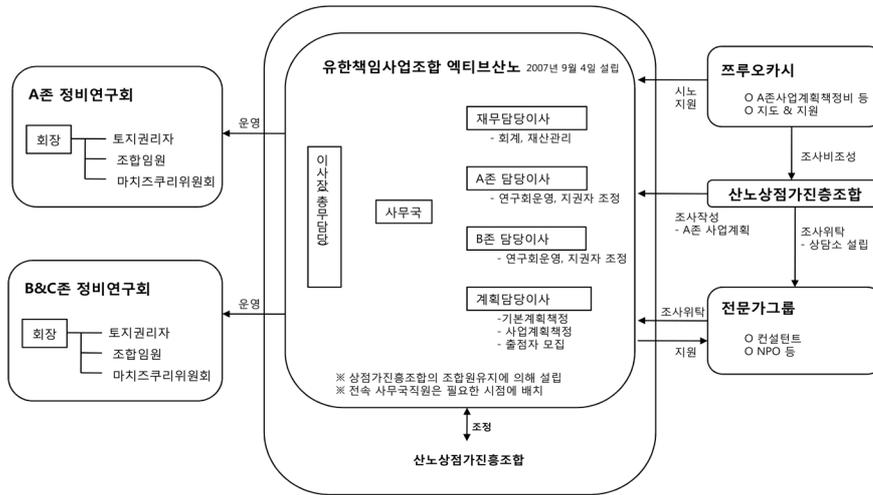
츠루오카 긴자에 고령자가 편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기에 풍성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의료 또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사회교육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있다.

□ NPO 츠루오카쵸카마치트러스트

시민활동으로서 츠루오카시내 중심시가지의 역사건축물의 보전·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을 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중기체제형 주택으로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으로서 창고·오래된 민가 등의 증개축, 개수, 점포만들기를 수탁하고 있으며, 경관·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으로서 건축사, 부동산업, 도시설계의 전문 스텝이 경관, 마을만들기, 어번디자인 등의 계획책정, 사업실시의 매니지먼트 등을 수탁하고 있다.

□ 유한책임사업조합 액티브 산노

상점가 진흥조합의 조합원 유지에 의해 2007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총무담당), 사무국, 4개 부서(재무담당이사, A존 담당이사, B존 담당이사, 계획담당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점가의 공터나 빈 점포를 활용하여 테넌트 믹스와 공동주차장 정비를 실시하여 소비자만이 아니라 상업자에게도 매력적인 상점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5〉 사업추진체계

4

사례4 :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사업

1) 사례개요

(1) 사업의 배경/지역/규모

세타가야구(世田谷区)는 동경 23구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약 9km, 남북 약 8km의 거의 평행사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면적은 약 58km²로 도쿄 23구 중 오타구(大田区)에 이어 2번째로 크고, 가장 작은 타이토구(台東区)의 약 6배에 달한다. 인구나 가구수는 동경 23개구에서 가장 많고, 도심에 가까워 교통편이 좋은 주택지로서 1910년대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는 1987년을 절정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199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인구는 2007년 현재 약 4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밀도는 144.8/ha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5%를 차지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자치구이다.

1970년대 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도성장이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반대 운동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때에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동경도는 지방자치법(1975년) 개정에 따라 구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이를 계기로 세타가야구의 경우 1975년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이 주민참여를 통해 구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거의 모든 행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지자체의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 종합계획의 기본구상이 수립되어 공식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 행정, 복지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분야의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구 공무원의 학습시대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단순히 학습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세타가야구는 학습→실험→증정사업 등의 흐름으로 학습과정을 확대하면서 직원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 후 1980년 도시계획 수단 중 하나인 지구계획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계기로 세타가야구는 1982년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안전하

고 살기 좋은 마치즈쿠리를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서 내걸고 있다.

1984년 조례에 근거하여 '마치즈쿠리 추진지구'가 지정되었고, 아울러 주민의 주체적인 운영을 위해 '마치즈쿠리 협의회'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추진지구는 주거환경 정비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며, 협의회는 주민의 학습, 마치즈쿠리 제안의 작성·제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협의회는 제안에 근거하여 구는 공공시설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주민참여형 마치즈쿠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도시가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특히 도로도 좁고, 방재상 위험한 밀집시가지 정비지구의 정비에 있어서, 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광장과 녹도 등을 조성하였다. 통상의 도시 정비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그 성과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래의 재개발 방식 도시정비와는 다른 '수복형' 마치즈쿠리¹⁰⁴⁾가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2) 사업 프로그램 개괄

세타가야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부분을 세타가야구 트러스트 마을만들기과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조정 등을 거치며, 예산을 배분하는 일에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만,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과가 관여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조례에 명시된 지구(유도지구, 추진지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설계공모,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수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용된 대상이 투자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굴뚝, 정류장, 화장실 등을 꾸미는 등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일상적 환경을 살기 좋고 활력 있게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많다. ¹⁰⁵⁾ 대표적인 사업사례로는 타이시도 지구 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기반정비가 진행되지 못하여 협소한 도로와 막힌 골목길이 남은 채로 많은 목조임대아파트가 밀집하는 지역이었던 타이시도 지구는 1979년에 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해 방재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명되어 방재 마을

104) 1978년 건설성 도시국은 수복형 마치즈쿠리를 ①일정한 생활단위를 대상으로 ②지역의 기본적인 구조를 존중하면서, ③소규모 한정적 사업을 공간적·시간적으로 전개하면서, ④공공공간의 정비와 건물과 부지의 정비를 병행하고, ⑤발의입안실사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주민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05) 양진영,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

만들기 모델지구로 지정되게 된다. 1980년 구는 7회에 걸친 타이시도 마을만들기 환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의 불연화, 4m이상의 도로폭 확보, 광장 정비 등을 포함한 가이드 플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주민측은 계획이 하드적인 측면에 편중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고, 주민참가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협의회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1982년 11월에 타이시도 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발족하여 지구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대화속에서 매몰되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하천을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실개천으로 부활시킨 카아스야마가와 녹도, 주변 지역을 보행중심 공간으로 하고 센터부지의 1/3을 구민광장으로 조성한 사쿠라가오카 구민센터, 굴뚝을 주민공모에 의해 채색 디자인하여 단장한 도립청소 공장 굴뚝,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20여개의 공원 조성 등이 있다.

〈표 12〉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수법과 적용사례

수법	적용 사례
이용실태 사전조사	홀, 구민센터, 아동관, 공공시설 안전성, 지구회관, 공원 및 녹도
아이디어 공모	공중화장실, 소각공장 굴뚝 색채, 마을만들기 경연대회, 학교주변 정화, 역전광장계획
설계 공모	미술관, 지구회관,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출장소 등
워크숍 개최	소공원, 뒷골목정비, 경관가꾸기
협의회	마을만들기, 구민센터, 친목모임
모의실험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공동제작	유보도 벽화제작, 공원 목제벤치

(3)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조례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조례는 토지기본법에 근거하여 1982년에 제정되었고, 1995년에 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신)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구성은 총 5장 31조, 그리고 잡칙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본이념과 책무, 마치즈쿠리에 관한 방침 등의 작성, 마치즈쿠리 추진 및 지원 등 주민참여 마치즈쿠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들이 조례에 포함되고 있다.

조례에는 지구(地區)차원의 마치즈쿠리에 관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마치즈쿠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마치즈쿠리 유도지구 및 추진지구의 지정 및 계획수립, ②지구차원의 마치즈쿠리를 추진

할 주체가 되는 지구 마치즈쿠리 협회회의 조직, ③주민들의 마치즈쿠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정보제공과 전문가 파견, 지원제도 등의 사항이 담겨져 있다.

구조례에서는 마치즈쿠리 협회회가 계획수립주체로 규정되고 있었지만, 신조례에서는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을 주민 및 지구 마치즈쿠리협회가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구 마치즈쿠리협회의회와 주민 등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개정의 핵심이다. 즉 신조례에서는 마치즈쿠리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마치즈쿠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마치즈쿠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체, 펀드 조성이 새로 첨가되었는데, 이는 마치즈쿠리 센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세타가야구 독자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및 보조내용은 융자, 신탁, 기금조성 등 다양한 재정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 1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던 세타가야구에서는 행정의 인력과 재원 등의 부족, 행정계획의 수비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행정이 파견하는 전문가의 중립적인 입장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마치즈쿠리 펀드를 도입하였다.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의 경우는 ‘주민 주체의 마치즈쿠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행정 또는 기업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 주체의 마치즈쿠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설립 취지로 하여,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가 위탁자가 되고, 미쓰이(三井) 신탁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주민 활동에 대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성사업의 부문은 시기별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약간씩 변화를 주는데, 2007년도에는 '입문 부문', '마치즈쿠리 활동 부문', '넷 문고제작 부문',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거점 만들기 부문'의 4개 부문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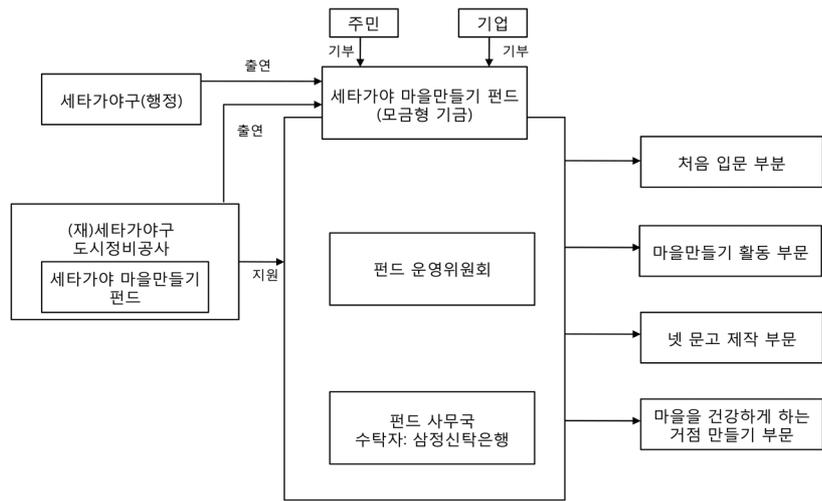
- 입문 부문 : 주체적인 마치즈쿠리 활동의 첫 발을 내딛는 활동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활동 사례로는 살기 좋은 마치즈쿠리를 목적으로 한 예비조사, 이벤트, 강연회, 견학회, 소식지 발행 등을 들 수 있다. 지원내용은 활동에 필요한 실비, 활동에 필요한 강사와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있다.

106) 양진영,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

- 마치즈쿠리 활동 부문 :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민 주체 마치즈쿠리 활동에 대해 조성하며, 하나의 그룹에 대한 조성은 3회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마치즈쿠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스터디, 워크숍, 이벤트 등의 활동,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결부되는 활동, 지역의 환경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만들기 활동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 활동에 필요한 강사와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 넷 문고제작 부문 : 과거에 펀드를 지원받은 그룹이 마치즈쿠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 지식, 기술 등을 정리하여 인터넷 상의 전자도서 형태로 공개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된다. 활동 사례로는 마치즈쿠리 그룹의 10년사, 마치즈쿠리 활동으로부터 얻은 경험·지식·기술 모음집, 세타가야의 마치즈쿠리 조사·연구와 제언서 등을 들 수 있다. 지원내용은 활동에 필요한 실비, 디자인과 레이아웃 등에 관한 비용, 원고 입력과 PDF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거점 만들기 부문 : 환경공생이나 지역공생의 마치즈쿠리를 추진하여 커뮤니티의 과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1건 당 500만 엔까지 조성한다. 이 제도는 주택이나 빈 점포, 정원이나 농가 주변 방풍림, 기업 소유지 등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민간 영역의 공공적인 공간을 확대·창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아직 행정제도 또는 기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원녹지·학교 교정 등 공공공간의 창조적 활용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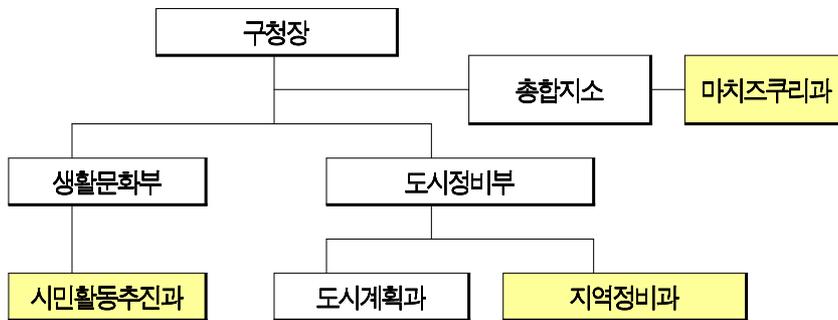


〈그림 36〉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의 운영체계

2) 참여주체

(1) 세타가야구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행정조직은 구청 생활문화부의 ‘시민활동추진과’와 도시정비부의 ‘지역정비과’를 비롯해 구청 종합지소의 ‘마치즈쿠리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세타가야구는 지역에 밀착한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5개 지역으로 행정조직을 분류하고 지역마다 ‘종합지소(지역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다시 27개 지구별로 분류하여 ‘출장소’를 설치하고 출장소별로 3~5개의 ‘부회(部會)’를 두고 있다. 각 종합지소의 마치즈쿠리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계획의 조사·계획·상담·지도, 지구 마을만들기계획의 조사·계획, 밀집주택시기정비촉진사업 등의 각종 사업의 추진, 건축협정의 계발 및 지도, 건축분쟁의 조정, 각종 조례의 지도, 건축개요서 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민활동 추진과에서는 각종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시민활동에 관한 상담, 각 출장소 관련 업무, 지역 NPO의 활동거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비과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지구 마을만들기 협회 등의 지원, 풍경만들기에 관한 각종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⁰⁷⁾



〈그림 37〉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관련 행정조직도

(2)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1980년에 세타가야구의 전액출자로 세타가야구 ‘(재)도시정비공사’가 조직되었으며,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센터는 구민·기업·행정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배우고,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파트너십형 마치즈쿠리를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공사 내에 설치되었다. 2006년 4월 (재)도시정비공사는 ‘(재)세타가

107) 세타가야구 홈페이지, <http://www.city.setagaya.tokyo.jp/index.shtml>

야 트러스트협회'와 통합되었고, 명칭도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로 바뀌었으며, 마치즈쿠리 센터도 이 조직으로 통합되어 명칭도 '트러스트 마치즈쿠리과'로 변경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공익신탁'인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를 설치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마치즈쿠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마치즈쿠리 펀드를 왜 공익신탁 방식으로 도입했는가는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의회의 관여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펀드는 고속도로건설 반대운동 단체에게도 조성할 수 있지만, 행정의 직접 집행하게 되면 이러한 단체에게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업무로는 구민 주체의 마치즈쿠리 활동에 대한 지원, 마치즈쿠리 정보의 수집과 발신, 마치즈쿠리 학습기회의 제공, 참여·협동형 마치즈쿠리 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공생형 주거공간만들기, 마치즈쿠리 전문가 파견, 마치즈쿠리의 조사·연구 등이 있다. 108)

(3) 마을만들기협의회

□ 신주쿠1초메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

1982년 밀집시가지였던 신주쿠1초메지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지역 주민 수십명이 모여 임의단체인 마을만들기 단체를 설립하고, 마을만들기추진지구 지정에 관한 요망서를 구에 제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다. 1988년에 세타가야구로부터 협의회로 인정받아, 공공시설정비에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타가야구와 협동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 초기부터 세타가야구로부터 활동자금조성 및 전문가파견을 받아 지구계획의 책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향을 정리하여 세타가야구에 많은 요망을 제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와 연계를 도모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09)

□ 타이시도 2·3초메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

1982년의 협의회 발족 이후 지구정비를 위한 카라스야마가와 녹도, 사쿠라

108) 양진영,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

109) 국토연구원, 도시계획의 신조류, 일본 해외연구보고서, 2008.05, 82~83

가오카 구민센터, 독립청소 공장 굴뚝, 공원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1회의 정례회의와 각종 설명회 및 견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홍보지 ‘협의회 뉴스’를 발행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이외의 사람들도 읍저버로 참석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약 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타이시도 23초메지구의 방재성능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에 관한 관계 주민과의 협의,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마을만들기 계획안의 정리와 지역주민의 동의 추진, 구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사례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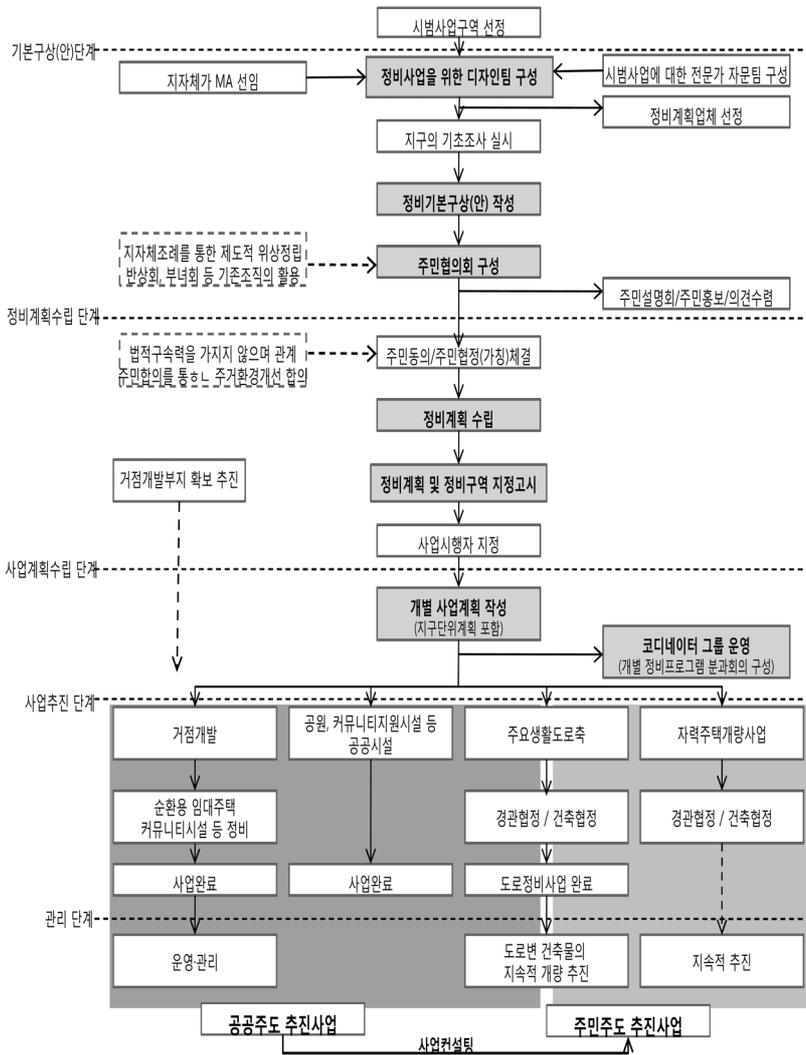
1) 사업개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재정착율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실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비대상구역에 공공이 거점구역을 수용하여 이곳을 기반시설 중심으로 먼저 개발한 후 거점구역 이 외 지역을 주민이 자력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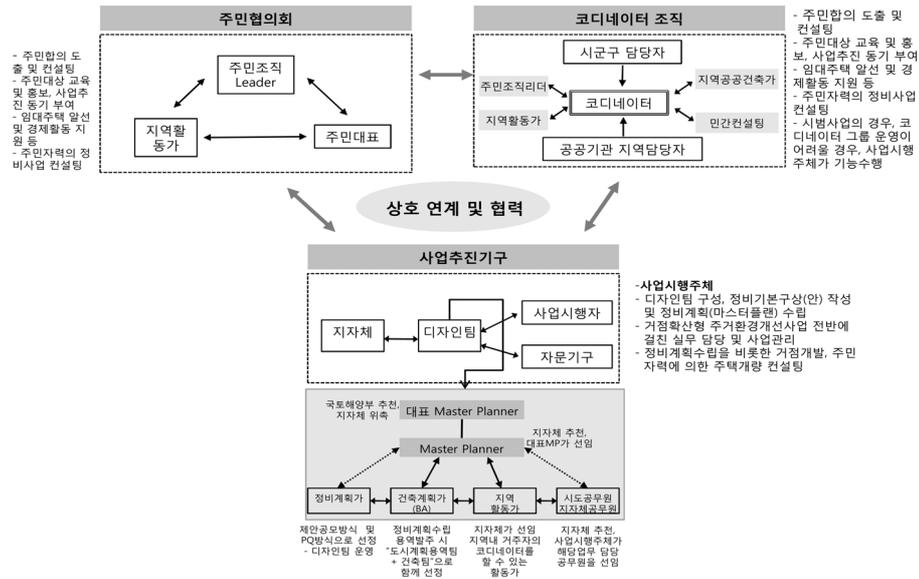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에서 먼저 정비 대상지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지를 개발하여 세입자와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한다. 거주지 내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가이드라인과 거점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의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권리조정이나 토지합병이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토지를 전면 수용하는데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부분별 순환정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거주민의 재정착이 쉬워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서 점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의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공에서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과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즉, 정부와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가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주민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담당한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협의회를 운영하고 개별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사후 관리와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예산실행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50%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전국 12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현재 시범 대상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주시 관사골은 행정담당 공무원과 디자인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사업의 추진경과가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거점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영주시에 도 자율적인 주민조직의 형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38>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체계



〈그림 39〉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주체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현재 거점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부 쪽 담당부처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내 주택정비과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도시 및 주거정비, 광역재정비,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제도 운영 등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과 전체 인원 12명 가운데 거점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는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총괄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업무지침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표 MP(Master planner)를 위촉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직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정부

□ 경상북도 주택부

경상북도청의 관할부서는 주택부로 이곳에서는 사업을 위한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1인의 담당 직원이 참여하여 도 차원의 정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또한 시범사업 구역에 대해 도차원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정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도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도전체의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총 1인으로, 본 사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서면 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 영주시 주택지적과

영주시 주택지적과는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이 팀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민협의회와 코디네이터 그룹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필요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 기타 사업 참여 실행주체들

□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 현지 개량팀의 담당 차장 1인과 대리 1인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 디자인팀

디자인팀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시의 공무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가팀, 그리고 지역활동가로 구성되며 국토해양부가 선임한 MP가 팀의 총괄을 담당한다.

◦ MP

현재 이 사업에는 대표 Master Planner로 국토해양부가 선임한 강인호 교수

(한남대)가 계획수립과 각주체간 협의를 총괄하고 대표MP가 선임한 황용운 교수(동양대), 서수정 박사(AURI)가 참여하여 계획수립과 주체간 의견 조율을 보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 건축도시 전문가조직 : 인도

건축도시엔지니어링 업체로 사업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 건축계획가와 정비계획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건축도시 전문가조직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는 1986년부터 도시빈곤지역에서 현장 활동을 주로 하던 ‘도시빈민연구소’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현 공간환경학회)’ 등으로부터 진보적인 학자들을 영입하여 1994년 새롭게 창립한 순수 민간연구기관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도시빈곤에 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는 외에도 지역 사회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운동을 지원하고 도시와 관련한 제 분야의 자료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 1인, 소장 1인, 이사진 10인,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 8인, 연구원 3인, 사무 1인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주시의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 경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연구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활동가 :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들의 모임

주로 폐휴지 수입 및 판매, 일자리 알선, 건축지원 및 집수리 자원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사회적기업형 단체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거주자와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한다.

□ 주민조직 : 주민협의회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통반장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조직과 지역활동가가 함께 공동으로 조직한 협의기구다. 주민협의회는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알선이나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민조직의 조직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일부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사례6 :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¹¹⁰⁾

안산시는 도심지내 지역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어 이를 살리는 것이 시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안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는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 각 부서 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의사소통을 위한 TF팀을 결성하였다. TF팀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담당계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TF 팀은 대중교통팀, 공단활성화팀, 관광진흥팀, 광덕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 사업은 관련 과에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경제정책과내에 경제진흥담당팀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안산시 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경제정책과 내 경제진흥담당이 직접 시민과 상인들을 만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였다. 광덕로 주변의 광장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안산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NGO 단체가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응모할 것을 건의하여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안산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당선되면서 추진협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에는 기존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협의회에 안산시 당국과 예산을 집행하는 시의회, 안산시의 NGO 단체들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팀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TF팀이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TF팀으로 전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는 ‘광덕로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와 NGO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높은 지지를 얻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지원

110) <http://mayor.iansan.net/>

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으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정책 개발, 지원사업, 마을만들기포럼,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매년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시범도시가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표 13〉 중앙정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정승현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백승관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박승민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개발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도시의 날(도시건축박람회) 운영 - 마을만들기포럼 운영 - 도시포털 구축 및 운영 - 도시경쟁력진단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도서관, 도시박물관 등 구축

(2) 지방정부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국토해양부의 사업 지원비가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10억원의 예산 공백이 생기자 경기도는 시책추진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사업에 지원하였다.

□ 안산시 창조경제국 경제 정책과

안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는 안산시청 창조경제국 경제 정책과다. 부서 내 경제진흥담당팀은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제정책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광덕로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편성과 운용, 그리고 관련 주체간의 의견 조율과 용역업체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4〉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	임완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자문 및 해당실과 의견협의건 검토 (김포,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 -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연구 - 경기환경도시포럼 운영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안산시청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도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진흥 업무 총괄 - 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광덕로 철로 변 테마 광장 조성 사업 추진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 등 추진 - 상가발전협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지원 및 협조 - 상가활성화 관련 시장 지시사항 등 시책추진
		이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덕로 철로변 테마 광장 조성 행정절차 이행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 경제진흥담당 예산편성 및 관리 - 상가 특성화를 위한 상권분석 조사 - 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및 분석 - 상가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 상가발전협의회 시장님 면담요구사항 등 추진

□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을 구성하는 인원은 5급 담당관 2명과 6급 담당관 10명, 총 12명으로, 이들은 주로 행정과 기획업무를 처리한다. 즉,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사항을 담당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광덕로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자 이 팀이 그대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TF팀’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며 따라 부서 간 업무 이행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은 대중교통팀, 공단활성화팀, 문화관광진흥팀, 광덕로 조성사업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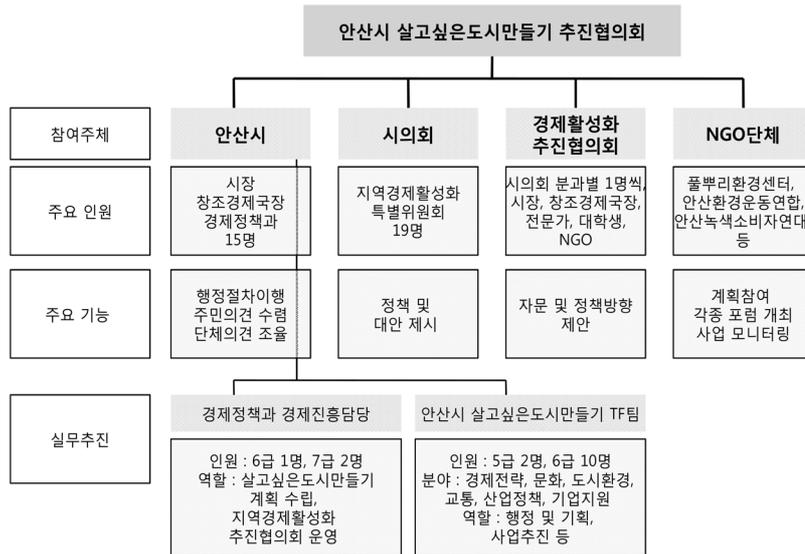
□ 안산시 시의회

안산시는 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기타 사업 참여 실행주체들

□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협의회

안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정한 ‘안산시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안산시 당국, 시의회, 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NGO 단체들이 더해지면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토론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림 41〉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체계

□ 안산시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안산시는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산시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는 ‘광덕로 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외에 정책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 도시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에는 시장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의 분과별 1인, 안산시내 대학교의 학생들, 시민단체인 안산 YMCA, 안산 YWCA, 안산 경실련, 안산의제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지원조직

전문 지원조직으로는 지역 대학과 건축·도시 전문 사무소 등을 들 수 있다. 안산시에 본교를 두고 있는 서울예대 디자인과, 사진학과 교수들은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의 건축·도시 전문 사무소에서는 마스터플랜을 담당하였다.

□ NGO 단체

사업과 관련한 NGO단체로는 풀뿌리 환경센터,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있다. 이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주민조직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민 의견의 반영은 주로 시민단체가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등과 같은 형태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할도 정책 제언 등의 선에서 머물고 있다.

7

사례7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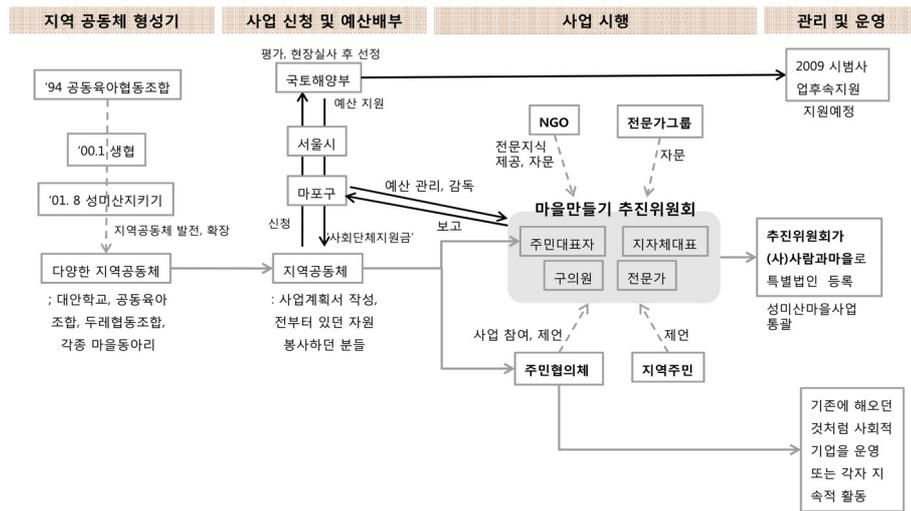
1) 사업개요

2007년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사업을 신청할 당시, 성미산마을은 이미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공동체의 시작은 1994년 마포구 성산동 일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의 생각과 방식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이 일대에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공동육아기를 함께 보낸 아이들이 성장하자 공동체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방과 후 학교와 대안학교 설립 등 어린이와 청소년교육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밖에도 성미산마을 공동체는 카페를 열어 동네수다방을 운영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인 ‘차병원’을 운영하는 등 자연스럽게 경제 및 생활공동체로 외연을 조금씩 넓혀나갔으며 사업영역을 동네부엌(유기농 반찬가게), 성미산 학교(대안학교), 마포에프엠(지역라디오방송), 장애인 자활센터 등과 같은 사업으로까지 확장해갔다. 이들 공동체는 2001년 성미산 개발이 결정되자 반대운동을 하면서 마포구내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시작되었다. 또한 같은 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공동구매와 제공을 위해서 공동육아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하여 100여 가구를 조합원으로 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현재 두레생활협은 3000명 가량의 회원을 가지는 협동조합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각 공동체에서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등 성미산마을 전반에 걸친 여러 사업들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주민조직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국토 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공모에 응모하게 된다.¹¹²⁾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 문화, 복지, 경제, 환경의 5개 분야로 나누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들은 마을의 기존 공동체가 담당·추진한다. 교육분야에는 마을도서관, 미디어실, 교육문화

112) 성미산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사)사람과마을/마포구, 「지역내 돌봄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마을 만들기 2007년 활동보고서」, 2007

프로그램, 방과후 공부방, 상담치유프로그램, 교사네트워크 등의 사업이 있으며 문화분야로는 공동육아, 주민생활건강결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사업이 있다. 경제분야로는 마을기업경영진단, 신규기업창업 지원사업, 마을금융지원, 지역화폐시스템, 마을노동개발 등의 사업과 문화분야에는 마을축제, 마을극장, 마을문화예술포럼, 생태전통놀이문화, 마을방송국 사업이 있다. 환경분야로는 지원추진체계구축, 환경디자인 학교, 생태활용, Car-Free Street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Car-Free Street 만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성미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성미산 마을 만들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한 후 성미산마을을 2007년 시범마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지방정부

□ 서울시 마포구¹¹³⁾

현재 마포구청은 도시계획과 내 공무원 1인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의 주요역할은 예산집행의 감독이었으며, 구의 담당공무원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관할구청과 주민들의 협의는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15〉 성미산마을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이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국제도시자문 구성 및 운영 - 도시계획정책 수립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업무추진 총괄 - 도시계획 정책수립 - 국토계획법 외 타법령에 관한 사항 - 주택재건축사업 등 주택기획 -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다른팀 미소관 업무(마포, 성동, 광진, 송파, 강동, 강북, 도봉) - 도시계획 정보 나눔터 운영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백성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무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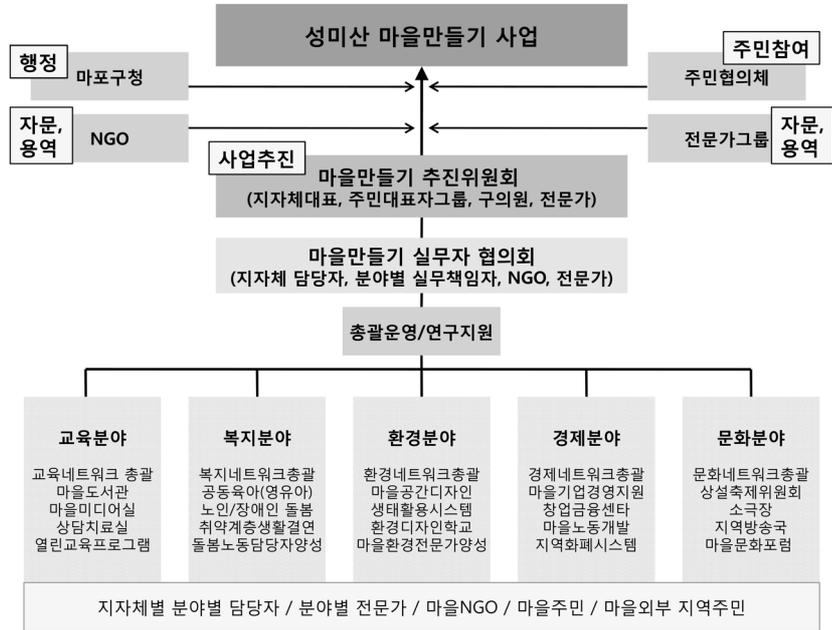
(3) 기타 세부 사업 참여주체들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주민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담당자, 구의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산하의 실무자위원회는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문화의 5개 분야를 담당하는 각 분과별 프로젝트 매니저 5인과 총괄 매니저 1인, 총 6인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프로젝트 매니저,

113)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이 국토해양부 → 서울시 → 마포구로 전개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절차가 부재한 ‘구’에서는 현재 ‘사회단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선 지급방식이 아닌 사후 정산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성미산 마을만들기 담당과의 인터뷰 中

간사, 전문가들을 배치하였다. 지자체대표나 구의원과 같은 지방정부 참여주체들의 역할은 예산관리나 감독, 제언에 그쳤으며 사업은 거의 주민주도로 이루어졌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성미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2007년 하반기에 ‘(사)사람과마을’이라는 법인체로 공식 출범하여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단체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 성미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 (사)사람과 마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7 시범마을 추진위원회로 출발하여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하반기에 사단법인의 형태로 등록한 민간단체이다.

현재 ‘(사)사람과 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교육분야, 복지분야, 환경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의 5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각 분과별로 반상근 및 비상근 상임이사와 (반)상근 실무자가 있다. 이사회는 마을 각 단위의 대표부로 ‘위임구성’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된다. 상임이사진은 연세가 높거나 각 분야별로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사람과 마을은 그동안 각개 약진해온 마을 내 다양한 활동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이들을 상호연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주민 조직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신규사업이나 활동이 필요한데 기존의 단체나 기관이 수행하기에 적당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 그 활동이 자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주)사람과 마을’ 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주로 정책적 지원, 가용자원의 연결, 재정적 안내 등이다.

□ NPO 단체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NPO단체로는 생태지평, 녹색사회연구소, 마포연대가 있다.

생태지평은 환경운동, 생태보전운동 관련 심층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연구소로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사업 대상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녹색사회연구소는 녹색연합의 부설연구소로 2004년부터 생태마을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자문역할과 생태도시관련 지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마포연대는 마포구를 대상으로 구정을 견제하고, 구정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 시민단체다. 마포연대는 자전거도로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건축·도시 전문가 지원조직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보존계획연구실은 시범사업 추진 이전부터 성미산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건축·도시의 관점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마포구에 자전거도로 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계획안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자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조성하는데 함께 참여하였다.

□ 주민조직

주요 주민조직으로는 마을 공동체의 단위조합들인 성미산학교, 꿈터, 마포교사모임, 마포두레생협 등이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이다. 이외에 주민들은 주민 간담회 참여나 설문 등의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8

사례8 :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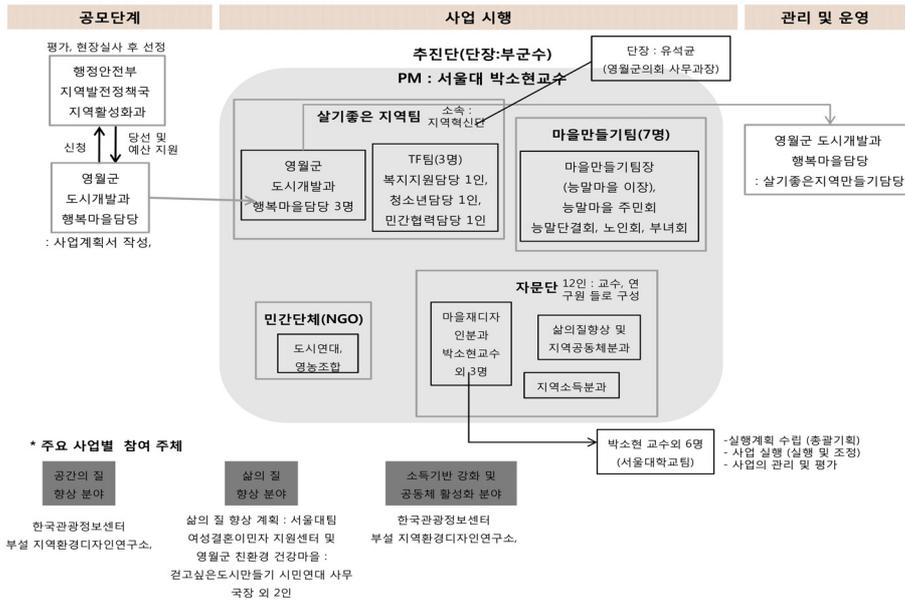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영월군 장릉마을은 2007년 초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 마을로 선정되어 2009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았다. 영월군 도시개발과 행복마을담당은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사업에 당선된 후 수립지침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행정-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살기좋은 지역팀’ 과 주민조직인 ‘마을만들기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 NGO로 이루어진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살기좋은 지역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영월군 도시개발과 행복마을담당 3명과 여러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패키지사업을 위한 TF팀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TF팀은 유명무실하다. 마을만들기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상지인 능말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주민회, 노인회, 부녀회의 주민들을 모아 구성하였으며 팀장은 능말마을 이장이 맡고 있다. 자문단은 마을재디자인분과, 삶의질향상 및 지역공동체분과, 지역소득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는 4명의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단체로는 도시연대와 영농조합의 NGO가 참여하였다.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한 주체는 살기좋은 지역팀의 행복마을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체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위해 PM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마을의 여성이민자 문제를 다루어 온 서울대학교 건축·도시보존계획연구실의 박소현 교수를 위촉하였다. 서울대팀은 마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내 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 마스터플랜은 수립 완료되었으며 마스터플랜에 따라 주요시설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마스터플랜은 총 4개분야로 나뉘어 수립되었는데 삶의 질 향상 분야는 서울대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에서, 공간의 질 향상분야와 소득기반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한국관광정보센터 부설 지역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수립하였다.



〈그림 44〉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만들기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담당 부서는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이다. 지역발전정책국은 지방자치체의 운영을 위해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물가안정관리,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방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기구이다. 이 가운데 지역활성화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활성화과는 직원 21명의 조직으로 이 가운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3명의 담당직원이 있으며 담당역할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표 16〉 중앙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서정욱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괄 - 공중화장실 업무
		유영민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박상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

(2) 지방정부

□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원도청의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시, 군정을 관리하고 공무원 인사와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가운데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지역의 각종 행사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청에서는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지원업무와 주민에 대한 지역홍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강원도 영월군청 도시개발과

영월군청 도시개발과는 건축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경관조성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직원은 22명으로 이 가운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3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영월군은 이들과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7〉 영월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지역담당	이운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총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김형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개발 추진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자문단 구성운영 - 전원이주활성화 시범도시 육성사업 추진 - 정책패키지사업 검토 및 지원사업 - 살기좋은 지역 및 전원이주활성화 특구 지정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영월군청 도시개발과		김주희	- 살기좋은 지역자원DB 구축 및 관리 - 살기좋은 지역 자원경연대회 추진 및 평가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 및 컨설팅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 홍보
		박정국	- 특구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 총괄
		이태호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 균형발전 업무 - 도혁신분권과 업무
		박봉기	-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 지역진흥재단 업무

(3) 기타 사업참여 주체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단

사업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영월군청의 살기좋은지역팀, 마을주민들이 모인 마을만들기팀, 그리고 전문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 사업추진협의회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관련 전문가 12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을재디자인분과, 삶의질향상 및 지역공동체분과, 지역소득분과의 3개의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 NPO형 단체

장릉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NPO형 단체로는 우리영농법인과 견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주)한국관광정보센터 등이 있다.

영월군 우리영농법인과 견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였다.

(주)한국관광정보센터는 관광안내 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다. 관광관련봉사와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국내외 대학들과 연계하여 객원전문가 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설로 설립된 지역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장릉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소득기반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건축·도시 전문가 지원조직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보존계획연구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보존계획연구실은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와 함께 삶의 질 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PM(박소현 교수)으로서 사업총괄의 책임을 맡고 있다.

□ 주민조직

사업추진단의 주민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팀에는 사업대상지인 능말마을 주민회, 능말단결회, 노인회, 부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능말마을 이장이 팀장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등산로정비반, 환경개선정비반 등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다른 주민들은 사업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가하여 사업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다.

9

사례9: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철원군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년에 20억씩 3년간 6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당시 철원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하나로 ‘철원군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대천이 지나는 14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철원군은 춘천에서 활동 중이던 (주)이장을 지역협력단으로 섭외하였으며 주민조직으로서 ‘남대천주민연구발전회’를 구성하였다. 이때부터 주민교육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추진 중에 주민들이 행안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응모할 것을 제안하여 2007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철원군에는 지역만들기사업 이전에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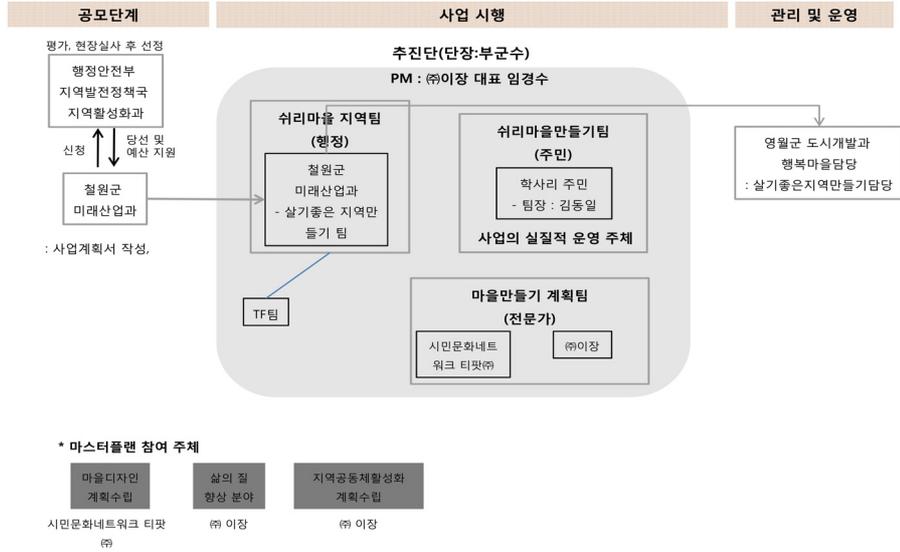
이처럼 철원군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5년부터 해왔던 신활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신활력 사업을 담당했던 행정담당자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조직은 ‘남대천주민마을발전회’ 주민들 가운데 쉬리마을의 거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문가로는 신활력 사업을 시와 함께 진행했던 (주)이장과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주)이 참여하고 있다.

철원군은 지역만들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 공무원, 전문가를 모아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사업을 그 특성에 따라 신활력사업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들은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¹¹⁴⁾

이렇게 협의를 거쳐 발굴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주)이장이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분야를, 티팟(주)이 공간의 질 분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현재는 엔지니어링업체에 의해 공간의 질 분야 계획 중 하나인 생태·농업체험학습

114) 철원군 미래산업과 지역특화담당 신중철 인터뷰 내용. 2009. 4. 14

장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설계 (2008.12)가 수립된 상태이다.



〈그림 45〉 철원군 쉬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내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에서는 영월군과 주민조직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확정하였다.

(2) 지방정부

□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원도청의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시, 군정을 관리하고 공무원 인사와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가운데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지역의 각종 행사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청에서는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지원업

무와 주민에 대한 지역홍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철원군청 미래산업단 미래산업과

철원군 미래산업과는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역전략사업육성, 지역경제업무, 그리고 지역유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과다. 현재 총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모두 2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사업별 소통의 문제나 예산 운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고,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이며 사업추진단의 ‘살기좋은 지역팀’을 구성하고 있다.

〈표 18〉 영월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지방정부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지역담당	이운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총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김형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개발 추진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자문단 구성운영 - 전원이주활성화 시범도시 육성사업 추진 - 정책패키지사업 검토 및 지원사업 - 살기좋은 지역 및 전원이주활성화 특구 지정
		김주희	- 살기좋은 지역자원DB 구축 및 관리 - 살기좋은 지역 자원경연대회 추진 및 평가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 및 컨설팅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 홍보
	철원군청 미래산업단 미래산업과 지역특화	신중철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 신활력사업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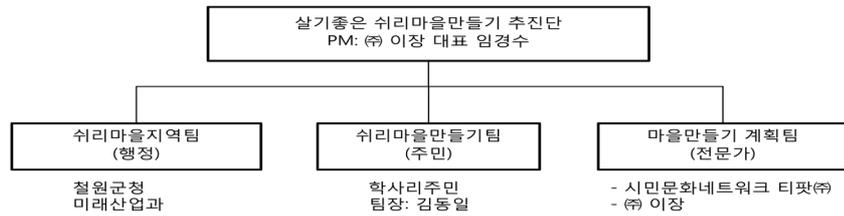
(3) 기타 사업참여 주체들

□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 추진단

추진단은 쉬리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팀, 마을만들기팀, 그리고 마을만들기 계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추진단의 단장은 철원군의 부군수가 맡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에 참여해 온 (주)이장의 대표가 PM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초기에 필요한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는 전문가 12인

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이 함께 워크숍 등을 하면서 마을에 가장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문단의 경우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상주하면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46〉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 추진단 구성

□ NPO 단체

◦ (주)이장

1999년 환경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폐기물 재활용시스템을 설계하고 유기농생산자정보 시스템을 공유하고자 만든 회사이다. 현재는 주로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단위 활성화계획, 생태마을 가꾸기, 생태농장 조성 사업과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연구 및 생태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미디어본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의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철원군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 티팻(주)

티팻은 2004년 시민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출범한 시민네트워크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문화환경 개선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고 사업을 계획,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핵심에 두고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구성한다. 티팻을 구성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건축가, 컨설팅 전문가, 교수, 문화평론가 등 다양하다. 주요업무로는 정부·지자체 관련사업(문화거리조성, 지역축제기획 등),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사업(저소득지역학교 장비지원사업 등), 시민사회주도사업(의료생협, 교육생협,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공간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마을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민조직

◦ 남대천주민발전연구회

2004년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모인 단체이다. 현재 이 단체에는 회장인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부회장과 마을주민 7명을 각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분과, 농촌관광소득분과, 지역특화분과, 주민교육홍보분과, 실행분과의 5개의 분과가 있다. 현재 주민조직에는 운영지원금이 보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용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쉬리마을만들기팀

철원군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남대천주민발전연구회 구성원 가운데 쉬리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다. 조직구성원은 마을만들기 팀장1명, 교육문화분과, 의료복지분과, 주택환경분과, 새터민분과의 4개분과에 각각 4명씩 배치되어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팀장의 경우 임명 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현재 쉬리마을만들기 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해서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10

사례10: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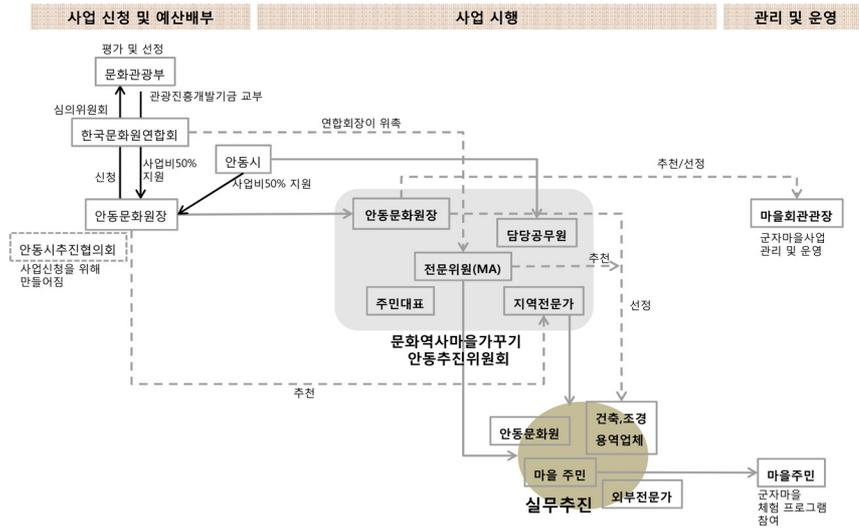
안동의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에 안동문화원이 응모하여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자마을은 예안면 오천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다. 그러나 당시 마을에 있던 10여동의 정자와 종택, 사당, 주사 등의 건물은 그대로 이전되어 오천리에 복원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오천리에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많은 건축물들과 고문서, 전적들이 남아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안동문화원은 군자마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연계하여 마을을 역사유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로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에 응모하게 된다.

안동의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역사·문화 공간만들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참여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상품개발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마을규약을 제정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주민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공모 당시 안동문화원은 안동시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제출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 관광진흥개발금의 형태로 교부되고, 문화원연합회에서 이것을 각 지방문화원에 배정하게 된다. 이때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만을 지원해주며 나머지 50%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MA(이충기 교수, 서울시립대)를 추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임명한다. 또한 안동문화원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안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기에는 안동문화원장, 담당공무원, 전문위원(MA, 건축관련 1인, 역사·문화관련 1인), 지역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업무는 안동문화원과 외부전문가들이 담당하였다. 외부전문가는 마을가꾸기 전문가, 건축 전문가, 마스터플랜 및 조경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마을가꾸기팀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팀은 (주)구가도시건축, 마스터플랜 및 조경팀은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팀이 담당하였다.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안동문화원 직원들과 MA, 외부전문가,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많은 협의를 거치며 실무추진을 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업이 종료된 현재 안동문화원장이 추천한 마을회관 관장이 마을회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추진에 참여했던 마을주민들이 군자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47〉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개요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지역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은 각종 예술진흥계획 및 수립을 담당하는 국이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과에서는 지역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역시 지역문화과에서 기획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데 현재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어진 상태다. 지역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예산을 지원하면 문화원연합회가 각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9〉 중앙정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 담당

사업명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업무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	노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 백제역사문화도시 - 실버 문화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 - 문화역사마을 - 지역문화행사 등 총괄
		장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실버 등 문화체험프로그램 - 향토문화 보존 등 - 문화역사마을 조성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 문화지도 구축을 위한 향토문화 발굴 - 국회업무

(2) 지방정부

□ 안동시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만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0%의 사업에 관한 예산은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업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3) 기타 사업참여 주체들

□ 한국문화원연합회

1962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상근 직원 9명, 비상근 직원 2명으로 소속직원이 모두 11명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조직은 회장·부회장·감사·고문·이사회·운영위원회·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사부(기획조사과·정보전산과), 총무부(서무과·회계과), 홍보부(홍보과·출판과), 사업부(국내사업과·국외사업과)가 있다. 주요활동은 지방문화

원의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문화사업 지도, 정부예산 확보 및 지원, 인터넷을 통한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이들의 주요 역할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위원회 운영이며,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에 대한 신청 및 지방문화원으로 재교부하는 역할, 사업공모 및 사업선정, 평가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사업 총괄 MP를 임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안동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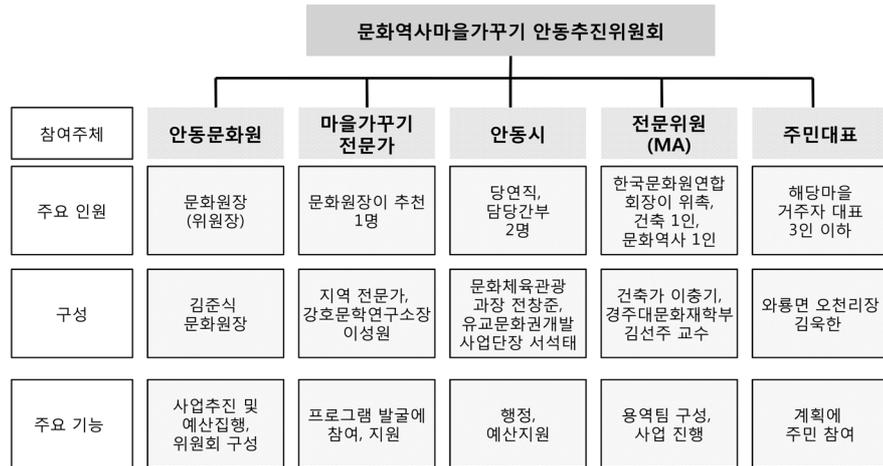
안동문화원은 1960년 사설문화원으로 설립되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66년 12월 3일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해 사단법인 안동문화원으로 인가받았고 1994년 8월 16일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4718호)」에 의거 특별법인¹¹⁵⁾ 안동문화원으로 재인가를 받았다. 조직은 이사회와 감사를 포함하는 23명의 임원진, 193명의 회원들과 국장, 과장 등 4명의 상근 직원이 있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원의 운영은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주요활동은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이 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과 정산의 책임이 있다.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안동문화원이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에는 안동문화원장과 문화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마을가꾸기 전문가 1인, 그리고 안동시 쪽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과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전문위원 자격으로 용역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가 1인, 대학교수 1인, 그리고 해당마을 거주자대표 3인으로 구성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115) 특별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여나 국가 중요 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그림 48〉 안동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구성

□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

◦ MA(건축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충기 교수, 서울시립대 건축학과)로, 계획내용과 사업을 총괄하고 각 주체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신중진 교수와 연구진 2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마을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했다. 이들은 안동문화원 직원과 마을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했다.

◦ 구가 도시건축연구소

한옥과 같은 전통건축의 계획과 설계를 주로 하는 설계사무소로 역사문화 지구와 같은 지구단위규모의 계획에서 역사문화지구조성계획이나 역사환경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마스터플랜과 조경공간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마을회관을 설계하였다.

11

사례1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1) 사업개요

진안군은 군정 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민주도형, 농촌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안군은 2001년 군수의 군정사업으로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인 유정규 박사를 채용하고 2003년 사업명칭을 ‘으뜸마을가꾸기’로 변경하였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으뜸마을가꾸기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같은 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마을주민 가운데 선출하지만 이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임을 기본방침으로 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구자인 박사가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듬해인 2005년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 담당 인원을 보강하였으며 2006년에는 마을 간사제도를 도입하고 마을간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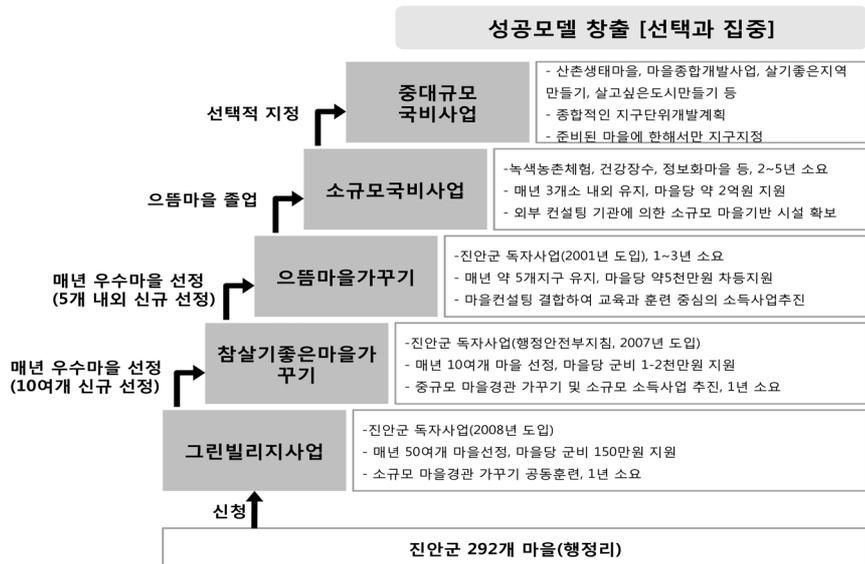
2007년 군청 내 마을만들기 전담팀과 행정TF팀(전략산업과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농업경제과 포함)을 구성하고 마을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주체/행정	관련실과소 (7개 담당부서)	사업명	개소
물리적 사업 위주	진안군 독자사업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	으뜸마을가꾸기	11(기존), 5(신규)
		환경보호과 환경담당	그린빌리지	52
	전라북도	농업경제과 친환경농업담당	청정농산물테마파크사업	1
	행안부/중앙정부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2007년 이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1
	문광부/중앙정부		일상장소문화공간화	1
	행정안전부지침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10
	산림청/중앙정부	산림자원과 임간소득담당	산촌생태마을	6
	농식품부(농촌공사)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마을종합개발사업	1
비물리 적사업 위주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2007년 이관)	맞체험농촌관광마을	1
	농식품부/중앙정부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2007년 이관)	녹색농촌체험마을	6
	행정안전부/중앙정부	행정지원과 통신전산담당	정보화마을	2
	농촌진흥청/중앙정부	농업기술센터 생활환경담당	건강장수마을	2
			농촌전통테마마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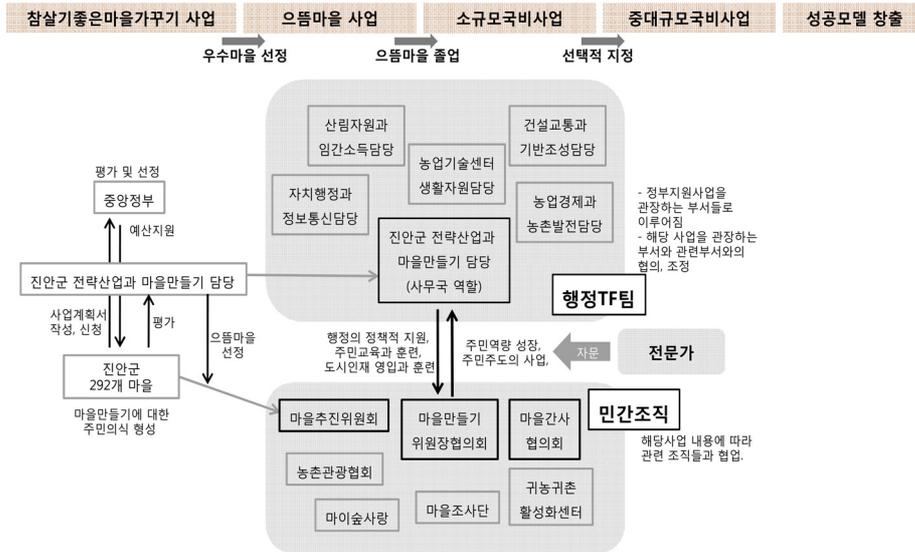
〈그림 49〉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부서 내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지원사업이 사업별로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별로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진안군에서는 통합담당부서를 두어 종합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안군은 큰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사업의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마을의 주민들은 첫 단계 사업으로 약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시킨 우수마을에 대해 1~2천만원을 지원하는 다음 단계인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와 같이 소규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단계의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다시 다음 단계 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군비지원은 마을 당 약 5천만원에 달한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컨설팅을 도입하여 교육과 훈련을 기초로 하는 소득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종합적인 중대규모 국비사업은 마지막 5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은 이와 진안군의 단계별 사업지원 시스템과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50〉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 사업내용



〈그림 51〉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

2) 참여주체

(1) 중앙정부

사업별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2) 지방정부

□ 진안군청

현재 진안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단계의 동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기획하고 있으며, 사업 가운데 소규모 국비사업 이전단계의 사업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부터는 진안군 전략산업과에 전담 인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과에 으뜸마을팀을 설치하고 여기에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원이 마을만들기를 담당하게 하여 마을만들기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마을개발사업의 기획과 추진,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 행정TF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 간 효율적인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조성된 팀이다. 행정TF팀은 관련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산림자원과, 임간소득담당,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농업경제과 농촌발전담당 등이 있다.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귀농귀촌활성화센터는 주로 귀농인 정착 및 지원을 돕는 단체이다. 3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며 24개의 세부사업을 벌이고 있다. 귀농마을 간사제도를 두고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귀농인을 위한 1대1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의 순조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농인 이웃 주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3) 기타 사업참여 주체들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안)

진안군은 2009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성이 없고 진안군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외부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획한 센터이다. 따라서 센터는 사업 컨설팅과 연구용역, 조직 및 관련 주체간 조정과 협력 등의 통합적인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석·박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업과 지역에 밀착된 전문 지원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서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축·도시 전문가 지원조직

- (주) 이장

사업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 NPO단체

- 심심공작소

진안군 마을만들기팀에서 사업대상 마을에 추천한 단체로 전주에 근거지를

문 사회적기업이다. 이들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하는 동시에 마을담장 벽화사업 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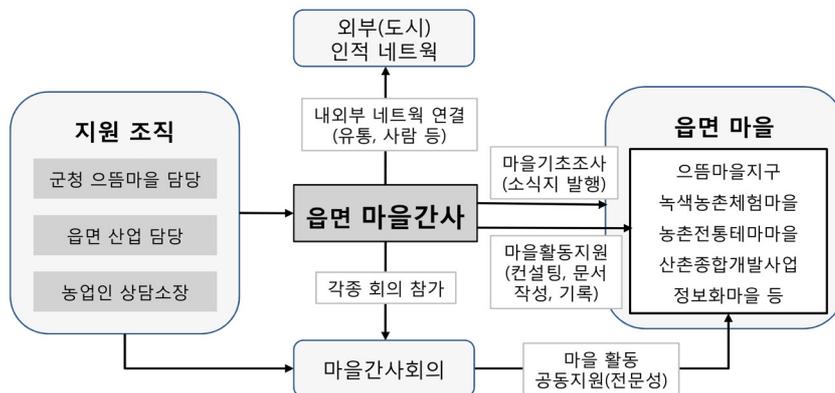
□ 주민조직

◦ 마을간사협의회

마을 간사제도는 2006년 진안군에서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한 곳에 귀농인 중심으로 마을간사를 배치하는 제도이다.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지역주민과 위원, 마을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 마을간사의 자격조건으로는 도시생활의 경험을 가진 귀향인이나 귀농인으로, 성, 연령,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마을대표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열심히 활동할수록 자신의 생계 자체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귀농인들이 농촌에 처음 정착할 때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찾고 일정 기간 수입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점에 착안하였다. 현재 이들은 1인당 월 120만원과 4대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마을 간사의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이들의 예산은 민간경사보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마을간사협의회는 각 마을의 간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협의회로 매주 자체 학습모임을 갖고 있으며, 군청의 으뜸마을팀과 정기적인 업무회의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견과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교환한다.



〈그림 52〉 진안군 마을간사협의회 조직도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단계별 사업 가운데 3단계인 ‘으뜸마을가꾸기의 추진위원장 협의회’를 확대편한 단체이다. 따라서 구성원은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마을간의 교류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한다.

◦ 마을조사단

2006년 (사)생명의 숲이 진안군과 (주)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아 진안군 백운면에서 추진해 온 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 진안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가 되는 해당 마을의 문화, 자연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며, 홍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주로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부터 정부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동참하여 마을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전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2009년부터 진안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농촌관광협회

진안군이 농촌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농촌관광대학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이숲사랑

2005년부터 진안군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모임이다.

IV.

지역기반 건축 · 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및 시사점

1. 지역기반 건축 · 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2.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a u r i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및 시사점

1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별 역할모형

1) 참여주체 유형화 및 역할모형 분석의 목적 및 방법

지역 기반 건축·도시사업은 구체적으로는 기초지자체 행정권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관장 부서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지역단체, 주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앞의 각국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라별·사업성격별로 참여주체의 범위 및 각 주체의 역할도 다르다.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활동 상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지원시스템 구축정책에 참고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서 참여주체들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참여주체들이 정부조직·민간조직·정부-민간 협력조직 중 어디에 속하는가, 활동 범위가 전국 차원인가 일부 지역범위 인가, 활동내용이 실제 사업수행인가 일부 지원기능에 국한되는가 등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강화하고 육성해야 할 주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영국, 일본, 한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의 사업별 참여주체 유형 및 각 주체의 역할을 모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활동하는 참여주체의 성격 및 역할을 구조적으로 파악·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도시사업의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

려는 것이다.

(1) 방법

□ 참여주체 유형화

참여주체들의 유형은 다음 3개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 참여주체 소속 부문 : 정부 부문/ 정부-민간 협력부문/ 민간 부문
 - 정부 부문 : 정부 조직에 속하는 각 부서, 정부 부서 편제에는 속하지 않으나 정부기구인 조직(non departmental public body), 정부 출자로 설립한 공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정부, 기초지자체정부 모두를 포함한다.
 - 정부-민간 협력부문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인력구성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혼합되어 있거나 활동내용 면에서 정부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조직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조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 민간 부문 :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협회, 자원봉사단체·전문가협회·학회·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민간단체(NPO), 대학·박물관 등 지역기관, 주민조직 등을 포함한다.

- 참여주체 활동 지역범위 :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중앙 조직 :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조직
 - 광역 조직 : 광역지자체의 행정권역, 혹은 복수의 기초지자체 행정권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조직
 - 기초지자체 조직 : 기초지자체의 행정권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조직

- 참여주체 활동내용의 성격 : 정부조직/ 사업조직/ 지원조직/ 지역·주민 조직
 - 정부조직 : 정부 부처, 혹은 정부기구로서 정부의 정책수행을 기능으로 하는 조직
 - 사업조직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체 역할을 주기능으로 하는 조직

- 지원조직 :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의 사업주체 역할을 담당하지 않지만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기능으로 하는 조직
- 지역·주민조직 : 건축·도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닌, 고유 기능을 수행하며 일상적 지역생활을 수행하는 지역 조직들(대학교, 병원, 상공회의소 등)과 주민조직

□ 참여주체 역할모형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들을 유형별 참여주체들의 구성 및 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사례별 참여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구조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모형화하였다. 모형의 밑판은 <정부-민간부문>축과 <중앙-광역-기초>축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각 주체별로 사업에의 참여형태(사업주도/ 사업참여/ 지원)가 구분되도록 표현하였다.

2) 부문별 참여주체의 유형

(1) 정부부문

□ 정부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업무별 담당부서형	중앙정부의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정책(지역 재생지원 정책)은 각 부처가 부처별 관장분야의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지역의 물리적개발 관련 지원정책은 국토해양부가, 산업발전 관련 지원정책은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형식이다.
	지역지원업무 통합담당 부서형	부처별 지원이 별개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각 부처의 지원을 받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채 각 부처의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각 부처별 지역 지원예산을 통합한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부서가 각 부처의 지역 지원 예산을 통합 관장하게 된다.
광역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중앙정부의 지역재생지원정책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초지자체별 권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재생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또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지자체들을 지원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려 하는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광역별로 지원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듯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재생 지원정책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정책으로서 입안·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광역 차원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지역지원업무를 부서별로 담당하는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광역 정부의 특정부서가 전담하거나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초	업무별 담당 부서형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정책이 부서별로 집행될 경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업무 역시 이에 대응하여 관련부서별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의 건설과가,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산업과가 담당하는 형식이다.
	지역 건축·도시사업 통합담당 부서형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사업을 그 사업내용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각 관련부서별로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창구를 특정 부서로 통일하고 각 부서별 사업추진업무를 취합·관리하는 유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집행될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를 통합적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사업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공공기관형 -정부기구 -공기업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설치한 정부기구나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정부기구는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영국의 Englishpartnership과 Housing Corporation이 통합하여 설립된 HCA(Homes & Community Agency)가 대표적이며, 공기업으로서는 한국의 대한주택공사나 일본의 도시재생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역	중앙정부지원형 -공기업	광역 차원에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중앙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영국의 각 지역에 설립되어 주요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URC(Urban Regeneration Company)들이 유일한 사례이다.
	광역정부지원형 -공기업	광역 차원에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대부분 광역지자체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우리나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기초	기초지자체지원형 -공기업형	기초지자체가 자신의 행정권역 안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정비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용인, 남양주 등 몇몇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와 유사하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기능을 갖는 지방공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골목 정비, 소공원 조성 등 지역의 세세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공기업들이 주목할만한 사례로서 이 유형에 속한다.

□ 지원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공공기관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일반직능형	중앙정부의 정부기구로서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부서조직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건축·도시 설계에 관련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영국 CABE가 대표적 사례이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건축·도시 설계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하는 건축·도시 전문직능형과 기타 다른 분야(직업훈련, 교육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하는 일반직능형으로 구분하였다.
광역	정부기구형 -일반직능형	광역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들의 건축·도시사업 지원활동을 하는 정부기구이다. 사례가 흔치 않지만 영국의 경우 광역재생사업에 연동하여 직업훈련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구가 있다.

(2) 정부-민간 협력부문

□ 사업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광역	광역정부지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광역 차원에서 지역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조직이다. 광역 정부기구 및 기초지자체정부를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연대하여 조직된다. 영국의 Single Programme를 수행하는 SRP(Sub-Region Partnership)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초	지방정부지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조직이다. 기초지자체정부와 지역의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연대하여 조직된다. 영국의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를 수행하는 LSP(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대표적 사례이다.

□ 지원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공공기관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일반직능형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기능 수행하는 민관협력조직이다.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광역	광역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지역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주체들의 협의기구이다. 광역지자체 정부 주도로 산하 기초지자체정부들과 주요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초	기초정부지원형 -지방정부 외곽기구형 -협의기구형	기초지자체 정부가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하는 기구이다. 기초지자체정부의 지역사업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이 자유로운 독립법인 형태의 외곽기구로서 설립하는 <외곽기구형>이 가장 적극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마을만들기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형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사례를 <협의기구형>으로 구분하였다.

(3) 민간 부문

□ 사업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NPO형 -사회적기업형	공적인 건축·도시사업을 주된 업역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초지자체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한 지역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찾아 활동한다.
기초	NPO형 -사회적기업형	기초지자체의 행정권역을 대상으로 공적인 건축·도시사업을 주된 업역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대부분 기초지자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지원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중앙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일반직능형	민간단체인 건축·도시설계 전문가협회 등이 마을만들기 등 지역의 건축·도시사업에 대해 전문적 지원을 하는 유형이다.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등 중앙조직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건축·도시설계 전문조직이 아닌 사회운동단체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일반직능형으로 구분하였다.
광역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민간단체가 일정한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지역의 건축·도시사업에 대해 전문적 지원을 하는 유형이다. 네덜란드나 영국의 건축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건축사회가 현(縣) 단위로 지역공헌활동센터를 두고 활동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된다.
기초	NPO형 -일반직능형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건축·도시 전문 단체가 활동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YMCA 등 기초지자체 단위로 활동하는 일반 시민단체가 건축·도시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여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 지역·주민조직

활동 범위	유 형	내 용
	지역시설·단체	대학, 연구소, 상공회의소 등 지역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고 활동하는 시설이나 단체들이다. 지역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 아니므로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 특별한 역할이 없으나 사업에 따라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해야 할 필요가 많다.
기초	주민조직 -지방자치행정체제형 -지방정부조직형 -주민자율조직형	지역주민은 지역사업의 직접적 대상자로서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지역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주민조직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community council처럼 주민 자치조직이 지방자치행정체제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 이외에 여러 형태의 자율적 주민조직들이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자체 정부가 주민활동을 리드하는 마을간사제도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민조직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4) 종합

<표 20>은 이상에서 서술한 지역 기반 건축·도시사업의 참여주체들의 유형에 따라 3장 사례조사에서 조사된 참여주체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조직은 국가의 지역 지원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정부와 사업 실행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에 집중해 있는 가운데 영국의 RDA와 GO(Government Office)가 광역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 하다.

사업조직은 중앙, 광역, 기초 모든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부문 사업조직은 공기업이 민간부문은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민간협력부문에서는 역시 영국의 SRP와 LSP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성토록 하는 협력조직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지원조직 역시 중앙, 광역, 기초 모든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민간협력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많은 사례가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 지원조직은 중앙 및 광역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초지방정부 지원으로 조직되는 정부·민간협력부문의 사례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건축·도시분야 전문직능 지원조직은 대부분 중앙 및 광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건축·도시 설계를 전문직능으로 하는 조직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사업화해야 하는 지역 건축·도시 사업에서 설계 전문직능이 갖는 역할은 일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이나 사업조직에 건축·도시 전문직능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지원조직으로서의 건축·도시 전문직능조직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역할을 갖는 것이 적절한 형식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0> 지역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의 유형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사례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한국: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안부)/ 소도읍육성사업(행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부)
					지역지원업무통합담당부서형	-영국: Single Regeneration Budget (BERR)/ Neighbourhood Renewal Fund(CLG NRU) -일본: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총리 직속)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사례	
		중앙	광역	기초			
사업조직		●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영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Government Office	
					●	업무별담당부서형	-한국: 대부분 지방정부 -일본: Wm루오카(鶴岡)시(사업별 주관부서 담당)
						통합담당부서형	-한국: 전북진안군(마을만들기담당) -일본: 동경 세타가야구(분청 시민활동추진과/마치즈쿠리계-지소별 지역진흥과) -영국: Middlesbrough의 Regeneration국
	●			공공기관형	정부가구형	-영국: English Partnerships(=HCA)	
					공기업형	-일본: (독)도시재생기구 -한국: 대한주택공사	
		●			중앙정부지원형	공기업형	-영국: URCS
					광역지자체지원형	공기업형	-한국: 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			기초지자체지원형	공기업형	-일본: (재)고베시도시정비공사/(재)세타가야트러스트마치즈쿠리/(재)츠루오카시 개발공사 -영국: Middlesbrough Town Centre Co./ Tees Valley Development Co.	
					●		공공기관형
	●			일반직능형			
●						공공기관형	일반직능형
	정부민간협력부문	사업조직	●				광역지자체지원형
●					기초지자체지원형		
		●				공공기관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							일반직능형
		●					광역정부지원형
●							기초정부지원형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사례	
		중앙	광역	기초			
					협이기구형	-한국: 살고싶은도시만들기추진협의회/ 기초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 -일본: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지역재생협의회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한국: (주)이장	
				●	NPO형	사회적기업형 -일본: 주식회사 마을만들기 츠루오카/ 주식 회사 이이다 마치즈쿠리컴퍼니/ 중심시가지 지정비추진기구(TMO) -영국: Tees Valley Tomorrow Ltd.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 -(주)도시디자인웍스 일반직능형 -한국: (재)희망제작소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영국: 건축센터(전국 22개) -네덜란드: 건축센터(전국 47개) -일본: (재)치바현마치즈쿠리소프트센터/ (특) 이와테관광마치즈쿠리센터/ 건축사회 지역 공헌활동센터	
				●	NPO형	일반직능형 -한국: 안산시 YMCA	
	지역 · 주민 조직				지역시 설/단체	지역시설형	-대학교, 연구소, 농협
						지역단체형	-지역상공회의소, 사업자협회 등
					주민조 직	지방자치행정체 제형	-영국: community council
						지방정부조직형	-한국: 전북진안군 마을간사
	주민자율조직형	-영국: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영국: BME Network					

3) 사업사례별 참여주체들의 역할모형

(1) 영국 광역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참여주체 유형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참여주체들 중 Tees Valley Partnership 최고위원회 참여 및 세부사업 책임기관을 앞에서 설정한 참여주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RDA인 One NorthEast가 지원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하고, 5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를 주관하는 가운데 여러 주체들이 연대한 협력조직인 Tees Valley Partnership이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영국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지역지원업무통합담당부서형		BERR
			●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One NorthEast(RDA)/ Government Office for the North East
				●	통합담당부서형		5개 지방정부/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사업 조직		●		중앙정부지원형	공기업형	Tees Valley Urban Regeneration Company
				●	기초지자체지원형	공기업형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지원 조직	●			공공기관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CABE
		●		공공기관형	일반직능형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Cleveland Police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사업 조직			●	기초지자체지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Tees Valley Partnership/ Darlington Partnership 등 5개 LSPs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Tees Valley Tomorrow/ Tees Valley Jobs&Training Consortium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Northern Architecture
				●	NPO형	일반직능형	Hartlepool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Tees Health authority/ Enterprise Academy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설/단체	지역시설형	지역단체형	University of Teesside/ Stockton Riverside College Business Link Tees Valley/ The Teesside Chemical Initiative/ Tees Valley Committee of the NE Chamber of Commerce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 계획·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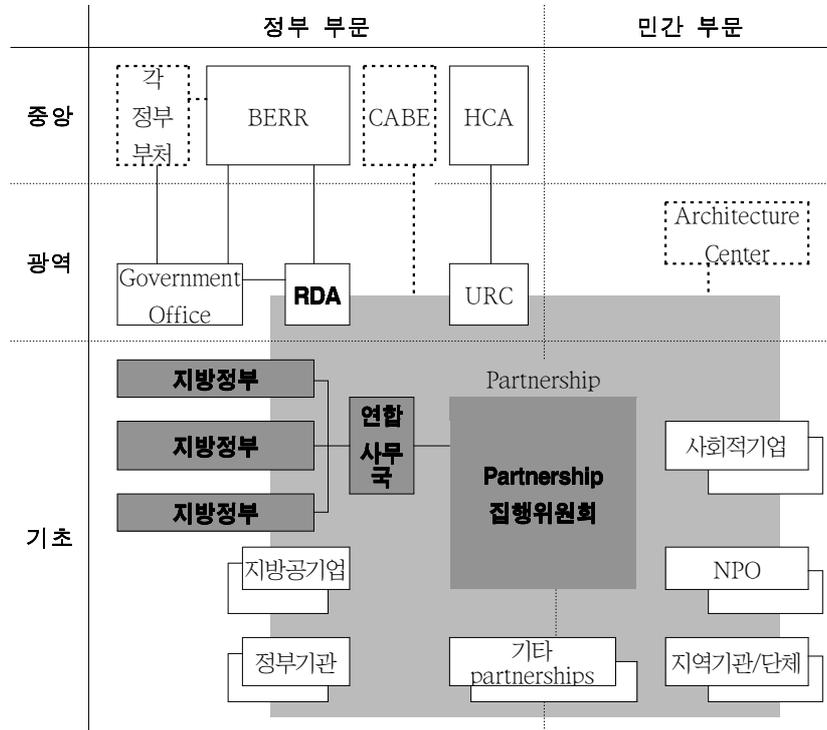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 지원 아래 단일프로그램(Single Programme)으로 추진되는 광역재생사업은 외형상으로는 지역개발청(RDA)이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아래 광역별 민관협력조직인 SRP(Sub-Region Partnership)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협의와 협력을 이끌면서 재생사업을 책임수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지방정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Tees Valley Single Programme의 경우 이 지역

을 구성하는 5개 기초지자체 지방정부의 연합사무국이 SRP의 전략 및 사업계획안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상근 사무조직이며 위원회 조직인 SRP는 연합사무국이 작성한 계획안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SRP에는 지역의 기관·단체·NPO 등 민간부문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한편 지방정부들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경찰서·소방서 등 정부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재생사업의 책임조직인 SRP 안에서 정부부문의 주도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광역 차원의 정부정책기관인 RDA와 Government Office 역시 SRP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정부 사업기구인 HCA와 URC가 실제 세부사업들 중 주요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민간부문 중 사회적 기업이 사업조직으로서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하는 CABE나 광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민간기구인 건축센터 등 건축·도시 전문기구들은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영국 광역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2) 영국 마을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Middlesbrough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의 참여주체유형

Middlesbrough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의 참여주체들을 앞에서 설정한 참여주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이와 함께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전담부서(NRU)가 지원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가운데 Middlesbrough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를 주관하는 가운데 여러 주체들이 연대한 협력조직인 Middlesbrough Partnership이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Middlesbrough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 참여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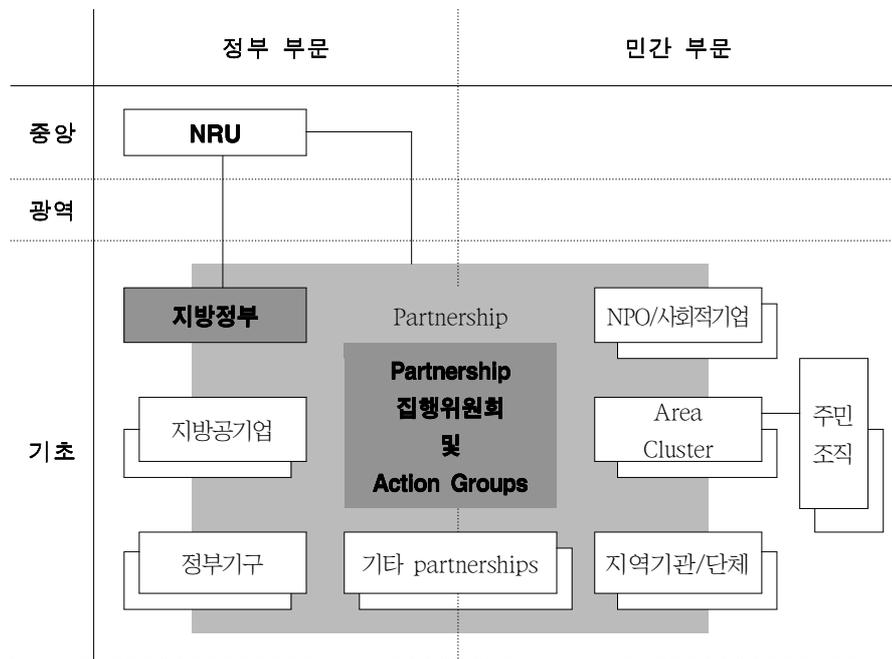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지역지원업무통합담당 부서형	Neighbourhood Renewal Unit/ Government Office for the North East
				●	통합담당부서형	Middlesbrough Council (Regeneration국)
	사업 조직			●	기초지 자체지 원형	공기업형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
	지원 조직		●		공공기 관형	일반직능형 Cleveland Fire Brigade/ Connexions/ JobCentre Plus/ Middlesbrough Polic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Tees Valley/ Middlesbrough Primary Care Trust/ National Probation Service, Teesside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사업 조직			●	기초지 자체지 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Middlesbrough Partnership /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dlesbroaic Partnership/ West Middlesbrough Neighbourhood Trust/ Middlesbrough Learning Partnership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 형	사회적기업형 Tees Valley Housing Group/ Erimus housing
	지원 조직			●	NPO 형	일반직능형 Middlesbrough Football Club/ BME Network/ Middlesbrough Council of Faiths/ Middlesbrough Cohesion Partnership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 설/단 체	지역시설형 University of Teesside/ Middlesbrough College
					주민조 직	지역단체형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	지방자치행정체제형	Middlesbrough Community Councils
				●	지방정부조직형	Area Cluster Groups
				●	주민자율조직형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 계획·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마을재생기금(NRF) 지원에 의한 마을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마을재생국(NRU)이 직접 기초지자체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광역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조직되는 민관협력조직인 LSP(Local Strategic Partnership)가 지역주체들의 참여 아래 재생사업을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실제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은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LSP는 이를 두고 관련주체들이 협의하고 최종 합의·결정하는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수행의 책임과 권한이 거버넌스 조직인 LSP에 있다는 것은 사업별 예산배분까지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LSP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각종 행정업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LSP에는 광역재생사업의 SRP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광역재생사업과는 달리 소프트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고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탓에 URC 등 전문적 사업기구의 참여가 보편적이지 않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광역재생사업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지역별 대표(Area cluster)가 LSP의 집행위원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54〉 영국 마을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3) 일본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참여주체 유형

츠루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참여주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츠루오카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업무를 주관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조직인 상공회의소와 츠루오카 TMO, 마을만들기 츠루오카를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는 구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표 23〉 츠루오카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츠루오카시 건설부 도시계획과, 츠루오카시 상공부 상공과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사업 조직			●	기초지자체지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츠루오카 TMO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마을만들기 츠루오카
	지원 조직			●	NPO형	일반기능형	쇼나이 시민활동지원센터, NPO 미쯔이클럽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설/단체	지역단체형	중심시가지 활성화협의회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형	산노상점가, 츠루오카 긴자상점가 진흥조합 등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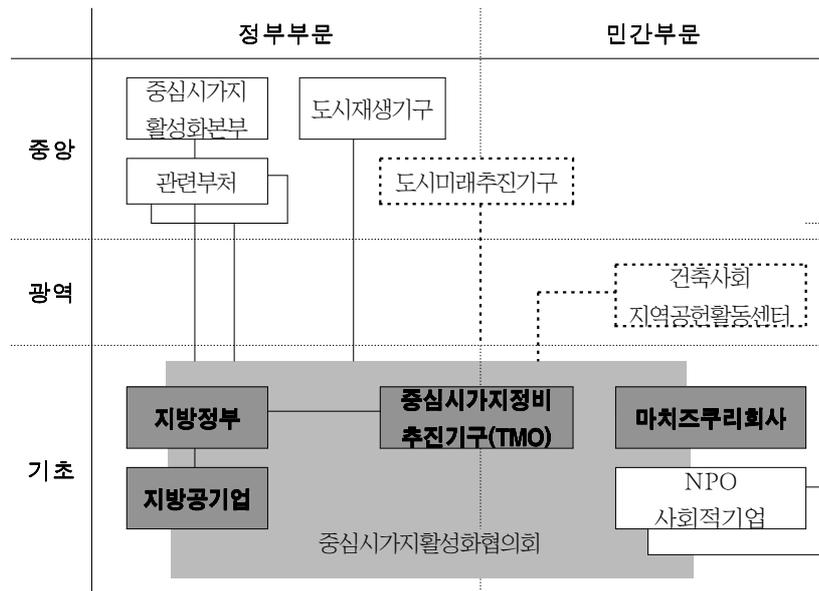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마치즈쿠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역시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마치즈쿠리교부금 지원사업과는 달리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기본계획을 중앙정부(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가 인정하고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원조치들을 각 중앙부서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중앙 차원의 정부 대행기관이 없이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치즈쿠리사업과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관협력형 전문기구인 마치즈쿠리센터를 통해 정부 정책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사회적기업 형태의 TMO(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기구)나 마치즈쿠리회사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사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개발·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중앙 차원의 사업조직인 도시재생기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도시미래추진기구 등의 중앙 지원조직도 기술적 지원(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일본건축사회 지역공헌활동센터 역시 마치즈쿠리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접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55〉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4) 일본 전국도시재생(마치즈쿠리)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세타가야구 지역 건축·도시사업 참여주체 유형

세타가야구는 1980년대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치즈쿠리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으로서 일본에서도 마치즈쿠리사업의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참여주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의 행정조직인 시민활동추진과, 지역정비과와 마치즈쿠리과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은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에 관련된 여러 주체를 지원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24〉 세타가야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통합담당부서형		총합지소 마치즈쿠리과, 시민활동추진과, 지역정비과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기초정부 외곽기구형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민간 부문	지원 조직			●	NPO형	일반직능형	세타가야 NPO법인 협의회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설/단체	지역시설형	나카마치 NPO 센터
				지역단체형		마을만들기협의회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 · 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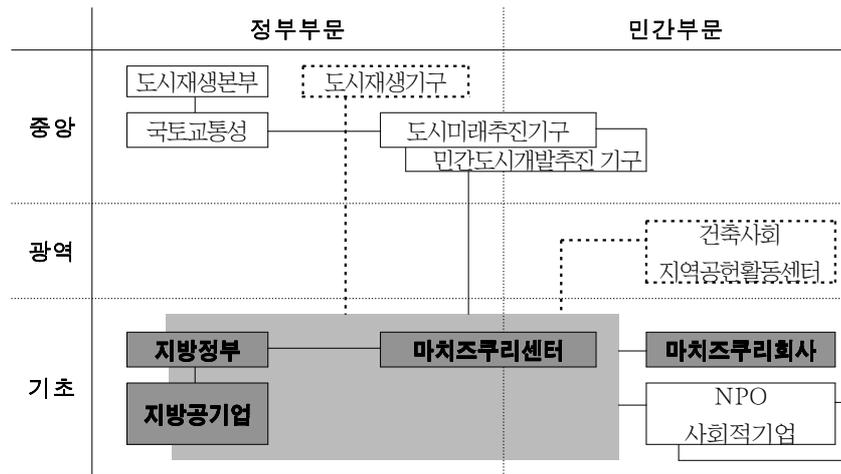
일본의 전국도시재생정책에 의한 마치즈쿠리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지자체에 사업예산 등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은 중앙정부 정책을 위임 수행하는 민관협력형 전문기구의 활동이다. 국토교통성이 관장하는 마치즈쿠리 교부금 지원 정책은 (재)도시미래추진기구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마치즈쿠리 펀드 구성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방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관협력형 전문기구인 마치즈쿠리센터를 설립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다. 세타가야구의 경우 이미 1980년에 지방정부가 공기업인 (재)도시정비공사를 설립하여 마치즈쿠리사업의 주요 사업주체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부에 마치즈쿠리센터를 설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마치즈쿠리사업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이를 (재)세타가야 트러스트협회(1999설립)와 통합한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가 마치즈쿠리사업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즉 마치즈쿠리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직접적인 정책집행과 사업추진은 중앙과 기초지자체 양쪽에서 정부조직이 아닌 민관협력기구를 앞세움으로써 여러 관련주체들과의 협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다. 민간부문에서도 마치즈쿠리회사를 비롯,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조직의 활동에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재생사업과 사업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축·도시전문기구가 지역사업에서 갖는 역할로는, 도시재생기구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등의 기술적 지원, 광역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건축사회가 지역공헌활동센터를 두고 마치즈쿠리 등 지역의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 정도가 주목된다.



〈그림 56〉 일본 마치즈쿠리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주체 유형

영주시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참여주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의 주택번비과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고 지방정부인 영주시가 실질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영주시에 운영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단’ 을 두어 행정-주민-전문가가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었으나 주민조직이 성숙하지 못하여 사업추진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지역의 전문가가 부재한 가운데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25〉 영주시 관사골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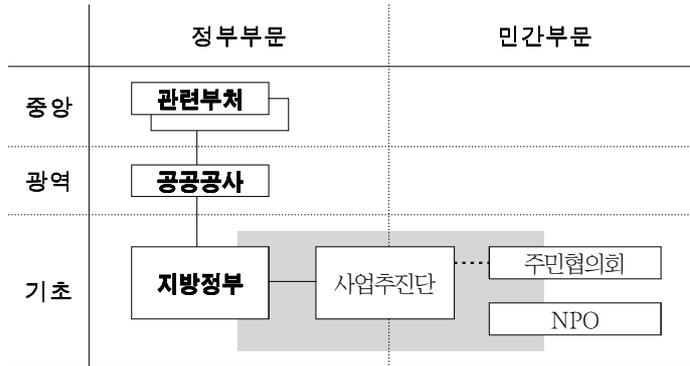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경상북도청 주택부
				●	업무별담당부서형		영주시 주택지적과
	사업 조직	●			공공기관형	공기업형	대한주택공사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사업 조직			●	기초지자체지원형	특정사업용 연대조직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단(지자체+디자인팀+시행 자)
민간 부문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주)인토, 한국도시연구소
				●	NPO형	일반직능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역 · 주민 조직			●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 형	주민협의회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 · 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일체를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기초지자체인 지방정부 역시 담당부서에서 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의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사업 추진의 대행보다는 전문가로서 디자인팀에 참여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과 주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주체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MP를 선임하는 구도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담당 일부 부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업을 운용하는 구도라 할 수 있다.



〈그림 57〉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안산시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참여주체 유형

안산시의 ‘광덕로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이와 함께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안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담당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표 26〉 안산시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양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업무별담당부서형		안산시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협의회
				●	NPO형	일반직능형	안산YMCA, 안산의제21
민간 부문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설/단체	지역시설형	서울에대 등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유형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으며,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주민이 주축이 된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는 기존의 주민단체가 모여 형성된 협의체로 사업진행 중에 사회적기업의 형태인 (주)사람과 마을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7〉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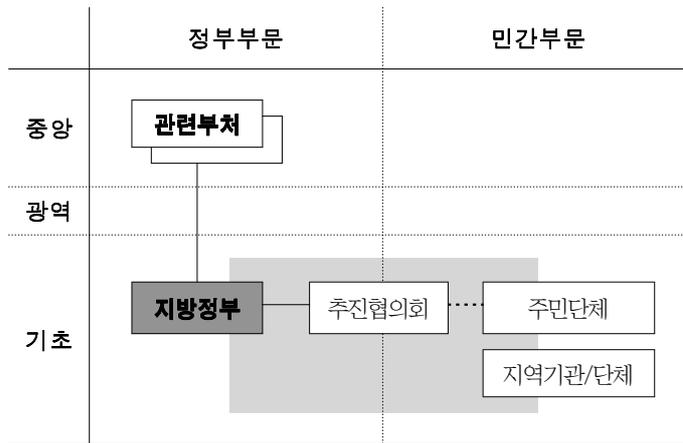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업무별담당부서형		마포구 도시계획과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주)사람과 마을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연구실
						일반직능형	녹색사회연구소, 생태지평
			●	NPO형	일반직능형	마포구연대	
지역 · 주민 조직			●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 형	주민협의체, 동아리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 ·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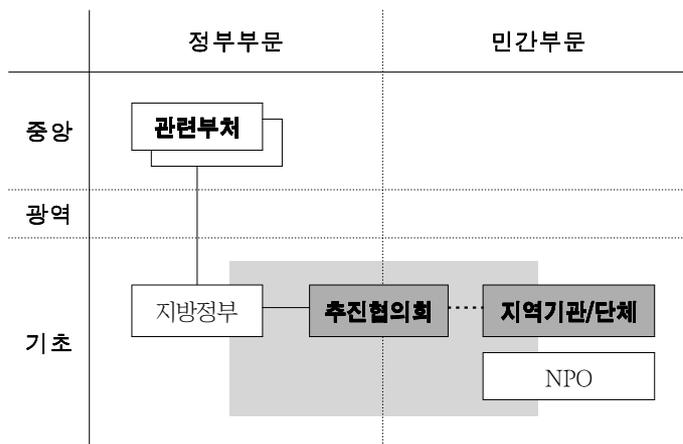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지원과 관련 행정업무 일체를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와 지방정부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시범도시와 시범마을의 궁극적인 차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방정부인지 주민협의체인지에 달려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정부를 거치며, 예산의 최종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별 중앙정부 부처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업을 운영하는 구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요건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을 위한 협의 조직인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시 가점 부여 형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안산시와 성미산마을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조정한 경우와 이미 형성된 주민조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경우로, 주체간 협업과 조정이 지역사업의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안산시)



〈그림 59〉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성미산마을)

(7) 한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강원도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만들기사업 참여주체 유형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영월군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월군의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의 MP와 더불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표 28〉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행정안전부 지역개발과
			●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업무별담당부서형		영월군청 도시개발과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사업추진단(살기좋은지역팀, 마을만들기팀, 자문단, NPO)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주)사람과 마을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보존계획연구실
				일반직능형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한국관광정보센터	
	지역 · 주민 조직			●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 형	마을만들기팀 (농말마을주민회, 농말단결회, 노인회, 부녀회, 실행위)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 강원도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사업 참여주체 유형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영월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원군에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철원군의 미래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의 MP와 더불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철원군의 경우 기존의 주민협의체인 ‘쉬리마을만들기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29〉 철원군 살기좋은 쉬리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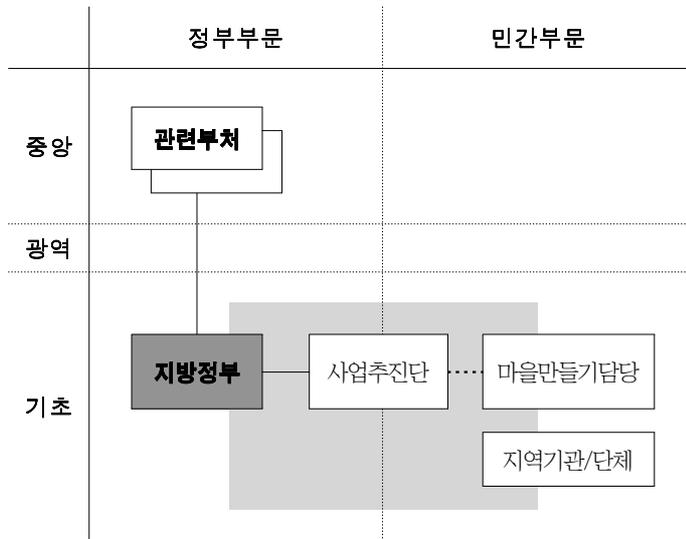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행정안전부 지역개발과
			●		지역지원업무 전담형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업무별담당부서형		철원군청 미래산업과 지역특화담당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살기좋은 쉬리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주)이장
	지역 · 주민 조직			●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 형	남대천주민발전연구회, 쉬리마을만들기팀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일체를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와 지방정부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 사업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업별 중앙정부 부처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업을 운용하는 구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요건으로 행정기관과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체, 즉 사업추진단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시 가점 부여 형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과 같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형식적인 마을만들기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계획팀, 그리고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지역팀으로 사업추진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6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여주체 역할모형

(8) 한국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참여주체 유형

안동시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시 군자마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동문화원이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 대상지의 선정과 예산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안동문화원과 더불어 군자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참여주체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업총괄 MP와 외부전문가인 성균관대 팀이다.

〈표 30〉 안동시 군자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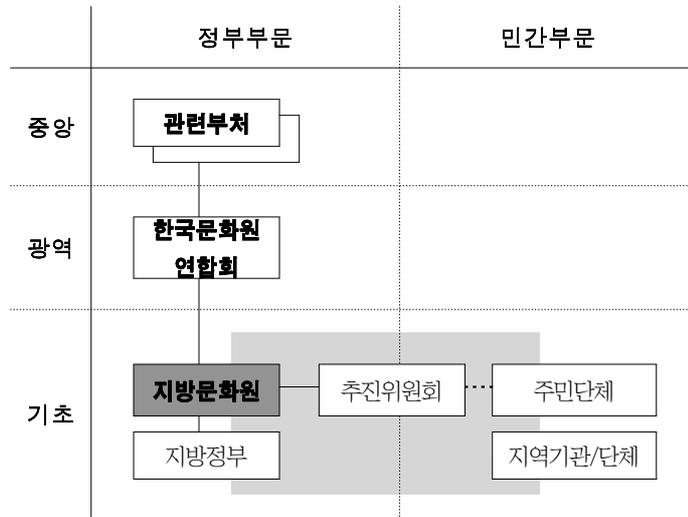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국 지역문화과
				●	업무별담당부서형		안동시청
	사업 조직	●			공공기관형	정부기구형	한국문화원연합회
				●	기초지자체지원형	공기업형	안동문화원
정부 민간 협력 부문	지원 조직			●	기초정부지원형	협의기구형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민간 부문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구가 도시건축연구소
				●	NPO형	일반직능형	안동예절학교
	지역 · 주민 조직			●	주민조직	주민자율조직형	부녀회, 영농회 등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은 다른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와 달리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지방문화원을 통해 지원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원 관련 행정업무 일체를 중앙정부의 담당부처가 수행한 것은 여타 사업과 공통되지만, 지방정부가 아닌 제3의 공공단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사업평가와 선정을 위탁한 것과 지방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 대신 지방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업을 운용하는 구도로 진행되었으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쳐 지역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한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역시 사업지원 요건으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하였으나 주민대표인 이장과 관련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림 61〉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참여주체 역할모형

(8)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주체 유형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관련 주체간 협력을 유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해 전략산업과를 중심으로 행정TF팀을 운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참여주체들

부문	유형	활동지역범위			세부유형		참여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부 부문	정부 조직			●	업무별담당부서형		자치 행정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농업경제과,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등	
					통합담당부서형		진안군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	
민간 부문	사업 조직	●			NPO형	사회적기업형	심심공작소	
				●	NPO형	사회적기업형		
	지원 조직	●			NPO형	건축도시 전문직능형	(주)이장	
	지역 · 주민 조직				●	지역시설/단체	지역시설형	농촌관광협의회
							지역단체형	마을조사단, 마이숲사랑
						주민조직	지방정부조직 형	마을간사협의회,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주민자율조직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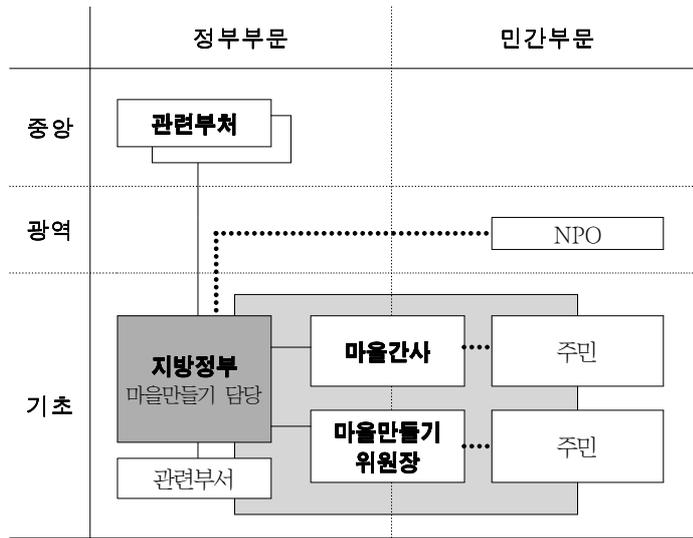
* 굵은 글자 표시는 전체사업계획·운영 주체

□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역지원사업 유형과는 달리 지방정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팀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만들기 팀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간 TF팀을 운영하고 마을간사제도와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지역이나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업별로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나 진안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일원적인 추진이 아닌 다각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마치즈쿠리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2〉 마을가꾸기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모형

2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지역역량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지역 건축·도시 사업추진의 관건으로서의 지역 역량

각국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특정목적사업을 지정한 프로젝트별 지원정책(예: 지역 문화시설 확충 지원, 학교시설 확충 지원 등) 중심에서 지역의 필요(needs)에 따른 자체적 기획을 중시하는 포괄적·자율적 프로그램 지원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체적인 건축·도시 사업역량이 이러한 지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시티챌린지(City Challenge)를 시작으로 지역의 자율적 기획 역량을 강조하는 지역재생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제는 지역이 주역’ 임을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각종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도읍육성사업(행정안전부; 200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2007-) 등 중앙정부가 지역의 자율적 건축·도시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영국 정부의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벤치마킹한 포괄보조금 형식의 지역지원정책을 도입할 계획이어서¹¹⁶⁾ 지역 역량이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지역 역량의 핵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각국의 지역기반 사업의 추진사례는 지역 역량의 핵심이 기초지자체 지방정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 지원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이지만 이 정책에 따른 건축·도시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곳은 지역이며 그 집행 주체는 기초지자체의 지방정부이다.

□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건축·도시사업을 포함한 지역기반 정책사업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

116)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12.17),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웹페이지 자료실

및 추진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역조직·민간전문가·민간업체 등 지역기반 관련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각국 정부는 이를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는 거버넌스형 사업추진의 성패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 모두 지역사업의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주체들로 구성된 협의조직이 이들 계획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¹¹⁷⁾ 사업계획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마련인 이들 지역 주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며 이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협의조직이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의사결정 권한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지역조직 형성 및 운영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주민조직, 민관협력 지역조직 등 거버넌스를 가능케 하는 각종 지역조직의 결성과 운영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는 한계가 있다. 영국의 광역재생사업인 단일프로그램(Single Programme)의 수행주체인 SRP(Sub-Region Partnership)는 지역개발청(RDA)과 해당 기초지자체 지방정부들의 주도로 관련 지역기구·조직들을 연대하여 결성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행되는 마을재생사업의 수행주체인 LSP(Local Strategical Partnership) 역시 지방정부 주도로 결성된다. 일본의 경우는 민관협력기구인 마을만들기센터나 지방공기업인 도시정비공사를 지방정부가 직접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지역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들

지역의 건축·도시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차대한 만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직능과 조직이 필요하다. 각국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이들

117) 영국의 광역재생사업인 단일프로그램(Single Programme)의 경우 복수의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지역 주체들의 협의조직인 SRP(Sub-Region Partnership)이 갖고 있으나 실제 관련업무는 지방정부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합동사무국이 수행하고 있다.

전문직능과 조직을 확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지방정부 내부 조직과 비정부조직 형태의 지방정부 외곽기구로 구분된다.

(1) 지방정부 내부 조직

□ 부서별 전문직능 강화

지방정부가 건축·도시 관련 전문직능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조직 안에 건축·도시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제하는 것이 우선 상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성립하기 쉽지 않다. 건축·도시관련 사업이 도시계획·건축·산업·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있고 이들 분야별 업무는 부서별로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부서별로 건축·도시 전문직능을 확보하여 부서별로 관련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무부서가 관련업무를 취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부서별로 건축·도시 전문직능을 확보하는 방식에서는 민간전문가를 각 부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건축·도시 분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의 국장(Director)을 도시설계전문가로, 본청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 및 각 구(borough) 건축국의 국장(Commissioner) 및 부국장을 AIA(미국건축사), PE(Professional Engineer), RA(뉴욕주 등록건축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¹¹⁸⁾ 국장 등 부서 책임자급 이외에 하위 직급에서도 민간전문가들을 상당 수 임용하고 있으며, 문화국, 환경국 등 건축·도시 관련 전문직능이 필요한 각 부서별로 건축사, 도시설계자 등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고 있다. 뉴욕시 등 미국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건축사 및 도시설계 전문가 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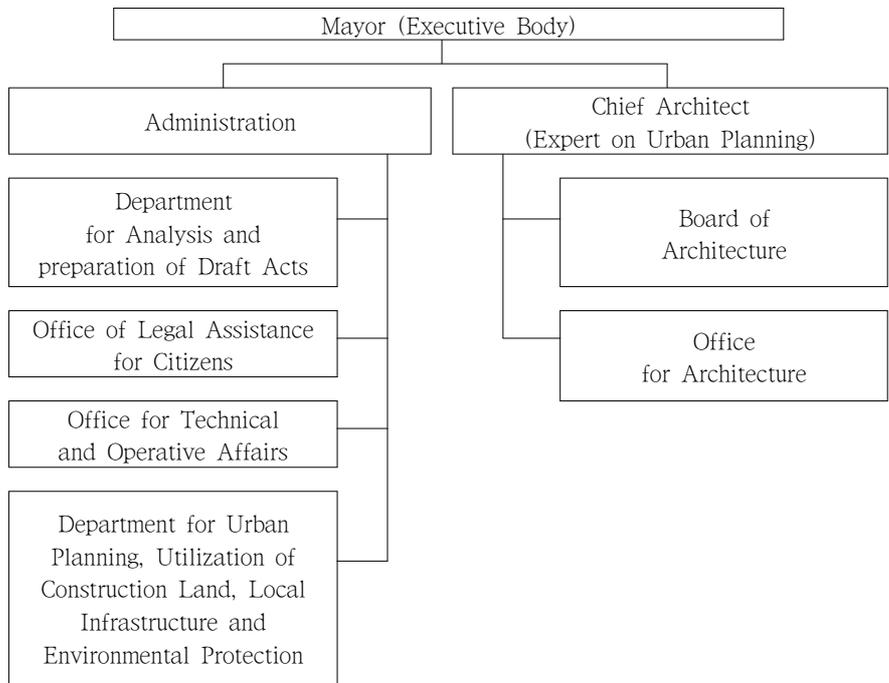
한편, 지역 건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지역정책·행정, 산업,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역시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 내에 전문직능으로 임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별정 전문직능 조직 도입

미국건축사협회(AIA) 안에 공공건축사(public architect) 위원회가 활동하

118) 박인석 외(2007), 공공 건축·도시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84-90쪽.

고 있을 정도로 정부 조직 안에 민간전문가들이 임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성격상 이러한 일이 예외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유형의 유력한 형태가 지방정부 안에 별정 조직으로 전문직능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 주임건축가(chief city architect) 조직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위계적인 일반 공무원 조직의 단점인 경직성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등 유사한 도입사례가 있으므로 도입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림 63〉 마케도니아 도시지방정부의 행정조직¹⁾

□ 마을만들기 전담팀 설치

지방정부의 상시적인 건축·도시관리업무와는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주민 및 지역조직들과의 협력형 건축·도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처럼 ‘마을만들기 담당’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한 사례이다. 일본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는 본청에 마을만들기담당과 비슷한 위계의 부서인 ‘마치즈쿠리추진계’를 두고 있으나 이와 함께 지역출장소들 마다 마치즈쿠리 담당팀을 설치하여 총 27개의 마치즈쿠리 담당팀을 운용하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 전담팀은 건축·도시사업을 전담한다기보다는 지역주체들과의 협력형사업 추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건축·도시 전문직능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비정부조직 형태의 지방정부 외곽기구

지방정부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내부 관련부서의 전문직능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협력 속에 건축·도시사업을 정부조직만으로 주도하며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과 비효율이 따른다. 지역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사업역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며 합의를 리드하는 주체, 때로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직접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는 주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정부조직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국의 지역 건축·도시사업에서 정부기구가 아닌 공익법인이나 기업 형태의 기구들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건축·도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 기구가 바로 이러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지방정부 외곽기구들이다. 이들 외곽기구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구에게 지방정부가 특정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새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업무수행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개입하고 있다.

□ 건축·도시 사업주체로서의 외곽기구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기업에 발주하여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시장원리에 따른 계약에 의하므로 정부의 사업계획이 완결된 형태로 발주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사업의 효과를 높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기업이나 공익법인 형태의 사업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일본의 (재)고베시도시정비공사, (재)세타가야트러스트마치즈쿠리, (재)츠루오카시 개발공사 등은 모두 기초지자체들이 설립한 기업 형태의 사업조직이며, 영국 Middlesbrough 지방정부가 설립한 Middlesbrough Town Centre Company도 이에 해당된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설립한 도시재생회사들(URCs), Tees Valley 지역 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설립한 Tees Valley Development Company 등은 복수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업조직의 사례이다.

한국에는 중앙 차원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를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한 경기도시공사, 용인지방공사 등이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직들로서 마을만들기 등 지역에 밀착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조직 사례는 거의 없다.

□ 건축·도시 지원조직으로서의 외곽기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조직의 기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가 지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부대업무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일본의 기초지자체별로 설치된 마을만들기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방정부 각 부서 및 지역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업 기획을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지역주민·관련단체·전문가들과의 협력, 마을만들기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등의 활동도 주요 업무로 수행하며 지역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들이 연대한 정부·민간협력 조직으로서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방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정부조직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주체들의 하나로 활동하되,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며 지역주체들 상호 협력의 구심점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실행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조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중앙정부/광역정부 차원에서의 기초지자체 지방정부 기능 지원조직

각국 사례에서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역사업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사업실행 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을 강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정책 활용 노우하우, 건축·도시 설계관련 업무, 지역주민 및 관련주체들과의 협의 및 합의형성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 정책 및 이를 조달하는 제도 자체가 새로이 성안된 것들이 많아 이에 익숙한 행정 전문능력이 기초지자체에 부족하다는 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거버넌스형 정책수행능력의 부족, 건축·도시 설계 등 전문기술 능력 면에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조달 지원조직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을 기초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지원조직이다. 영국의 지역개발청(RDA)이나 지역정부사무소(GO)는 공식적 정부기구를 통해 기초지자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재)도시미래추진기구,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는 중앙정부가 제3섹터 정부·민간협력조직을 통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 조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이다. 둘 모두 기초지자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서 예산지원 업무 이외에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문 행정·기술적 지원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 건축·도시 전문직능 지원조직

지역기반 사업에는 물리적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건축·도시 설계분야의 전문적 지원기능을 중앙·광역 차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조직이다. 영국의 국가기관인 CABE가 대표적이며 일본의 도시재생기구나 도시미래추진기구 역시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건축센터 등 민간 건축·도시설계 전문가들의 단체를 육성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역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기타 전문직능 지원조직

건축·도시 분야 이외에도 전문적 지원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광역 단위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영국의 Learning & Skill Council, 일본의 지역고용전략팀은 고용 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조직이며, 역시 광역 단위로 활동하는 일본의 지역재생전도사는 정부의 지역재생정책을 기초지자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전문적인 노우하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 자생적 지역조직들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각종 지역조직들 중에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자신들의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조직들이 적지 않다. 공익적 활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건축사협회, 건축센터, Living Street 등 건축·도시 전문가 단체들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자산이다. 각국 지방정부가 이들과 연대한 협의회 등 협력기구를 결성하고, 중앙정부가 이들 조직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에 힘쓰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역량에 큰 몫을 하는 이들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정책 조달 특성과 이에 따른 필요 지원기능의 차이

(1) 지역지원정책의 유형 및 조달 특성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지역지원정책은 정책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업에 따라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지원방식, 지원대상 등 정책 조달방식에서 뚜렷하게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프로젝트 단위 지원정책

한국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특정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단위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영국의 1980년대 런던 도크랜드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일본의 동경 미드타운 등 도시긴급정비지역에 대한 재생사업 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사례이다.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개발사업주체에게 집중된다.

□ 광역 단위 지역지원정책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광역 단위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초 지자체의 관장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 복수의 프로젝트들이 복합된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 광역지자체, 혹은 몇 개의 기초지자체들의 연합체가 사업기획의 주체가 되며 지원대상이 된다.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광역재생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며¹¹⁹⁾ 해당 광역지자체가 사업기획 및 지원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다.

□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지원정책

중앙정부가 각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지원정책이다. 영국의 마을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에 의한 마을재생정책, 일본의 전국도시재생 및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기초지자체별로 단일프로젝트, 혹은 복수프로젝트로 구성된 지역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지원을 획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진행해온 각종 지역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지역지원사업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기초생활권별(기초지자체별)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¹²⁰⁾

(2)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필요 지원조직

□ 프로젝트 단위 지원정책

개발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지만 공공적 목적으로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혹은 특정한 사업계획상의 조건을 포함해야 하는 사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통상 이러한 사업은 공기업을 통해 공공이 직접 개발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선별하고 지원조건으로서의 사업계획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민간부문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도시계획상 개발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이 중심이 된다.

영국의 기업유치특구(enterprise zone)처럼 특정 권역을 지정하고 권역 전체에 대해 사업조건 및 지원사항을 준비하는 방식도 있고, 일본의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정책에서와 같이 정부가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지역별로 지역정비방침을 수립한 후 개발업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심의·인정하여 소정의 지원을 하는 방식도 있다.

프로젝트 단위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부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지역정비방침의 수립,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영국의 CABE 같은 전문적능을 갖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의 (재)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처럼 정부결정에 따른 금융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조직 역시 유효하다.

119)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12.17),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웹사이트 자료실

120) 앞 자료

□ 광역 단위 지역지원정책

광역지자체, 혹은 복수 기초지자체 연합이 수립한 사업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평가·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업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협의·조정력을 발휘하는 한편 지역의 사업수행역량 강화노력을 유도·견인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영국의 광역재생정책에서는 광역 단위로 설치된 지역개발청(RDA)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겨냥하여 지방정부들 및 지역주체들의 협력조직인 SRP를 사업수행주체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사업예산 지원과 병행하여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 지원, 복수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 및 지역 관련주체들과의 거버넌스 능력 향상 지원 및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에 전문직능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CABE 류의 전문지원조직의 지원도 필요하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정부들 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협력조직 구성을 유도·견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프로그램 중 일부 주요 사업은 중앙의 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책임수행토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지원정책

기초지자체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경쟁원리에 따라 평가·선정하여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많으며, 경쟁원리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선정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유도·견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영국의 마을재생정책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관련주체들의 협력조직인 LSP를 지원대상이자 사업수행주체로 함으로써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견인해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정부 주도로 설립하는 정부·민간협력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거버넌스를 이끌고 있으며, 지원의 조건으로 TMO, 마치즈쿠리회사 등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예산 지원과 병행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 지원, 지역 관련주체들과의 거버넌스 능력 향상 지원 및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에 전문직능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차원에서 CABE 류의 전문 지원조직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기초지자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협력조직 구성을 유도·견인하는 정책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업의 추진을 직접 담당할 사회적기업 등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NPO들의 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종합 :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필요 지원조직

이상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필요 지원조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다.

〈표 32〉 지역지원정책 유형별 필요 지원조직

유형	사례	필요 지원조직
프로젝트 단위 지원정책	-일본, 민간도시개발 투자촉진정책	- 지역정비방침의 수립,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직능 지원조직 - 금융지원업무를 전담 지원조직
광역 단위 지역지원정책	-영국, SRB에 의한 광역재생정책	-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직능 지원조직 - 거버넌스 능력 지원 : 지역 관련주체들의 참여·협력조직 -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 : 중앙 공기업에 의한 일부 사업 수행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지원정책	-영국, NRF에 의한 마을재생정책 -일본, 전국도시재생정책,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 지역재생정책	- 기초지자체의 사업프로그램 기획 능력지원 :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차원의 전문직능 지원조직 - 거버넌스 능력 지원 : 지역 관련주체들의 참여·협력조직 -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 : 사회적기업 등 지역기반 NPO들

4) 지역의 자율성·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정책

(1) 지역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역역량을 자극하는 지원체제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각국의 지역사업 지원정책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원 대상이자 지원사업의 주체인 지역의 자율적 사업역량을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지원정책의 성패가 지역의 자율적 사업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각국의 지역지원 정

책은 이를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공식화하고 있다.

□ 지역의 자율적 사업프로그램 기획과 포괄적 예산지원

지역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적 역량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지역의 스스로의 필요(needs)에 의해 지역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필요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광역재생정책의 통합재생예산(SRB), 마을재생정책의 마을재생기금(NRF)가 사업의 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고 6-10년 긴장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것, 일본의 지역재생사업에서 중앙정부가 각종 지원 가능 제도들을 목록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모두 지역의 자율적 역량 발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중앙 각 부처의 지역지원사업들이 사업목적에 지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 가능항목을 미리 지정된 사업목적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쟁원리에 의한 지원

각국의 지역정책은 지방정부의 사업역량 강화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간의 경쟁원리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경쟁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질과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이를 위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거뒀던 것이다. 경쟁이 곤란한 사업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을 개별적으로 평가·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유도·견인하는 지원체제

각국의 지역지원정책은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아예 SRP, LSP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체들의 협력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조직이 예산배분 권한 등 사업에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필수적으로 이들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TMO 등 거버넌스형 주체의 참여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어 많은 지방정부들이 마을만들기센터 등 지역사업 관장을 위한 정부·민간협력조직을 구축하여 지역주체들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국내의 지역혁신협의회, 살고싶은도시만들기협의회 등의 거버넌스조직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보다 강력한 유도·견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활동조직 육성·지원 정책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유도·견인 정책과는 별도로 각국 중앙정부가 지역기반 활동조직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사업 지원예산과는 별도로 커뮤니티육성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에 의해 지역조직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 일본의 마치즈쿠리교부금이 지역사업에서 지역활동조직 육성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역기반 활동조직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을 각국 중앙정부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5) 건축·도시분야 전문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

지역 건축·도시 사업이 실행되는 곳은 기초지자체이므로 지역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요소는 사업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역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많은 지방정부들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업에서 필수적인 능력임에도 지방정부가 가장 취약한 분야의 하나인 건축·도시 설계분야에서 전문직능을 갖춘 지원조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각국 지역사업에서 이러한 전문 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지원조직이 지역사업에서 갖는 역할이 무엇인가, ② 이 지원조직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활동해야 하는가, 혹은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 ③ 이 지원조직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부조직이나 정부·민간협력조직이어야 하는가, 혹은 민간조직이어도 무방한가가 그것이다.

(1)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사업의 간접적·단속(斷續)적 지원

지역 기반 도시·마을 재생사업 중 민간투자가 가능한 개발 중심의 사업을

제외한 재생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주축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지역사업 프로그램은 물리적 환경 개발·정비보다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역량 확충을 목표로 한 산업창출, 직업훈련 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업에서 건축·도시 전문직능의 역할은 사업의 일부인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분야로 국한된다.

물론 기초지자체마다 고유의 건축·도시 관리업무가 상시적으로 수행되므로 지방정부 안에는 건축·도시 전문직능을 상시적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문직능은 지방정부의 부서 속에, 혹은 별정 전문직능 조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직능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기초지자체의 지역사업 자체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업에서 건축·도시 전문직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일부 부문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된다.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을 전국의 수많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보하는 것 자체도 곤란한 일일 뿐 아니라 업무량에서도 전문조직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한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업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조직은 오히려 지역사업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사업기획을 총괄하는 일은 물론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각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이나 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지역사업에서 지방정부·민간부문 협력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조직이 지역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은 지역사업에 대해 간접적이고 단속적인 지원활동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사업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때마다 전문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의 CABE나 건축센터들, 일본의 도시미래추진기구나 여러 건축·도시 전문단체들의 활동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조직이나 사업조직에 건축·도시 전문직능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지원 조직으로서의 건축·도시 전문조직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

(2)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의 활동 지역범위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의 역할은 곧바로 활동 지역범위 문제로 연결된다. 건축·도시 전문조직이 기초지자체의 지역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갖는다면 활동 지역범위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우수

한 건축·도시 전문인력의 확보를 고려한다면 광역, 혹은 중앙 차원에서 복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국의 사례에서 건축·도시분야 전문직능 지원조직은 대부분 중앙 및 광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의 성격에 따른 역할

□ 민간단체로서의 전문가 단체·협회

각국의 건축사협회나 영국, 네덜란드의 건축센터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단체나 협회에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들 조직은 건축가나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건축·도시설계 분야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활동방식도 상근인력보다는 소속 전문가들의 자율적·일시적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워크숍, 강연회 등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건축·도시 전문 정부조직, 혹은 정부·민간협력조직

지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상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조직인 영국의 CABE, 정부·민간협력조직인 일본의 (재)도시미래추진기구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초지자체들의 사업계획 수립, 관련주체들 간의 합의 형성 등 사업과정 전체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고유업무로 수행한다. 상근 전문인력 이외에 비상근 전문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상근 전문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지방정부 내부 건축·도시 전문직능 조직

한편 기초지자체 정부조직 내에 별정조직으로 편제된 건축·도시 전문직능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기능 역시 이 조직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조직의 고유업무는 지방정부의 상시적 건축·도시설계 관련업무이므로 지역사업에서 진행되는 건축·도시설계 관련업무 역시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담당하게 된다.

건축·도시 전문 지원조직의 형태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주임건축가조직(city chief Architect office) 등 건축·도시설계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여러 도시들이 이에 해당된다.

V.

지역기반 건축 · 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세부 정책방안

(a u r i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향

1 기본방향

1) 기초지방정부의 건축·도시 사업역량 강화

건축·도시사업은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장소적 특성에 적합한 특수해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설계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의 도시공간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역 건축·도시사업 추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역량의 최우선적 주체는 기초지자체를 관장하는 기초지방정부이다. 기초지방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인 건축·도시공간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이며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이 집행되는 최전선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구분한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 추진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병행하는 형태로 입안 중이다. 기초생활권은 기초지자체에 대응하므로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지원정책에 의한 지역발전 실행주체는 기초지방정부이며, 광역경제권 지원정책은 광역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되지만 이 역시 광역권에 소속된 기초지방정부들의 연합적 노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 기초지방정부 자체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

기초지방정부의 건축·도시사업 역량 강화는 기초지방정부 자체의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흔히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주

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초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외부에서의 모든 지원과 협력조차 사업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며 지역사업의 주체는 기초지방정부이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참여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며 전문가 지원 역시 기초지방정부가 지원 수요를 명확히 할 때에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초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스스로 지원 필요 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 방법은 지방정부 조직 속에 전담부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일 수도, 공기기업이나 마을만들기센터 등 외곽기구로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점은 지역 안에서 기초지방정부와 상시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역주체’의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조직의 육성 병행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이 지역역량의 최우선적 요소이자 기본요소라면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조직들의 역량은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촉매요소이다. 지역사업의 목적은 주민·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들 자신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지역사업을 꾸려가는 것이 지역사업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방정부가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보유한 지역조직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각국 지역지원정책에서 지역주민조직과 단체들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단순한 주민동호회일 수도 있고 지역상인조합일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연구회일 수도 있다. 지역 안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사업기획에 참여하거나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조직들을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유도 · 견인

지역지원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역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역 역량이 강화된다면 지역지원사업이 효과가 높아지고 지역발전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지원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위해서는 전략적 목표를 지역 역량 강화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지원정책을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역량 강화 노력을 유도·견인하는 방향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지원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지역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쟁형 지역지원사업

기초지방정부들의 지역사업기획안을 공모-평가-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에서 평가요건으로 지방정부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견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구노력은 지방정부 조직 강화 등 자체역량 강화노력에 집중하고,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등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안은 추후 단계로 미루는 등 현단계 지방정부 역량을 감안한 선별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형식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사업계획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목적이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지 말고 지역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원예산 사용범위의 제한을 최대한 넓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중앙/광역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역량 지원시책을 병행

기초지방정부들 간 지역사업 수행역량 차이가 심하고 역량이 취약한 기초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경쟁에 의한 자구노력 유도·견인과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사업 수행능력을 직접 지원하는 시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전체 과정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역사업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유력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단순 자문 형식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량이 미흡한 기초지자체일수록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진하는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들의 지역사업 지원을 고유업무로 하는 상설 전문조직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지역 건축·도시사업 지원센터 형식의 조직을 설치하여 지원 필요 사안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토록 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4) 지역기반 조직과 외부 조직의 역할 · 위상 구분

지역기반 사업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기초지자체이며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주체들이다.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한 것도 이들 모두가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앙·광역 차원에서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조직 등 외부 조직은 당해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사업에 간접적·단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이 사업조직이든 지원조직이든 외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사업 전체를 관장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은 곤란하며 일부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거나(주택공사의 지역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지원(사업기획 자문, 설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 지역기반 지원조직

지역(=기초지자체)에 생활근거를 갖고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지원조직이다. 기초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때로는 기초지방정부의 일정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지역사업 전 과정을 지방정부와 함께 하며 활동하는 조직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형태가 정부조직이건 정부·민간 협력조직이건 지방정부 주도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중앙·광역 차원의 외부 지원조직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복수의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해당 기초지자체 지역에 생활근거를 갖는 조직이 아니므로 간접적·단속적 지원 형태로 활동한다. 전문분야별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축·도시 분야 전문 지원조직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2

추진전략

1)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 <광역 지원>, <중앙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제 구축

□ 경쟁형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자체역량 강화를 견인

-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기초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초지자체가 선도사례로 출현하고 이를 다른 기초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확산효과를 유도

□ 광역 및 중앙 차원에서 기초지방정부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구축을 병행

- 기초지자체가 취약한 전문능력 지원을 통해 자구노력 효과를 배가하며,
- 중앙 지원조직의 선도적 지원활동 수행을 통해 광역별로 설치되는 지원조직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동시에 겨냥

2) 기초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우선 추진

□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사업 전담조직 구축 추진

- 경쟁형 지역지원사업 공모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조직 구축을 의무화, 혹은 가산점 부여 요건으로 명시하여 전담조직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견인
- 전담조직은 지방정부조직 내 전담부서 설치, 지방정부·민간협력조직 형태의 외곽기구 설립, 공기업 설립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토록 유도

□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및 민간자원조직 활동 육성 시책 병행

- 지역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NPO 등 민간자원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병행

- 조직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의한 활동자금 지원 및 관련조직 정보 제공 포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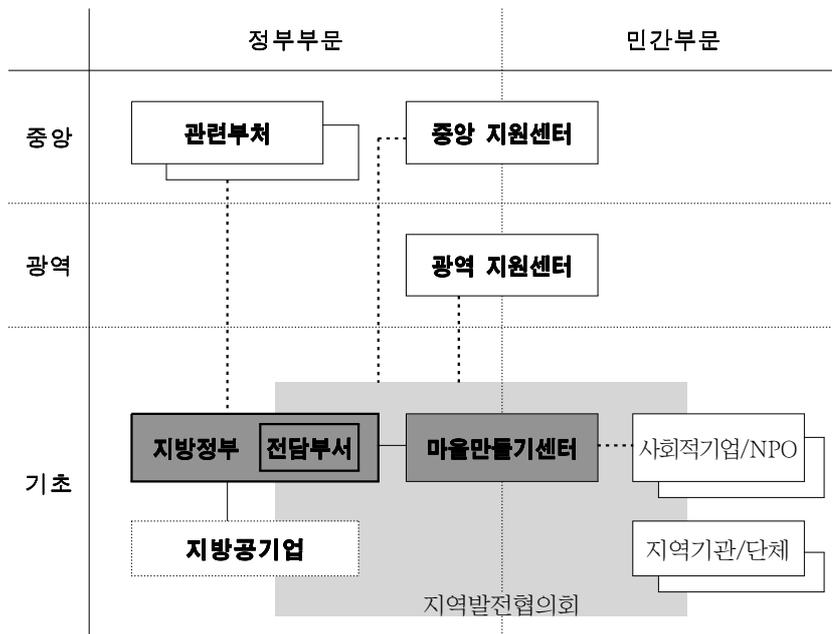
3)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정부 지원 기능 구축 병행

□ 중앙정부에 의한 건축·도시 지원센터 설치 우선 추진

- 기초지자체 지역사업에 대한 행정·기술 지원 기능을 갖는 전문 지원조직으로 운영
- 초기 단계의 시급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정부 차원의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범적 성격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
- 중앙의 국립연구소, 관련 전문가단체 등 기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광역정부별 건축·도시 지원센터 설치 추진

- 중앙 건축·도시 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광역정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
- 광역별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그림 64〉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 지원체제 구축 모델

3

세부 정책방안

1) 기초지방정부 지역사업 전담조직 구축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는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지역사업의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등 지역사업 관련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지방정부의 건축·도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지방정부의 건축·도시 관련업무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기는 곤란하므로 각 부서별로 전문직능을 강화하는 방향, 혹은 유럽 도시들의 시 주임건축가(chief city architect)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별도의 과제이다. 여기에서 지역사업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주체들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관련부서들의 업무를 취합하며 총괄하는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다.

(1) 전담조직 유형 및 역할

□ 지방정부 내 지역사업 전담부서

전담조직으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 내에 지역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제하는 것이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처럼 ‘마을만들기 담당’ (담당인력 3명)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한 사례이다.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는 본청에 마을만들기담당과 비슷한 위계의 부서인 ‘마치즈쿠리추진계’를 두고 있는 것과 함께 지역출장소마다 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치즈쿠리 담당팀을 설치하여 총 27개의 마치즈쿠리 담당팀을 운용하고 있다.

지역사업 전담부서는 중앙정부 지역지원사업에 관련한 지방정부 각 부서 업무를 취합·총괄하는 한편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체들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지방정부 주도 민관협력형 외곽기구

지역사업은 지역주체들과의 협력은 물론 사업발굴 및 기획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조직 내 부서의 공식업무만으로는 효과적 수행에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안에 전문직능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는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조직체계를 갖는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정부조직과는 별도로 민관협력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센터는 지역사업 관련정보의 수집과 홍보, 관련 조사연구, 지역주체들에 대한 마을만들기 학습기회 제공 등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정부 내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사업에 대해 갖는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 지방정부 설립 사업기구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민간기업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발주 전에 정부의 사업계획이 완결되어야 한다.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공기업이나 공익법인 형태의 사업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일본의 각 지방정부가 ‘○○시 도시정비공사’ 라는 이름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사업기구를 직접 설립하거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설립토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기초지방정부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일본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공기업 등 사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범위를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제한하는 등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의 견인 · 지원

이러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일은 물론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견인 ·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이다.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초지방정부에게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배분하는 방식의 지역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을 견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담조직 구축은 지방정부의 조직 · 편제에 관한 일이므로 기초지방정

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사업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제약요인 및 지원 필요사안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지원정책 추진

지역지원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정비·개발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역의 필요(needs)에 적합할 뿐 아니라 지역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요건이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 자체가 지역의 자생 역량을 키우는 핵심이므로 이를 지역지원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은 지역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추진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유도·견인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책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지역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정비

□ 경쟁형 지역지원사업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의 초기 목표를 ‘선도사례 육성-파급’으로 설정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의 경쟁을 통해 우수 사업계획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정부들의 자발적 노력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선정된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지역사업 추진 역량을 선도적으로 갖추는 기초지방정부를 육성하고 다른 기초지방정부들이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기초지자체들의 지역사업 추진역량이 파급적으로 강화되도록 하는 것을 정책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인정에 의한 지원 방식 도입

기초지방정부들의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원칙에 따른다면 각 기초지방정부들의 사업계획 수립기한을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사업계획제안 공모형 경쟁·평가가 곤란하므로 기초지방정부가 불특정 시점에서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인정받은

계획에 대해 지원조치를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재생이나 중심지가활성화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사전에 지원 가능한 사항들을 고시하고 사업주체가 이들 중 자신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 사업계획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지역재생’ 제도

각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생사업들과 이 사업들의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를 희망하는 지원조치를 명시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내각부에 총리의 인정을 신청한다. 인정 신청을 받은 내각부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은 지역재생계획의 사업계획 및 지원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내각부는 지역재생사업에 지원 가능한 중앙 각 부처의 시책 목록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재생 기반강화교부금(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지역재생 지원 이자보조금(내각부),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농림수산성),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저리융자(재무성) 등 총 53종에 이르고 있다.

□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 사업계획·추진이 가능한 지역사업 지원제도 추진

지역의 자구노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재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생사업 지원 예산 사용의 융통성 부여

복수사업·복수년도사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 투입 대상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 철폐/ 각 연도별 소요액 일괄 교부 등

○ 지원사업의 추가제안에 의한 추가지원 가능한 절차 마련

지역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추가사업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신청하고 이를 평가·지원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초기 기획·준비 단계 작업을 인정하는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지역사업 추진주체를 준비하거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작업(1년)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 1년 후 수정계획 및 추진체제 평가로 본 지원 여부 결정

(2) 지역기반 활동조직의 육성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한 사업기획과 추진이 필수적인 지역사업은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지역의 필요(needs)와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이자 사업 결과를 향유할 주체인 지역의 관련 주체들의 사업주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견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수단들이 중앙정부 지역지원정책의 성과를 위한 요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지역기반 민간조직 활동 지원사업 시행

영국의 커뮤니티육성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처럼 지역조직 육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12)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주민조직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주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운영

지역주체들의 상호교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사례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원봉사단체, 주민조직,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지역조직들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정보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주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전문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교부금을 지원 받은 기초지방정부들이 설립한 마치즈쿠리교부금정보교류협의회가 마치즈쿠리교부금 정보시스템(まち交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은 주민자치회·상점회·NPO·대학·개발사업자·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재생주체들(都市再生の担い手) network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지역정부성(CLG)이 CENs(Community Empowerment Networks)를 운영하며 전국의 커뮤니티조직, 자원조직, 제3섹터조직들을 연계하고 있다.

3) 중앙·광역 차원 건축·도시 지원센터(가칭) 기능 구축

기초지방정부들의 지역사업 역량 강화는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건축·도시 전문직능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지원센터를 중앙 및 광역 단위로 설치하여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전문 지원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한다.

□ 중앙 건축·도시 지원센터 우선 구축

궁극적으로는 광역정부 단위로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전문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지원 기능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광역정부들이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 기능 및 역할

- 기초지방정부의 프로그램형 건축·도시사업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조정-관련주체 이해 조정 등의 업무 수행
 -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단순 자문형식의 업무로는 곤란. 기초지자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지원
 -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방정부에 관련 전문가를 추천-파견하여 기초지방정부에서 일정 기간 직접 근무하는 형태로 운용
- 기초지방정부의 프로젝트형 건축·도시사업 기획업무 지원
 -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단일 프로젝트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
 - 특히 사전 설계기획단계에서 설계기획검토·조정(design review)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 광역지방정부의 건축·도시사업 기획업무 수행

- 광역 지원센터의 경우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기능과 동시에 광역 정부의 건축·도시 전문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
- 광역정부가 자체적으로 입안하는 건축·도시사업의 기획업무 수행

□ 조직 구성

- 상근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 기술조직
 산하 기초지방정부 수를 고려, 적정량의 민간전문가를 상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련전문가 풀을 구성, 프로젝트 베이스로 비상근 지원인력으로 활용
- 정보·행정조직
 지역사업 관련 정보 수집, 기초지자체 대응 창구업무 등을 위한 행정조직 구성

□ 중앙 건축·도시지원센터 구축 유형

- 중앙정부 방계조직형
 - 영국 CABE를 모델로 중앙정부에 소속된 별정조직으로 설치하는 유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 기획단조직과 연계하여 상근조직 형태의 건축도시지원단(센터)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6조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 조직형
 - 건축·도시 관련 국립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부설 기구 형식으로 설치하는 유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설 건축도시지원센터, 혹은 대한주택공사 부설 건축도시지원센터 등의 형태 검토
- 중앙정부 산하 별도 전문기구형
 - 정부·민간 협력조직 형태로 독립적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유형

- 정부 출연 재단법인으로 (재)건축센터 설립하는 등의 형태 검토

□ 광역 건축·도시지원센터 구축 유형

- 중앙정부의 광역단위 센터형
 - 중앙정부가 광역 단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유형
 - 영국의 지역개발청(RDA)나 지역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r of regions) 사례처럼 중앙정부의 별정 조직으로 설치
- 광역지방정부 방계조직형
 - 광역지방정부에 소속된 별정조직으로 설치하는 유형
 - 건축기본법에 따라 광역 단위로 구성될 지역건축정책위원회 소속으로 건축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를 갖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속)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 광역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지방공사 부설 조직형
 - 광역정부 산하 건축·도시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부설 기구 형식으로 설치하는 유형
 - 경기도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건축도시지원센터, 혹은 경기도시공사 부설 건축도시지원센터 등의 형태 검토

· 참고문헌

· summary

(a u r i

참고문헌

보고서 / 정부간행물

- 건설교통부, 「2007년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우수 계획 모음집」, 2008
- 국토해양부, 「2008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우수계획 모음집」, 2008
- 노동부,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2007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신청 자료」, 2005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웹페이지 자료실, 2008.12.17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
-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마스터플랜 : 공간의 질 분야」, 2008
-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마스터플랜 : 삶의 질 분야」, 2008
- 영월군, 「살기좋은 장릉마을 만들기 마스터플랜 : 소득기반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2008
-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 평가보고서」, 2008
-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 2008
- 철원군, 「남대천 주변마을 발전계획」, 2008

- 철원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서」, 2008
- 철원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삶의 질」, 2008
- 철원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지역공동체」, 2008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마을만들기와 지원 제도-조례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8.4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2007.12
-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지침」, 2008
-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설정 및 지표개발 연구」, 2008
- 안성문화원, 「안성 덕봉마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2008
- 한국마을만들기 연구회, 「ASCOM 2008 Fall Workshop in SEOUL」, 2008
- 마을연대(준), 「이런 마을에 살고싶다 : 2002 마을만들기 백서」, 2003
- 마을연대(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마을 디자인운동 평가집」, 2003
- 김영정, 송미령, 김현호, 모성은, 박준식, 「균형발전 정책교본 :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 김진범, 김은란, 장은교, 이승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08

- 김찬호(2002), 「일본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정보마당
- 류중석, 송미령, 이성은, 이왕건, 이재준, 「균형발전 정책교본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 민범식, 박은관, 손동욱, 박재길, 김형진, 와타나베 이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07
- 민범식, 박은관, 손동욱, 박재길, 김현진, 와타나베 이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7
- 박인석, 강인호, 박광재, 박철수, 「공공 건축·도시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 박재길, 이왕건, 김명수, 박경현, 김지형, 이성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6
- 박재길, 김현식, 김광익, 이왕건, 변필성, 황승미 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5
- 서수정, 이창호, 배웅규, 「현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
- 이명규,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 광주광역시 복구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2008.4
- 이창호, 임정민, 서수정, 배웅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 주택도시연구원, 2008
- 정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1999
- 진영환, 류승한, 정윤희, 김은란,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 국토연구원, 2008
- 진영환, 류승한, 조판기, 김진범, 권영상, 정윤희,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2007
-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Middlesbrough Community Network Constitution」, 2005.8
- Middlesbrough Partnership, 「MEMBER HANDBOOK」, 2005
- Middlesbrough Partnership, 「Middlesbrough Community Strategy 2005」, 2005.9
- Middlesbrough Partnership, 「Middlesbrough Partnership Cluster Groups Annual Report 2007」
- Middlesbrough Partnership,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2008 - 2023(draft)」, 2008
- Middlesbrough Partnership, Middlesbrough Council, 「The Local Area Agreement for Middlesbrough 2008 - 2011」
- North East Assembly, 「Shaping the future of North East」, 2006

North East Assembly, 「View: Shaping the North East - Regional Spatial Strategy for the North East」, (Consultation Draft), 2004.11

One Northeast, 「Annual Report and Accounts 1999-2000」, 2001

One Northeast,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6-2007」, 2008

One NorthEast, 「Leading the way, Regional Economic Strategy 2006 - 2016」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Tees Valley City Region Multi-Area Agreement」, 2008.6

Tees Valley Joint Strategy Unit, 「TEES VALLEY UNLIMITED: WORK PROGRAMME 2007/08」, 2007.7

Tees Valley Partnership, 「Tees Valley Single Programme Delivery Plan 2003-2006」, 2003

학위논문

곽동원,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행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명규, 「도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2004

이명규,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광주광역시 복구를 중심으로」, 2008

단행본

- 西山康雄, 西山八重子, 「イギリスのガバナンス型まちづくり」, 学芸出版社, 2008
- 日本建築學會編, 「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會社」, 2005
-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 「地方再生関連の主な事務事業一覧」, 2008
-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 「地域再生のために」, 2008
- 鶴岡市, 「鶴岡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劃」, 2008.7
- 浅見 良露,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英国編—イギリスに学ぶ地域再生とパートナーシップ」, 創成社, 2006
- 松尾 匡,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戦略編—参加とリーダーシップ・自立とパートナーシップ」, 創成社, 2005
- 西川 芳昭,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事例編—NPOと市民と自治体の取り組みから」, 創成社, 2005
- 西山康雄・西山八重子, 「イギリスのガバナンス型まちづくり—社会的企業による都市再生」, 学芸出版社, 2008
- 中出文平・地方都市研究会, 「中心市街地再生の持続可能なまちづくり」, 学芸出版社, 2003
- 岡田 浩一외, 「地域再生と戦略的協働—地域ガバナンス時代のNPO・行政の協働」, ぎょうせい, 2006
- 伊藤 滋, ぎょうせい, 「都市再生最前線—実践!都市の再生'地域の復活」, 2005
- 日本建築学会, 丸善, 「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會社 (まちづくり教科書)」, 2005
- 矢作 弘・瀬田 史彦, 「中心市街地活性化三法改正とまちづくり」, 学芸出版社, 2006

鶴岡市, 「鶴岡文化学術交流シビックコア地区整備計画書」, 2002

B. Jacobs and C. Dutton, "Social and Community Issues" In P. Roberts and H. Sykes (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2000

J. Shutt, "Lessons from America in the 1990s" In P. Roberts and H. Sykes (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2000

웹사이트

<http://www.andong.go.kr/>

<http://www.iansan.net/>

<http://www.balance.go.kr/>

<http://www.berr.gov.uk/>

<http://www.bmenetwork.org.uk/>

<http://www.cabe.org.uk/>

<http://www.chiiki-info.go.jp/>

<http://www.city.go.kr/>

<http://www.cwg.go.kr/>

<http://www.englishpartnerships.co.uk/>

<http://gun.yeongwol.gangwon.kr/>

<http://www.hamamatsu-machi.jp/>

<http://www.happykorea.go.kr/>
<http://www.hud.gov/>
<http://www.idea.gov.uk/>
<http://www.ignite-ne.com/>
<http://www.jcci.or.jp/>
<http://www.jinan.jeonbuk.kr/>
<http://www.kantei.go.jp/>
<http://www.kenchikushi-koken.org/>
<http://www.kccf.or.kr/>
<http://www.livingstreets.org.uk/>
<http://www.machikaigi.jp/>
<http://www.machikou-net.org/>
<http://maeul.kccf.co.kr/>
<http://www.mapo.go.kr/>
<http://www.mapocoop.org/>
<http://www.middlesbrough.gov.uk/>
<http://www.middlesbroughfaiths.org.uk/>
<http://www.minto.or.jp/>
<http://www.mlit.go.jp/>
<http://www.neighbourhood.gov.uk/>
<http://www.northernarchitecture.com/>

<http://www.city.setagaya.tokyo.jp>
<http://www.setagaytm.or.jp/>
<http://www.teesvalley-jsu.gov.uk/>
<http://www.teesvalleypartnership.co.uk/>
<http://www.teesvalleyunlimited.gov.uk/>
<http://www.theglasshouse.org.uk/>
<http://www.toshimirai.jp/>
<http://www.toshisaisei.go.jp/>
<http://www.city.tsuruoka.lg.jp/>
<http://www.ur-net.go.jp/>
<http://www.wagamachigenki.jp/>
<http://www.wmnt.co.uk/>
<http://www.yeongju.go.kr/>

summary

Study on methods of building a local based support network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nd revitalizing its coordinator function

focusing on support system construction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ments

Youm, Chirl Ho; Tchah, Chu Young; Park, In Seok

Recently, programs for renewal an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in localities are shifting from traditional top-down approach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aking the leading role, to horizontal and bottom-up approaches which actively engage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iming to successfully implement existing local based urban renewal programs, the study carries out studies on foreign policies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support system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which is intended to undertake the function of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 main players, as well as supporting the players. Through the case studies, the study analyzes local based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ies of the countries examined, their project promotion systems and roles of the players involved, and presents directions to the construction of local based governance and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upport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each country studied, urban renewal policie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s a system to support strengthening of local renewal capacity, rather than in the way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the policies. For instance, the U.K. has a dual system for operating and supporting its urban renewal policies while dividing them into area-wide projects and local projects. In particular, the U.K. has in place the CABE, a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ies, through which the nation systematically supports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of each locality at the area-wide level.

Urban renewal policies of Japan were initiated as policies for metropolitan land liquidization, and policies for both local and village regeneration, aimed at self-reliant economic capacity and improvement in living conditions of local cities, have been simultaneously promoted. In particular, four centers under the Prime Minister-Urban Renewal Center, Special Restructuring District Center, Local Regeneration Center and CBO Revitalization Center-are in charge of the promotion.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f these four centers, each secretariat of the centers has been integrated into one so that meetings of each center can be integrated and held among the four.

Domestically, entering the 2000's, urban renewal projects are being actively implemented by primarily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projects are selected through public subscriptions among project proposals by local governments and funded by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study, what decides on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is not the initi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ability for localities to include in the project what is actually needed for their locality,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loc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case study results bring to the fore the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s's role of ensuring local capacity for local based projects. In addi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local architectural and urban projects,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reinforcement of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hat it means is that, going beyond a simple strengthening of internal organizational capacity, local governments should organize special task forces for village-creation, and introduce separate expert organizations primarily engaged in the field work. Likewise, the countries examined in the case study are currentl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sed governance systems at the national level, targeting construction of a support system to maximize local capacity while sustaining local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Only w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ity concerned is understood and reflected on the projec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can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chieve their expected accomplishments. In this sense, it is urgent for localities to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their own problems and take the initiative in project promotion. To this end, at the national level,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ster local organizations and establish organic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Last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nurture outside support organizations at the area-wide level to prop up capacity strengthening, and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network building to reinforce the linkage.

keyword: government, network system, coordinator function, local government, architectural & urban programs